



건축사

KIRA

Korean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칼럼

건축계의 경쟁력을 위한 질

시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어야

공간·자·300호 일회용 충전 핸드폰

회원작품

구름 대처 어린이집

교하주택 2단계 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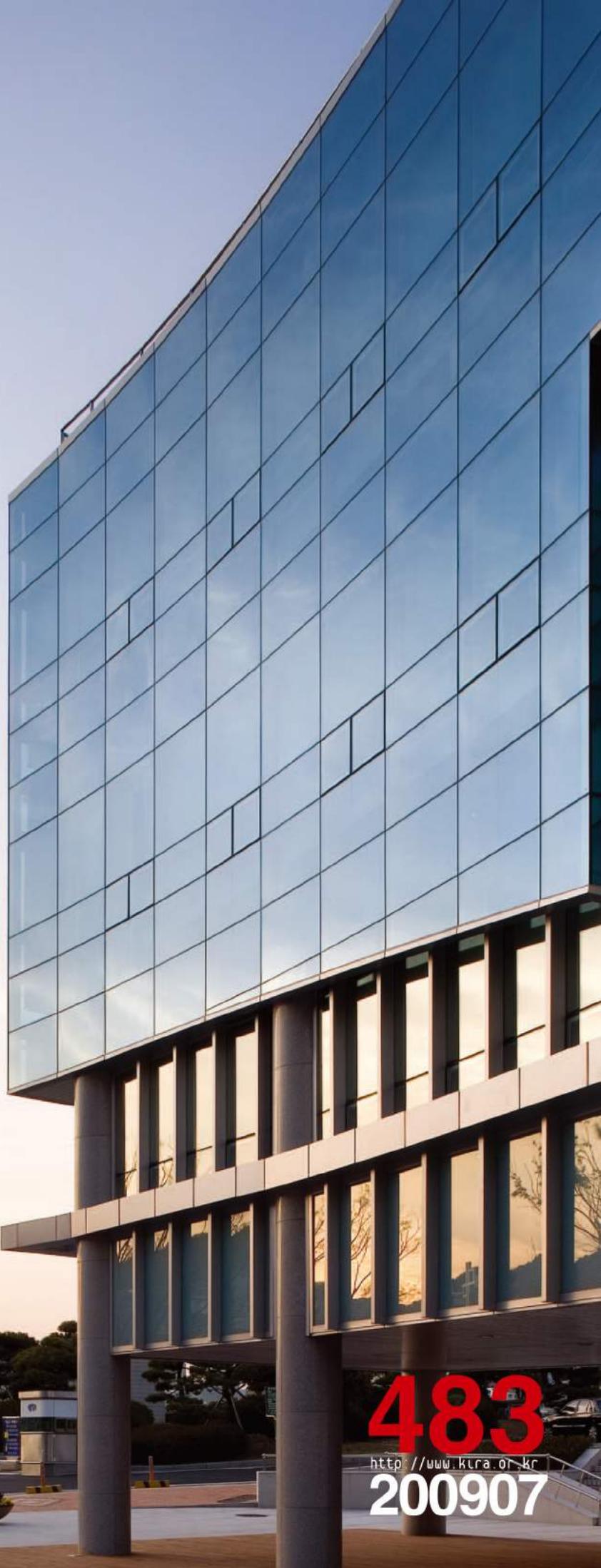
영도구청사 보건소 및 열린공간

남양주 양지 e-편한세상

토평성당

특집

건축설계의 저작권과 그 향후 전망



483
<http://www.kira.or.kr>
200907

건축계의 경쟁력을 위한 길

A Way for Competitiveness of Architectural Industry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그러나 유독 우리 건축계는 변화가 없는 듯하다. 아니 변화를 두려워하는 듯하다. 건축설계관련 3단체 통합만 해도 그렇다. 2년여의 실무협상을 거쳐 각 단체의 대표단이 합의된 내용을 인정하지 못하거나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떤 이들은 왜 통합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까지 이야기한다.

지금까지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계의 만행과 같은 끗듯함으로 건축관련 법과 제도의 제정 및 개정활동과 실제업무를 통한 건축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힘쓰고 있다. 한국건축가협회는 건축개혁을 통하여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높여야 한다며 연구, 논문, 토론 등을 주요활동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각 단체 활동들은 삼원색의 색조합처럼 많은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부딪히며 서로 다른 변화된 형태와 이론들을 드러내며 대립하고 있다. 국제, 법제, 전시 등의 활동들은 제3자들을 대상으로 이중 삼중의 모습으로 각 단체의 대표성만을 고집하며 주장하곤 했다. 건축학과 5년제를 시작한지 7년이 되었고 건축학교육인증원을 설립한지 4년이 되어 가건만 그런 국제기준의 건축사법이 아직까지 개정되지 못한 것이 대표적인 부조화의 모습이다.

우리 건축계의 가장 큰 우선적 과제는 내부의견의 통일이다. 국제, 법제, 전시활동 등의 의견을 통일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통합이다. 더 이상 정부나 국회에 가서, 미국이나 유럽에 가서 또는 국내의 대형 전시장에 가서 건축계를 대표하는 것이 아닌 소속단체의 대표자 역할은 그만했으면 좋겠다. 통합된 하나의 단체 대표가 되면 자연히 다른 의견도 없어 질 것이 아닌가?

건축계가 하나 된 단체로 통합을 이룬 후에 한 마음으로 선결해야 할 주요과제는 다음 세 가지로 대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설계발주제도의 전반적 개선, 두 번째는 건축사업부대가의 현실화, 세 번째는 건축업무영역의 다양화이다.

첫 번째 과제인 국가와 공공기관의 설계발주제도는 입찰방법에 의한 뽑기 형태의 운찰제가 실행되고 있으며, P.Q라는 명분으로 기득권을 가진 자들에게 유리한 실적에 의한 자격제한방법이 설계경기와 턴키입찰방법 등 거의 모든 발주에 적용되고 있다. 현재의 발주제도는 기득권자들의 업무연속과 공무원의 수월한 발주를 위해서는 바람직 할지 모르지만 신인건축사들에게는 발주에 참석할 기회마저도 박탈하는 제도이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구체적 해결방안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으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 기대한다. 건축계도 힘을 모아 발주제도 개선에 대한 도움을 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두 번째 과제는 건축사업부대가의 현실화이다. 거짓말 같은 사실이지만 지금 시중 민간업체의 대부분 설계, 감리비 거래가격은 20년 전에 비하여 같거나 더 낮은 금액이다. 시·도 건축사회에서 설계비 제값받기 운동을 했더니 카르텔이나 담합이니 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칼날을 들고 있다. 덤핑에 의한 부실설계 및 감리와 그로 인한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는 국민적 피해는 생각지도 않는다.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에서 건축사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아마 없어질 것이다. 국가는 무엇이 건축의 국가경쟁력을 살리는 길인지 고심해야 한다. 소방과 전기가 별도 법에 의하여 발주하더니 이제는 구조까지 독립하겠다고 첨와대에까지 청원을 하며 난리를 치고 있다. 대가는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온갖 책임은 다 지고 있는 바보들의 모임이 건축사집단이다.

세 번째 과제는 건축업무영역의 다양화이다. 도시관련 업무가 도시계획의 명분으로 어느새 토목의 일부가 되어 버렸고 건축디자인을 디자인전문회사가 하겠다는 법안을 제안하여 건축사 업무 근간을 흔들기도 했다. 지금도 디자인 기본법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고 그 법안에는 공간환경이 포함되어 일반 디자이너의 몫인 듯 포장되어 있다. 건축물의 관리도 건축사들에 의하여 점검되고 관리되어야 하건만 현재까지 법률적 뒷받침을 받지 못하고 있다. 친환경 건축을 추구하는 그런 흥 200만 세대 계획에도 건축사의 의견은 아예 포함시키지도 않았다.

친환경 건축의 인증과 교육도 건축사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건축물의 조사 및 감정뿐 아니라 법원의 감정도 건축사가 본연의 전문가이다. 부동산 개발업을 비롯하여 건설사업 관리업무까지 건축사가 할 수 있는 업무는 너무나 많다.

이런 모든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축계 모두가 하나로 뭉쳐야 한다. 쓸데없는 논리의 소모전이 건축계 내부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 뭉쳐서 힘을 합쳐도 해결하기 힘든 과제들이다. 우리 기성 건축인들의 어려움을 후배, 제자들에게 물려주어서는 안 된다. 우리를 위해서도, 후진들을 위해서도, 우리나라 건축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뭇다운 과제들은 하루속히 풀어야 한다. ■



전영철 / Jeon, Young-cheol, KIRA
(주)얼린모임 첨 건축사사무소

작곡

- 대한건축사협회 이사
- 국토해양부 중앙건축위원회 위원
- 문화체육관광부 민관투자 중앙심의위원 역임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시설 자문위원 역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어야

Improvement in Quality of people's Life

21세기는 환경과 정보의 세계이다. 환경은 인류 생존을 위한 지구적이고 가치적인 대안이며 정보는 생산과 경쟁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또한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자본주의적 욕망의 끝없는 경쟁과 투쟁에 몰두하고 있다. 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나 도시도 마찬가지이다.

환경과 정보와 이를 담는 틀로서의 자본은 가치와 도구와 욕망이라는 세 축으로 인류의 모든 삶을 지배한다. 즉, 생존과 발전을 위한 거대 경쟁 혹은 미시 경쟁 속에서 국가는 도시는 개인이든 이러한 환경과 정보와 자본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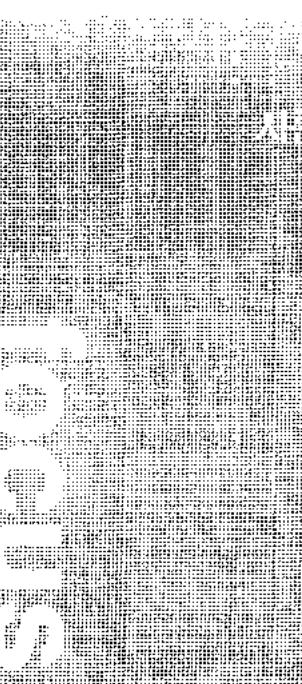
우리 건축계도 생존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해결책을 모색하는 많은 집단적인 선택은 자칫 잘못하면 분파주의와 순수주의의 주장으로 흐를 수 있다. 많은 국제적 분쟁과 국가 또는 사회단체 간 심각한 대립이 그것을 보여준다. 우리 건축계도 그러한 사회적 흐름 안에서 같은 고민을 해 왔다. 그리고 그러한 고민을 풀어 놓고 해결을 하기 위해 수년간 실제적 논의를 해 왔다. 이를 통해 이미 겪어 온 오류의 전철을 밟지 않고 현안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은 서로를 회생하고 양보하는 대화와 소통에 있음을 알게 되었다. 대화와 소통은 미래를 위한 선택이다. 미래의 건축과 우리 후배들을 위한 토대가 지금 필요하다. 그 기초를 기반으로 건축의 위상을 문화의 중심으로 만들어야 하고, 세계적인 건축가를 더 많이 배출해야 하며, 많은 건축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당당함과 미래의 비전을 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 건축계는 사회적, 국가적, 개인적인 심각한 어려움에 대한 극복과 가치적인 선택을 위하여 분파적이고 순결주의적 주장을 극복하고 대화와 소통의 열린 마음으로 단체 통합을 위한 합의에 첫 발을 내딛었다.

잘 알다시피 건축은 문화예술적인 측면과 제도적인 측면이 공존하는 복합적이며 입체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행정체계는 제 단체가 법인격을 얻기 위해서는 해당 부처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허가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도 정부조직에 맞추어 건축단체가 분리하여 존재 운영될 수밖에 없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시 말해 건축의 본질대로 건축단체가 존재 운영될 수가 없었다. 이에 건축계는 세계적인, 그리면서도 국가적이고 또한 개인적인 제 문제에 대하여 전략적이고 가치적인 통합을 선택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건축의 문화예술과 제도정책의 핵심적인 두 분야의 통합을 정부의 두 부처 동시 등록이라는 현실로 풀어갈 수 있게 된 것은 한국적 현실을 뛰어넘은 변화의 모습이다. 이를 통해 문화와 제도를 동시에 해결 할 수 있게 된 것이며 비로소 세계적이면서 국가, 도시 개인의 궁극적 과제인 환경의 가치 실현, 정보의 도구 활용 및 교류, 그리고 자본의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겠다.

이러한 패러다임적 전환을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야 할 것이 있다.

무엇보다도 건축가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즉, 국민의 꽤 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건축계는 최우선적인 목적의식을 가져야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첫째, 우리 건축계가 지나온 발자취를 돌아보고 지속적으로 계승해야 할 것과 개선해야 할 것들을 명확히 하는 자성을 통해 건축 활동은 국가와 환경을 위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고귀한 작업임을 재인식하여 사회단체로서의 그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 둘째, 건축 또는 건축가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건축을 건설과 개발을 위해 발생되는 예측된 행위로써가 아니라 그 사회의 문화를 표현하는 예술 행위로서의 가치로 인정받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공공에 입각한 건축이 이루어져야 하며, 공공에 입각한 국가의 정책방향이나 제도 개선을 위한 대안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적으로 고유한 건축문화를 브랜드화하고 창발적 사고를 통한 건축공간의 질을 높임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는 물론 우리 자손들을 위한 삶의 터전을 보다 풍요롭게 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로 인하여 지금까지 건축이 그 가치창조의 속성과는 달리 비추어졌거나 또는 왜곡된 요소의 합으로 존재해 왔다면 이제는 국가의 미래와 국민을 위하여 부단한 자기 노력을 바탕으로 대정부, 대관, 대민 활동을 펴 나감으로써 사회, 역사, 문화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



김창수 / Kim, Chang-soo
(사)한국건축기획회 회장

약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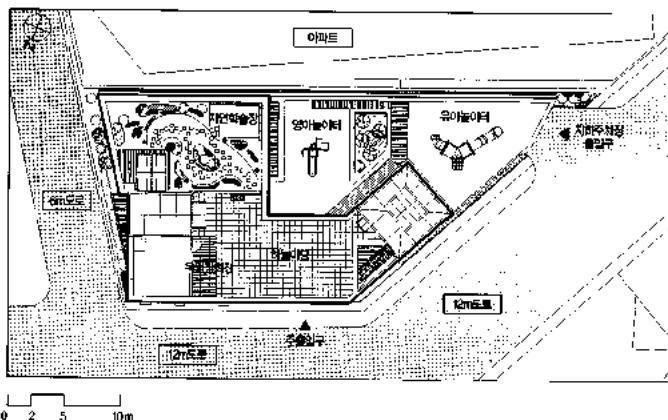
- 고려대학교 건축공학과 및 동대학
· 공학대학원 건축공학과 졸업
- (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부회장
- 한국지하공간협회 이사
- 한국설강협회 이사
- 서울시, 건교부, 한국토지공사
· 다수의 자문 위원 역임

구립 대치어린이집

Kangnam Daechi Nursery

● 배치도

●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85-1

지역/지구 제3종 일반주거지역

주요용도 공동주택

대지면적 661.30m²건축면적 330.51m²연면적 1,760.71m²

건폐율 49.98%

용적률 188.27%

규모 지하 1층, 지상 4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로이복충유리, 고밀도합성목재

구조설계 한국조기술사사무소

전기설계 제일설계

기계설계 엔씨티

시공사 자연종합건설

인테리어 아희안

건축주 강남구청

설계담당 권은보, 박영실

사진 박완순



Location 985-1,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

Site area 661.30m²Bldg area 330.51m²Gross floor area 1,760.71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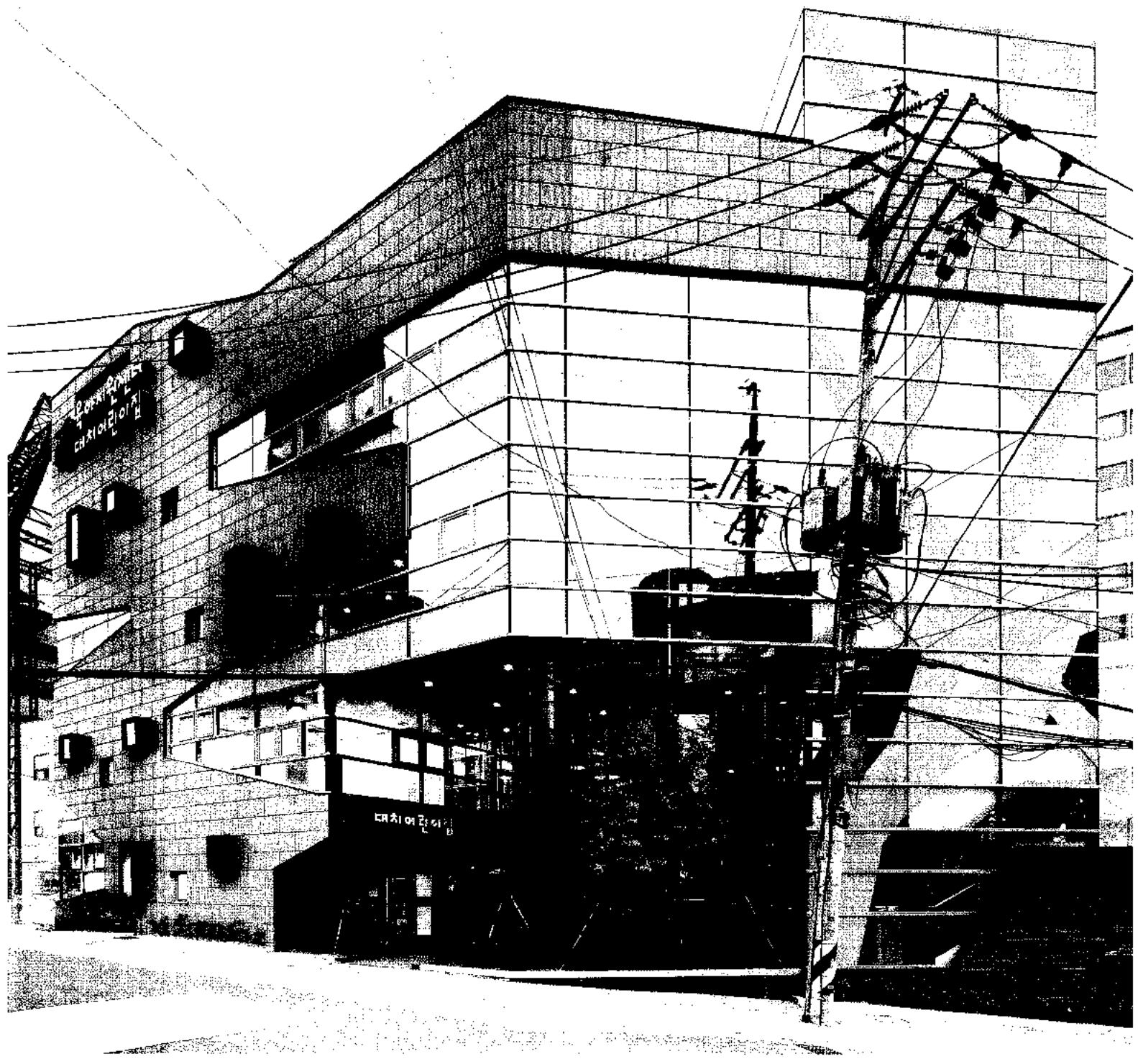
Bldg coverage ratio 49.98%

Gross floor ratio 188.27%

Structure R.C

Bldg. Scale B1, F4





비움의 풍경

건축사는 어떤 안경을 쓰고 도시와 건축을 바라볼 것인지를 결정하고 도시환경과 복잡한 조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대치동의 건물들은 숨막힐 정도로 빽빽하게 서있으며 사람들을 압도하면서 갈로 내몰고 있다.

이 숨막히는 도시에 숨통을 트을 수 있는 빈 공간을 마련하자.

비어있어 햇살 가득한 이곳은 우리 놓네의 정겨운 건축적 풍경이 된다.

마당 깊은 어린이집

남향배치의 밝고 따뜻한 마당을 계획하여 유화실에서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도록 하자.

친구들과 함께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체험중심의 공간으로 계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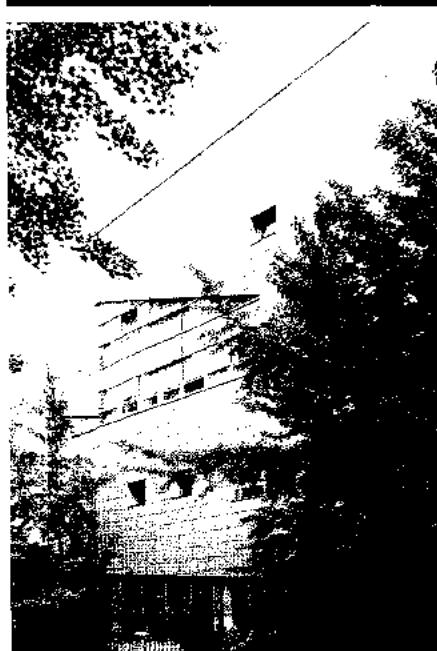
지상의 외부공간은 놀이 및 교육공간으로 구성되며 이러한 마당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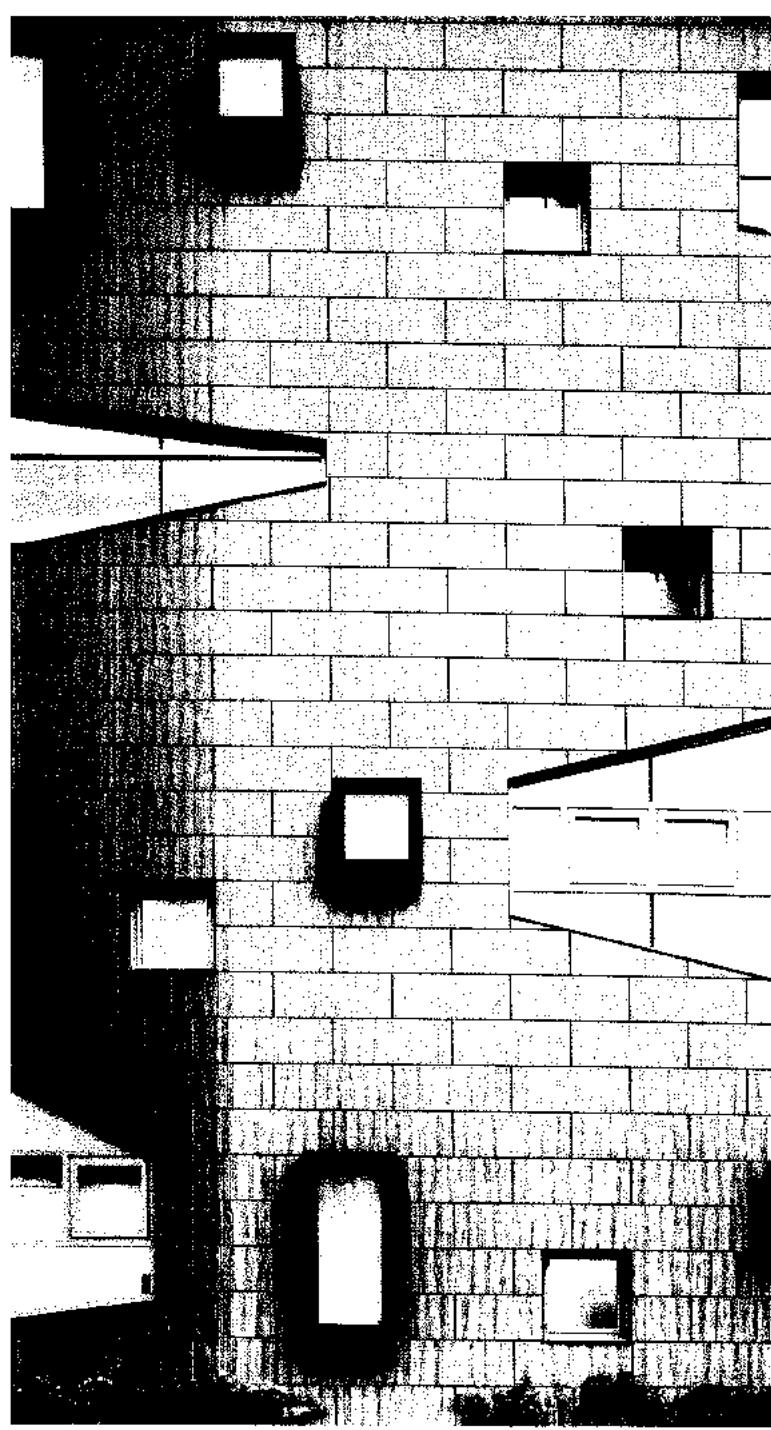
축적 산책로로 연결하여 다양한 공간적 사건을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옥상의 외부공간은 직접 어린이들이 식물을 가꾸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텃밭과 다양한 나무와 초화류를 보고 만지면서 감각적 경험을 제공하는 자연학습장을 계획하였으며 각종 이벤트와 교육이 가능한 옥외집회장을 계획하였다.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오브제

어떻게 하면 디자인으로 어린이들이 엄마와 떨어지는 것에 대한 공포감을 감소시킬 수 있을까? 시각적이고 장식적인 요소를 통해 아이들이 재미와 상상력을 갖고 어린이집을 놀아 공간으로 인식하도록 유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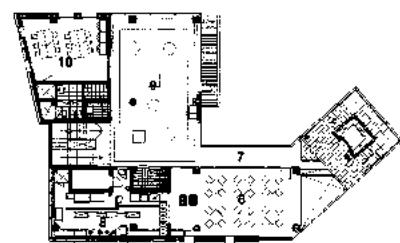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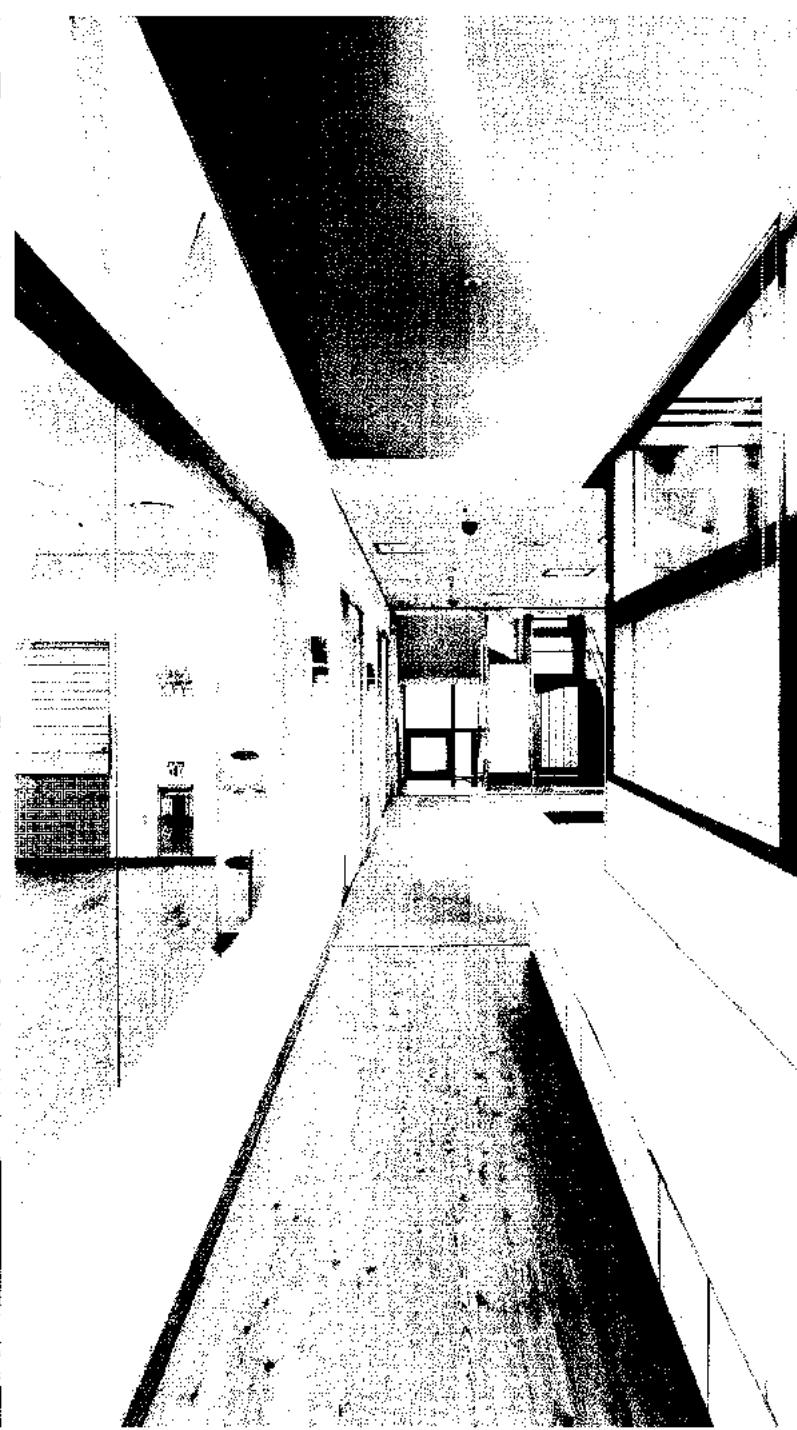
아이들의 활동성을 추상적으로 표현한 외관 디자인과 성장하는 나무의 이미지를 담은 디자인으로 아이들과 지역주민들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기억에 깊이 각인되는 마을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계획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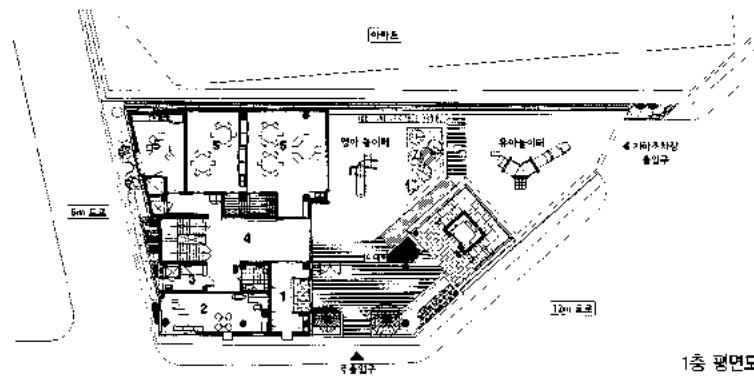


1. 아파트에서 바라본 전경
2. 베란
3. 텁코리 계단입구
4. 일면 고시드
5. 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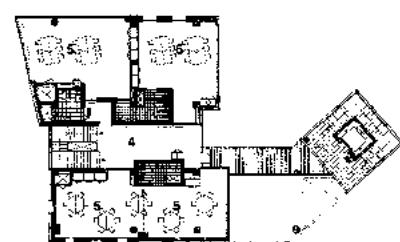
01_ 현관
02_ 사무실
03_ 보건실
04_ 영유아 유치실
05_ 보육실
06_ 식당
07_ 복도
08_ 주방
09_ 대급용실
10_ 특별활동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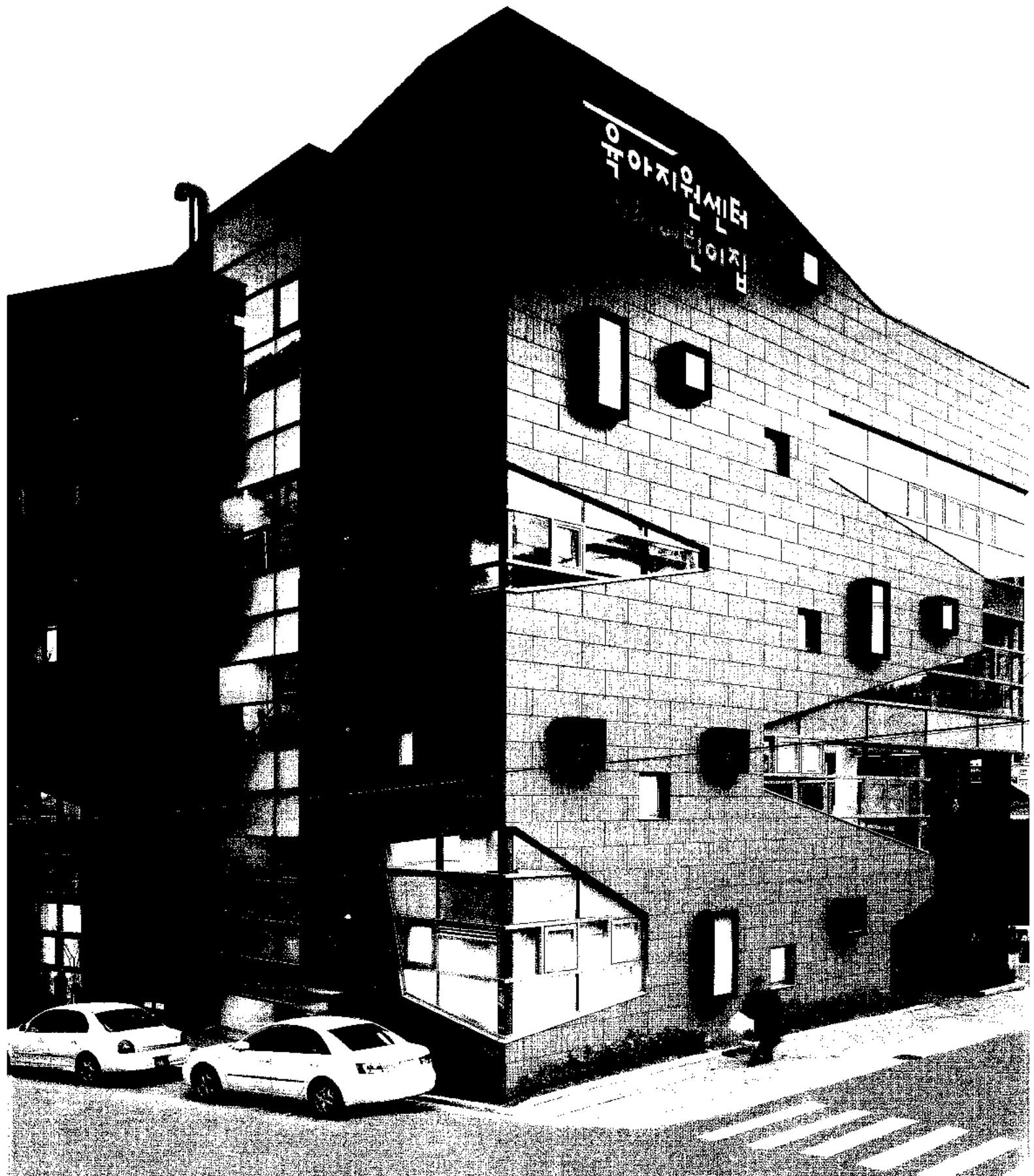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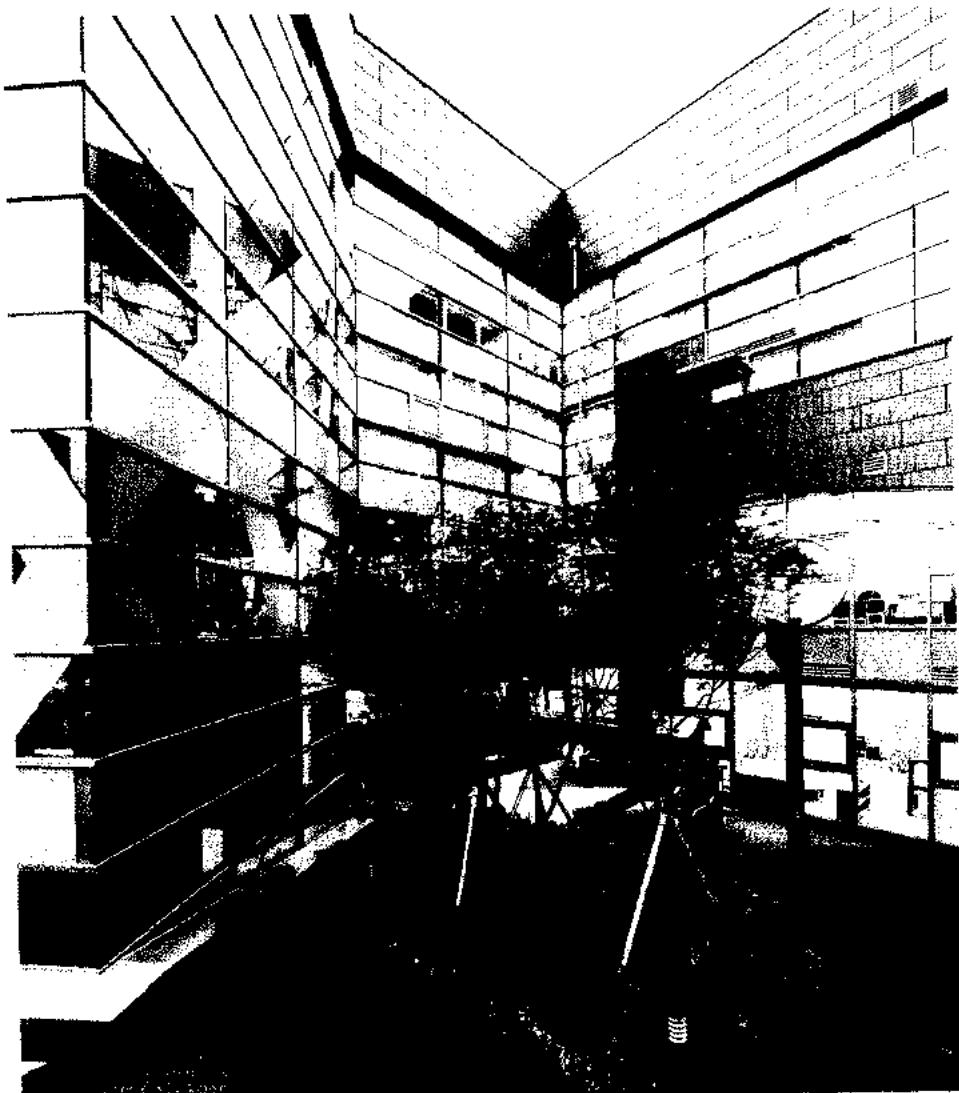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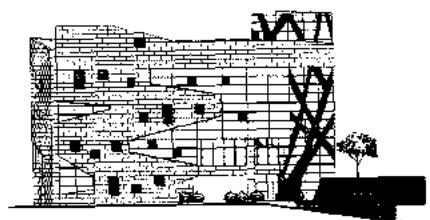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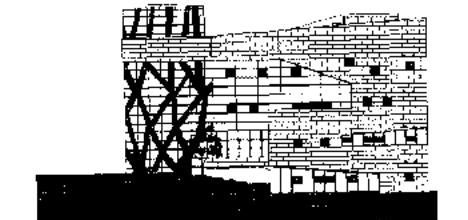


1. QR
2. 이동이 끌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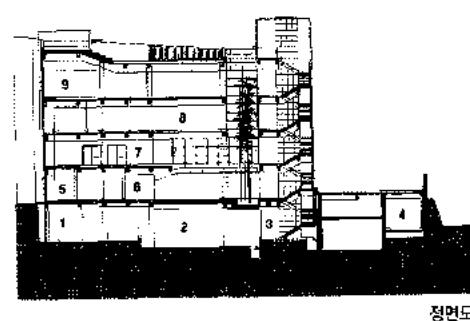
01_ 발전기술	05_ 양호실	09_ 다목적실
02_ 기계실	06_ 현관	10_ 주차장
03_ 엘리베이터홀	07_ 부유실	
04_ 수차량실	08_ 식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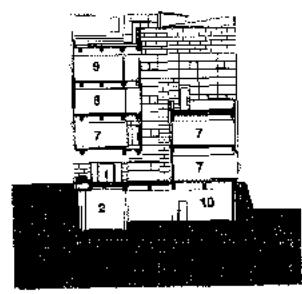
정면도



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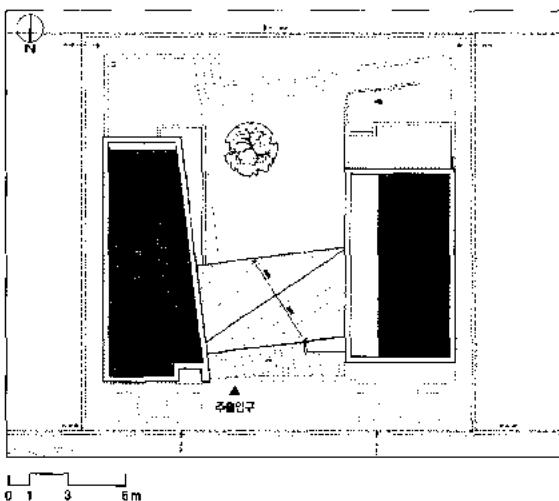
정면도



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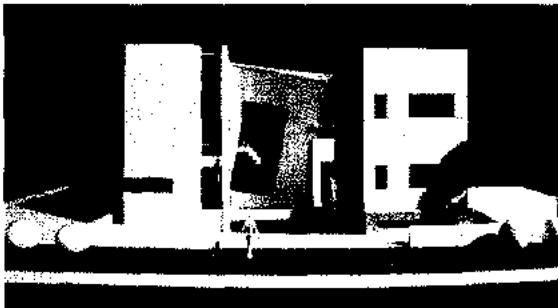
교하주택-2 P씨 주택 KYOHA HOUSE-2 P House

● 배치도



●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둥파리 1723-2
지역/지구	도시설계, 일반주거지역
주요용도	단독주택
대지면적	402.70m ²
건축면적	141.99m ²
연면적	299.51m ²
건폐율	35.26%
용적률	61.18%
규모	지하 1층, 지상 2층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외부마감	노출콘크리트, T20시더목
내부마감	대리석, 천연페인트
구조설계	SP구조
전기·설비	(주)세원엔지니어링
시공사	(주)에스엠디자인
설계담당	김창덕, 양용석, 고하동, 장희성



Location 1723-2, Dongpae-ri, Gyoha-eup,
Paju-si, Gyeonggi-do, Korea
Site area 402.70m²
Bldg area 141.99m²
Gross floor area 299.51m²
Bldg coverage ratio 35.26%
Gross floor ratio 61.18%
Structure R.C
Bldg. Scale B1, F2

대지(垈地)_ 어느 도시를 가나 구획된 대지에는 공통점이 있다. 보여지는 것들이 대부분 이미 결정되어져 있는 것이다. 대지 및 주변 환경들은 설계자로 하여금 해결 과제의 범위와 사고의 틀을 제한한다. 이 제한조건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계획의 방향이 결정된다.

주택이 단순히 하나의 건축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이웃과 도로, 하늘과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건축주에게 행복을 주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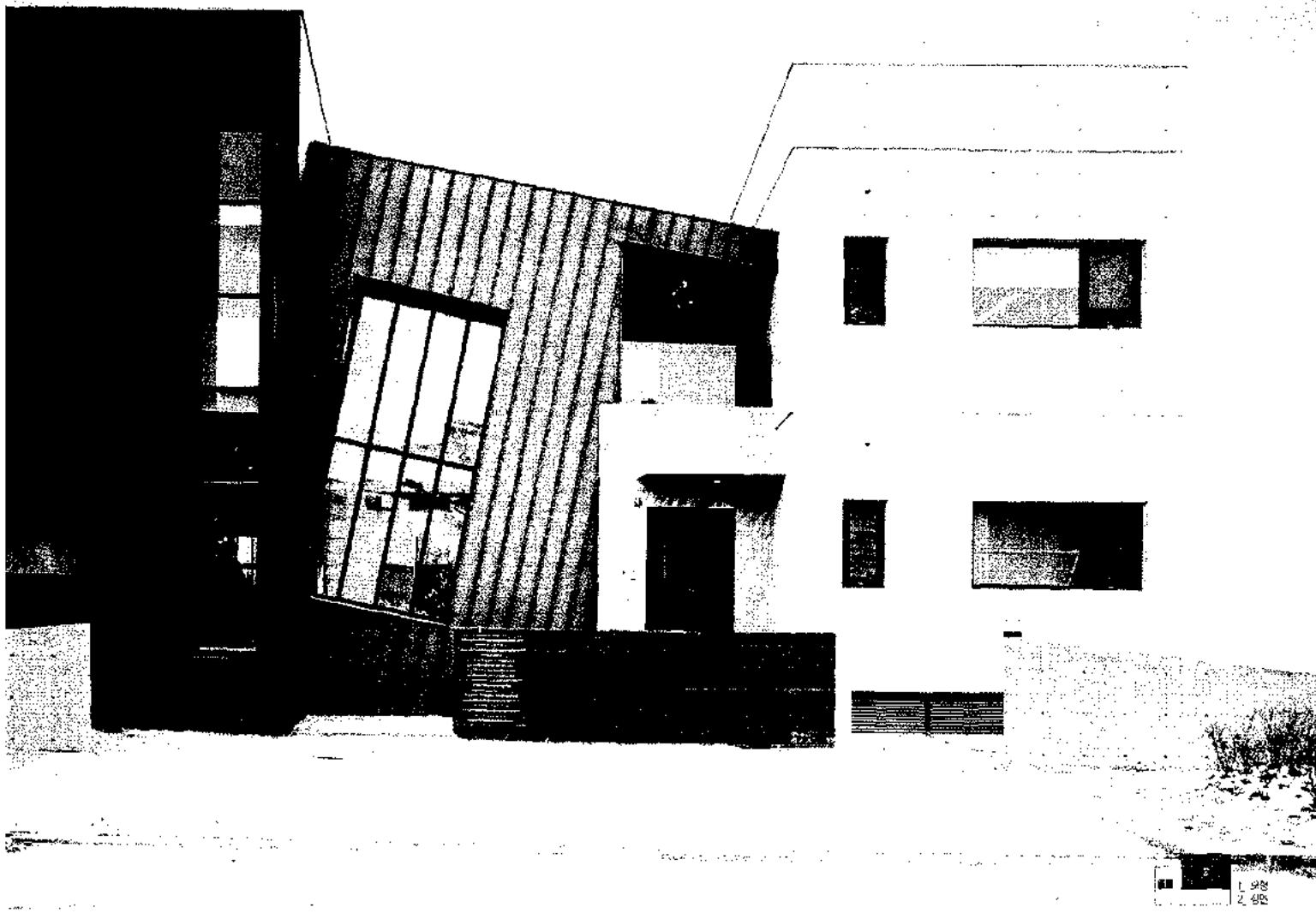
본 건축물은 태양의 양면성을 지닌 정북, 정남향의 정사각형 대지에 위치한다. 때문에 북쪽의 공간을 밟게 이끌어 주어야 했다. 이를 위해 북쪽의 현관을 들어서면 남쪽의 마당이 바로 보일 수 있게 연계성을 두었다.

마당 최근의 주택들은 주거의 연속성을 살릴 수 있던 마당을 점점 잊어가고 있다.

특히 택지개발지구는 더욱 그러하다. 특별한 외부공간을 갖지 못한 대지는 외부공간의 형성에 대한 진한 아쉬움을 남긴다. 이러한 아쉬움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공간을 찾아내는 방법을 알아내기도 한다.

건물의 한 가운데 위치한 마당은 빛을 모아주는 공간의 역할과 더불어 생태적으로 갖지 못한 외부환경에 대한 아쉬움을 대신한다. 어머니가 두 팔로 자식을 끌어안은 듯 U자형의 매스 가운데 마당이 자리하고 있다. 정남향의 마당에서 빛을 모아 지하층부터 지상2층의 각 실까지 전달한다.





현관을 진입하면서 보이는 마당의 전경은 진입동선의 단조로움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마당에 설치된 가벽은 가려짐과 열림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며 주택이 한층 더 아늑한 공간으로 느껴지게 한다.

프로그램 지하 1층, 지상 1, 2층을 연결하는 수직 동선의 오픈계단은 이 주택에서 소통의 중심축으로 자리한다. 지하 1층은 가족 구성원간에 친밀감이 떠해지도록 가족실을 두었으며 이 공간은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취미실 또는 영화, 음악 감상 등 다양한 용도로 이용이 가능하다. 또 한 지하층은 선큰을 통해 바로 마당으로 연결되는 연속성을 지니고 있다.

지상 1층은 외부와 연계되는 공간이자 가족들의 공유공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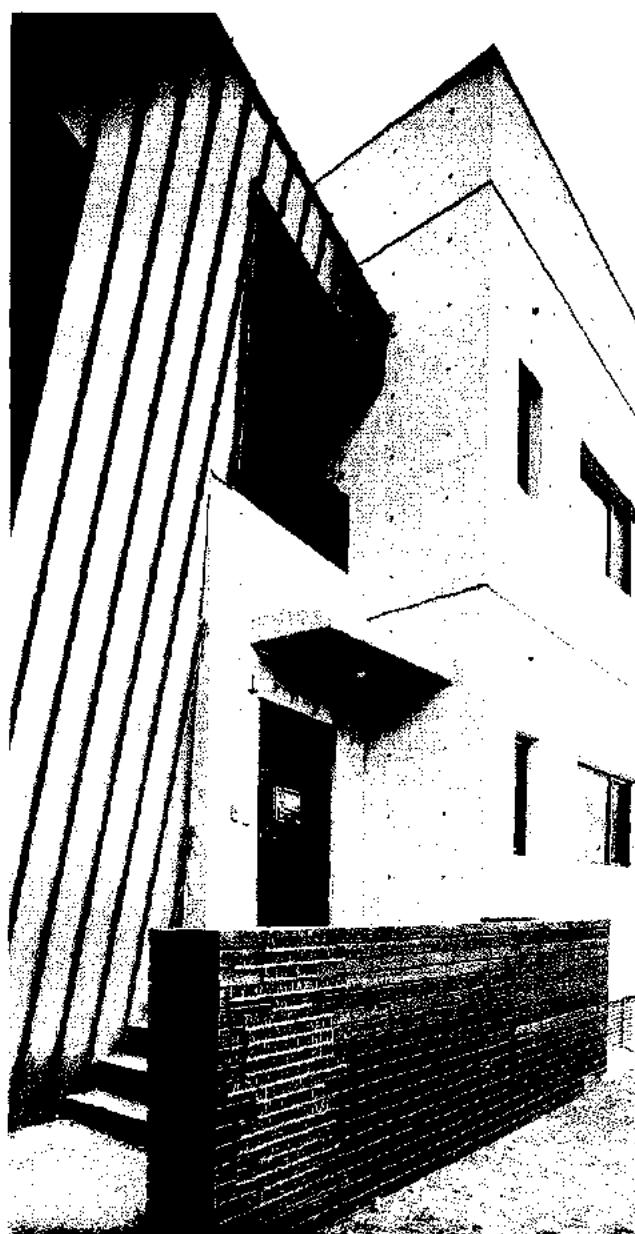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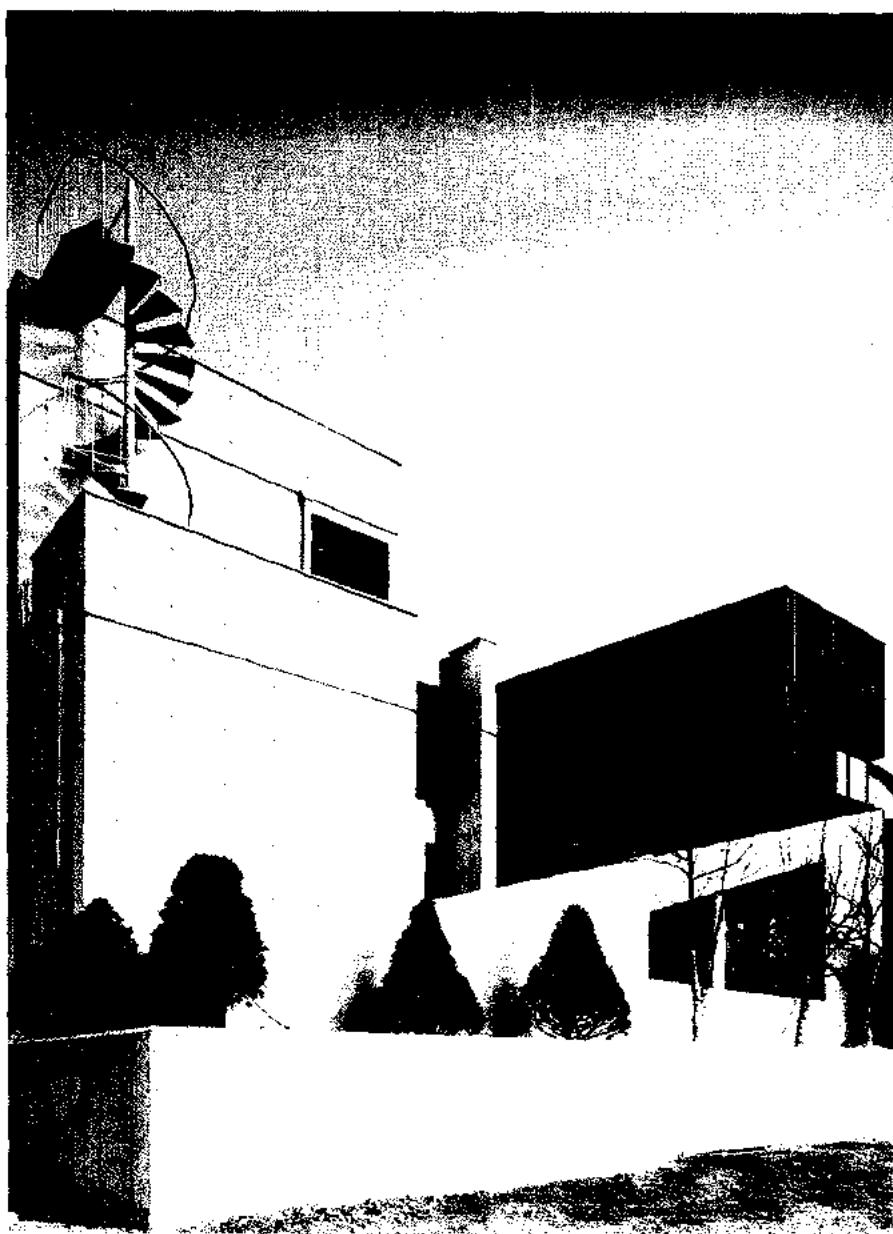
현관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주방 및 식당, 오른쪽에는 거실이 위치한

다. 거실과 주방에서는 바로 마당으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주방과 식당에서 데크를 거쳐 마당으로, 거실에서 다시 마당으로 연결되는 공간이 가족과 함께 성장해가는 시간 속에 또 다른 이벤트 공간으로 자리해주길 바란다.

지상 2층은 가족들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공간이다. 안방과 자녀방은 복도와 계단실을 통해 각각 독립적으로 분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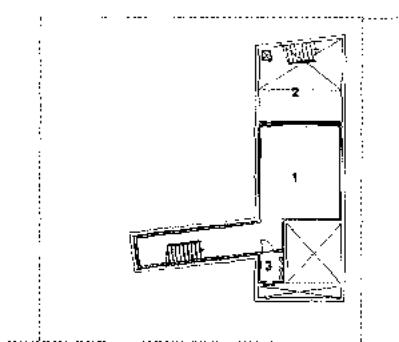
주택의 외관은 변함없는 매스의 반복으로 이루어지는 이웃집들과 대비되도록 한다.

노출콘크리트와 멀바으로 마감된 두개의 큰 매스를 징크로 연결하고 있다. 간결하게 서있는 매스는 평면의 솔직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연결부의 둘어짐은 작은 변화를 주는 요소로 사용되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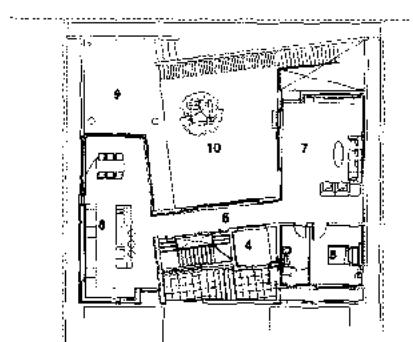


01. 가조실 05. 서개 - 손님방 09. 거그 13. 암정
 02. 선풀 06. 층 10. 진리마당 14. 드레스룸
 03. 보일러실 07. 거실 11. 지내방
 04. 화장실 08. 주방 - 식당 12. 테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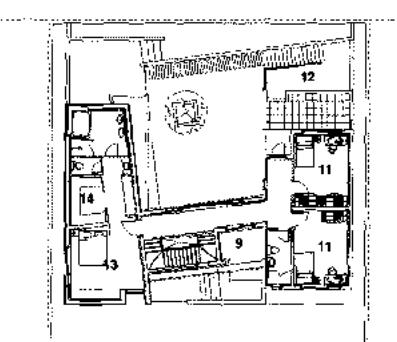
한국 건축
설계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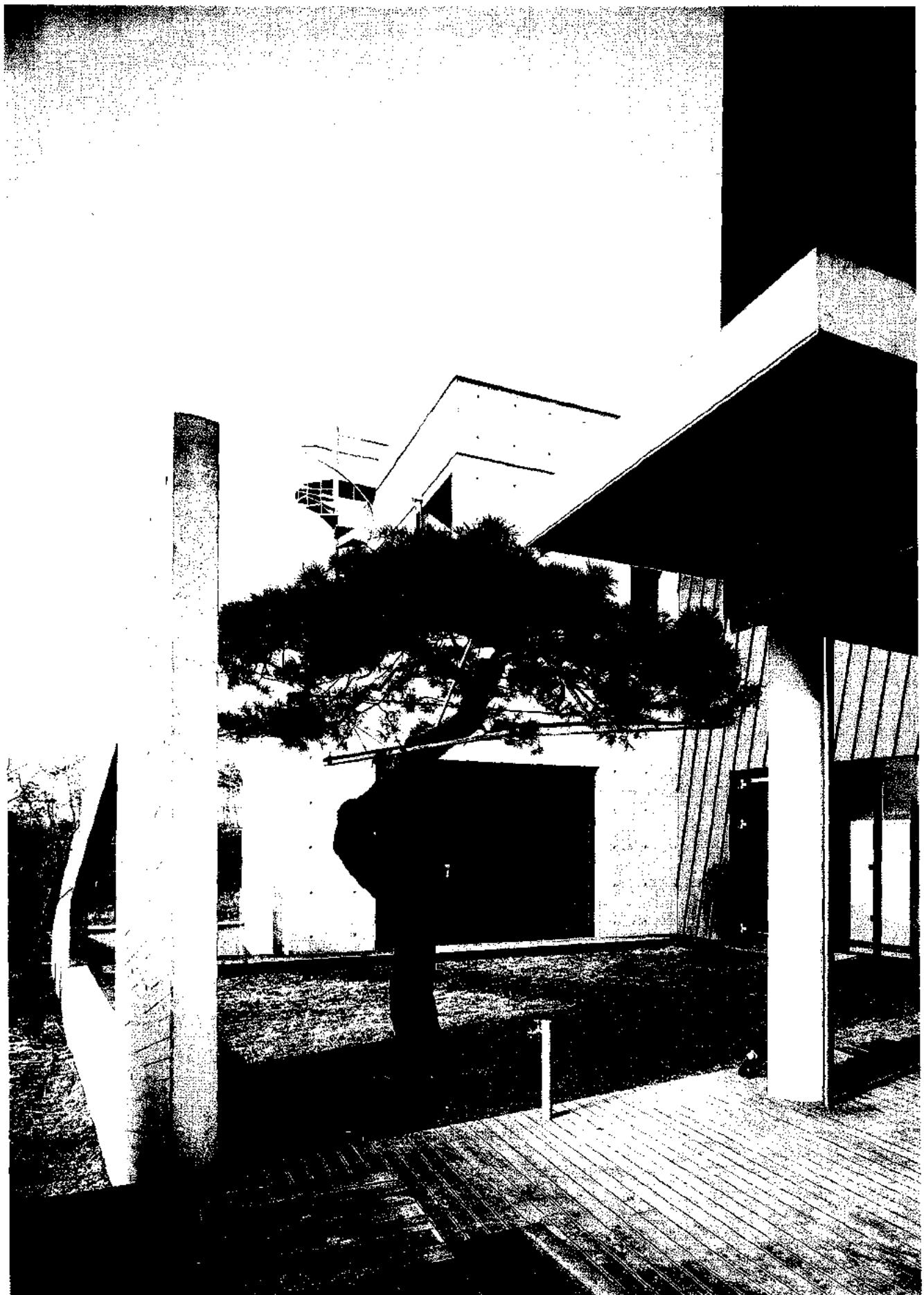
지하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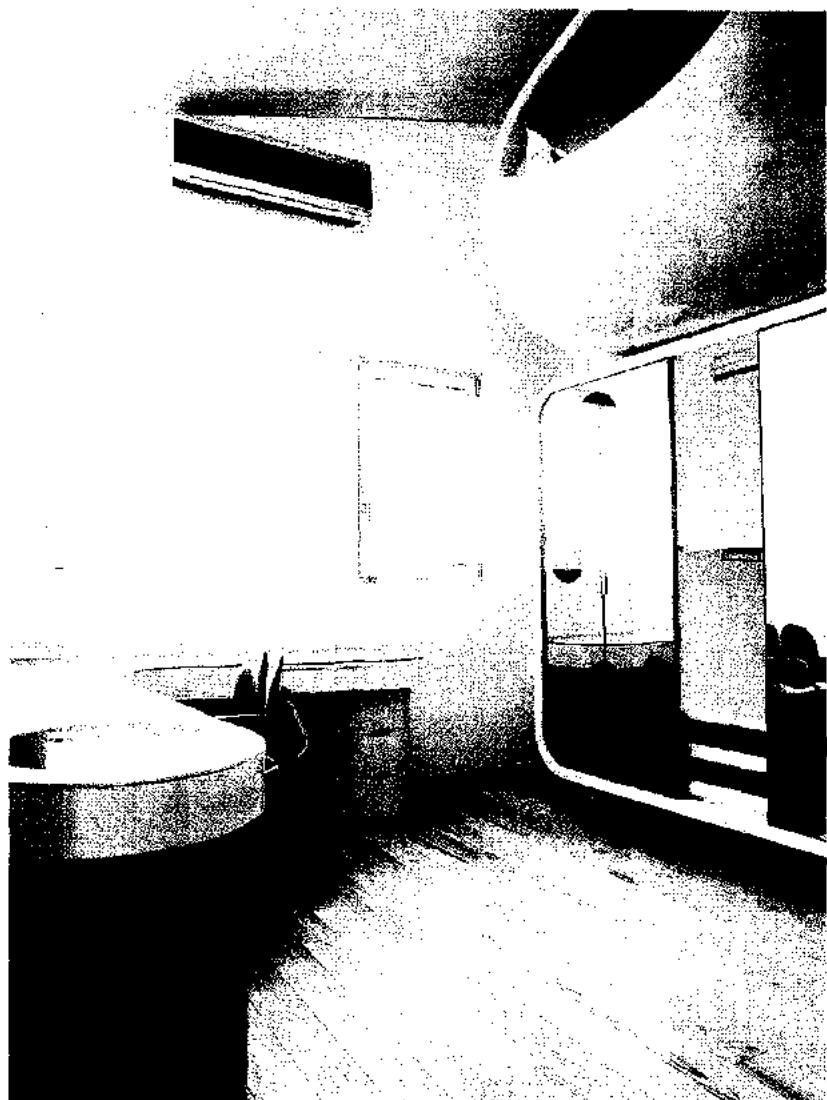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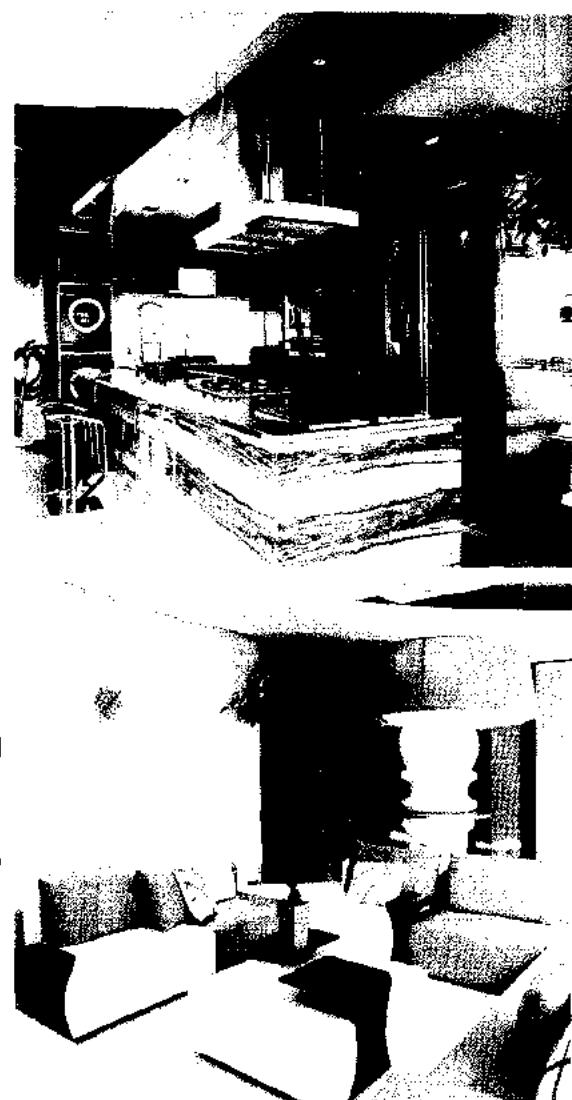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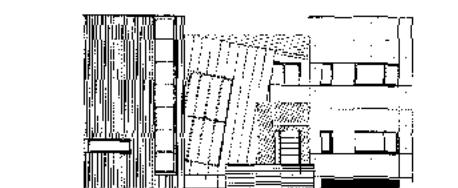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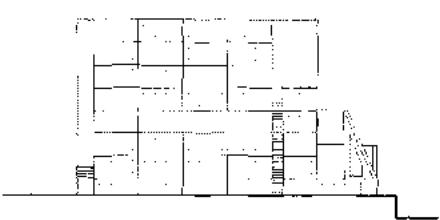
1. 내구재단
2. 2층 대이방
3. 수방
4. 거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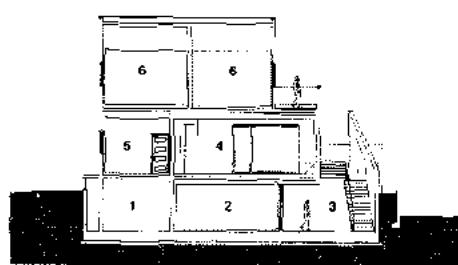
01_ PT
02_ 거울
03_ 선반
04_ 거실
05_ 시제 손난로
06_ 자녀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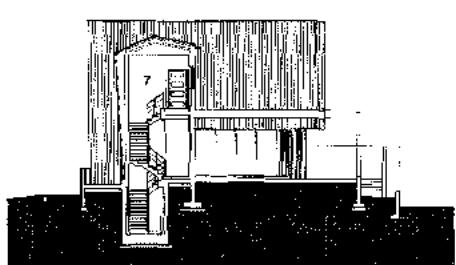
정면도



우측면도



총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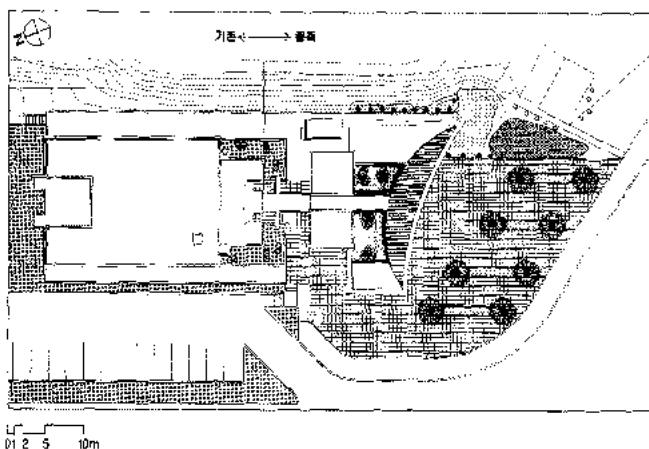
횡단면도

회원작품 | Works

유상훈 / 정희원, 에드아키키 건축사사무소
by Yoo, Sang-hoon, KIRA

영도구청사 보건소 및 열린공간 Yeongdo Public Health Center & Open Plaza

•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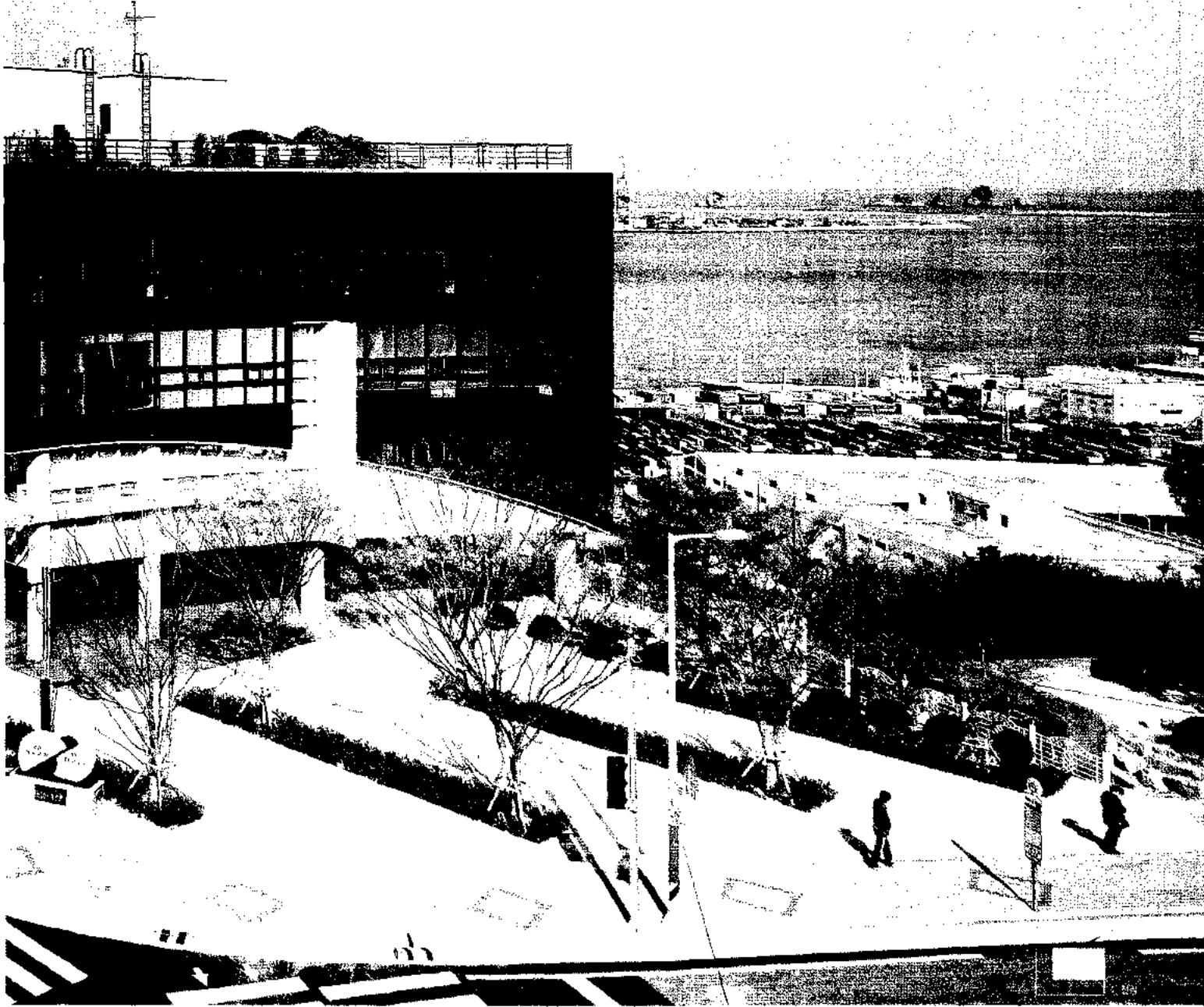
• 건축개요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동 48-3번지
지역/지구	자연녹지, 제2종일반주거
주요용도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보건소)
대지면적	27,017.00m ²
건축면적	752.56m ² (층면적: 310.66m ²)
연면적	1,838.71m ² (층면적: 863.57m ²)
건폐률	2.79%
용적률	6.54%
구조	지하 1층, 지상 4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화강석, 저반사복층유리, 칼라복층유리, 알루미늄복합패널
구조설계	창구조 엔지니어링
설비설계	우일기술단(주)
전기설계	(주)아정이앤씨
시공사	신천건설
설계담당	박진신, 박명순
사진	윤준환
Location	48-3, Cheonghak-dong, Youngdo-gu, Busan-si, Korea
Site area	27,017.00m ²
Bldg area	752.56m ²
Gross floor area	1,838.71m ²
Bldg coverage ratio	2.79%
Gross floor ratio	6.54%
Structure	R.C
Bldg. Scale	B1, F4



영도구청사 증축 보건소 및 열린공간

기존의 협소한 보건소 건물을 증축하여 영도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상 공모방식을 통하여 건립된 이 보건소는, 실시설계 당시 당초 지침보다 더 많은 면적을 보건소 측에서 요구 하였지만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면적의 증가 없이 효율적인 평면계획을 통하여 요구조건을 해결하였으며 이러한 변화과정 속에서도 공모당시에 고려되었던 몇 가지 중요한 개념을 유지시키려 노력하였다.



민자 증축부지가 영도구청사 주차입부 조입에 위치하고 있어 곡선형 저면도로에서의 인식성과 진입시 느낌은 이미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골드매스로 이루어지는 저면을 통하여 가로내음을 통한 자연스런 인식성과 포근하게 감싸주는 모습을 느끼도록 하였고, 유리재질을 통해 두께감과 현대성의 표현으로 위압감 보다는 친근하고 세로운 공공청사의 이미지를 구현하여, 일반 민원인들이 보다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해 보았다.

그리고 기존보건소와 증축보건소와의 관계설정에 있어, 기존 보건소의 직선적이고 무게감이 있는 솔리드한 모습과 대비되는 증축보건소의 곡선적이고 보이드하면서 경쾌한 모습을 통하여 신, 구 건물의 긴장

되 조화 즉 대화(Dialogue)를 통한 통일감을 이루려 해보았다.

또한 그 신, 구 건물의 사이공간은 기능적 연면의 의미를 넘어서는 시각호랑을 둑으로서 청사너부 진입마당과 외부환경과의 공간적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공사가 드러나지에 이르렀던 올해 초에 구청의 적극적인 열린 행정의 일환으로, 구청 정문 주변의 경비실, 담장 등 각종 지장물들을 없애고 증축보건소 전면 사유지까지 매입, 증축되는 보건소와 연계되는 열려 있는 진입광장이 조성되어 주민들에게 보다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청사의 이미지가 추가로 마련되는 기쁨을 맛 볼 수 있었다. ■





1. 주권주의의 전통과 2. 확장 주제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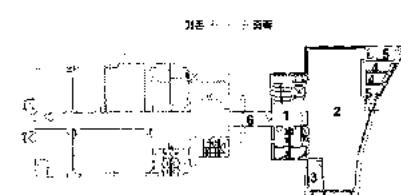
- 01. 출
 - 02. 우동처방실
 - 03. 학교
 - 04. 사무실
 - 05. 담임선
 - 06. 보도
 - 07. 무인교습장
 - 08. 사무실
 - 09. 소집실
 - 10. 조사실
 - 11. 엘리프장
 - 12. 로비
 - 13. 가스정압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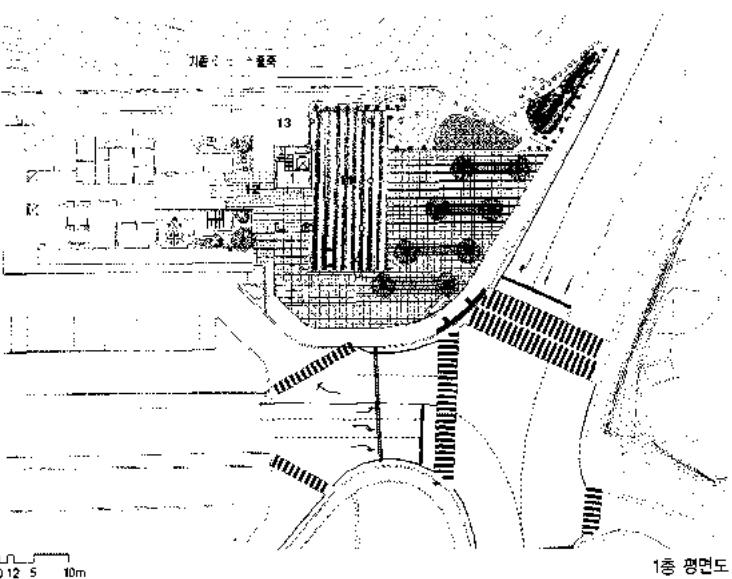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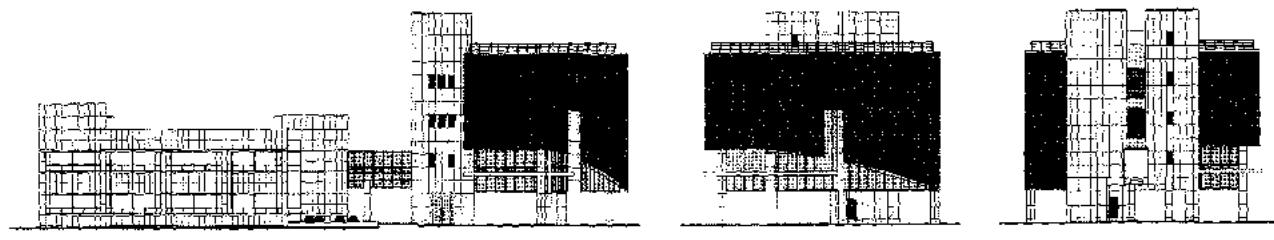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100 韓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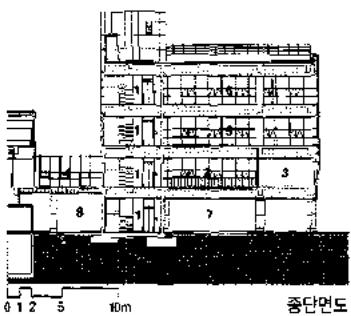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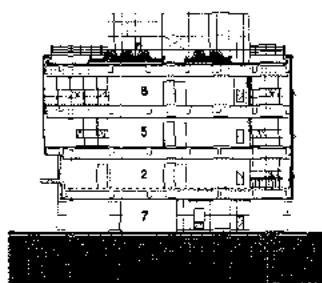
우측면도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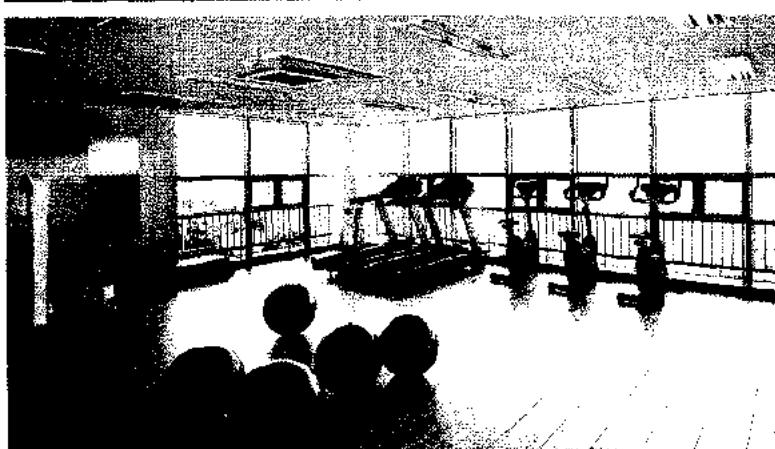
종단면도



횡단면도

01_홀
02_운동체험실 및 영양실
03_샤워실
04_교도
05_보건교육장
06_사무실
07_열린광장
08_주방

1. 층고
2. 페인트 그림
3. 원목으로
4. 보건교육장
5. 운동체험실



남양주 양지 e-편한세상 Namyangju Yangji e-Pyeonhansesang Apt.

● 배치도



●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514번지 일대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주요용도	공동주택
대지면적	84,318.00m ²
연면적	224,475.723m ²
건폐율	17.41%
용적률	199.02%
규모	지하 1층, 지상 10~20층, 24개동, 1,302세대
구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주요마감	화강석, 블록/외부용 수성페인트
구조설계	(주)아리구조 기술사사무소
전기설계	(주)동호기술단
토목설계	(주)대교컨설팅
기계설계	(주)대오엔지니어링
시공사	대림산업(주)
설계총괄	김성배
설계담당	여석구, 유정식, 박성욱, 김유진
사진	윤준환

Location 514, Yangji-ri, Onam-eup, Namyangju-si,
Gyeonggi-do, Korea
Site area 84,318.00m²
Gross floor area 224,475.723m²
Bldg coverage ratio 17.41%
Gross floor ratio 199.02%
Structure R.C
Bldg. Scale B1, F20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양지 e-편한세상은 단지 외적으로는 풍부한 자연 녹지자원을 갖추고, 단지 내부로는 넓은 오픈스페이스와 다채로운 조경공간을 조성한 친환경 아파트이다. 풍부한 녹지, 다양한 주민 커뮤니티 공간, 자연과 가까이 하는 생태체험공간을 단지 내의 양질의 커뮤니티 시설과 연계하여 주민생활의 질을 높이고 있다. 그 독창성을 인정받아 미술저작권을 획득한 아파트의 입면디자인과 조화롭게 어울리는 외부공간의 디자인은 단지의 품격을 더욱 높인다.

양지 e-편한세상은 철마산 자락과 맞닿아 있고 오남천이 주변으로 흐르는 전형적인 배산임수의 지형이며 대지의 남쪽에는 균린공원이 위치하고 있다. 계획 초기단계부터 철마산과 오남천을 잇는 녹지축을 계획하고 주변 자연녹지자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를 통하여 단지 내 어디에서나 신과 하천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하고 단지내부와 주변환경과의 연계를 도모하였다. 또한 입주민의 주거 편의를 고려한 남향의 단지 배치도 눈길을 끈다. 동간거리를 넉넉하게 확보하기 위해 판상형 주동과 탑상형 주동을 골고루 섞어 일조권과 통풍성을 높였다.

양자 e-편한세상의 가장 큰 특징은 치별화된 커뮤니티 공간의 제공이라고 할 수 있다.

실내골프장, 피트니스 센터 등 고급스포츠센터 수준의 13여개가 넘는 다양한 주민공동시설이 있어 단지 안에서 다양한 레저 및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되어있고 이러한 설계 의도는 외부공간에도 잘 반영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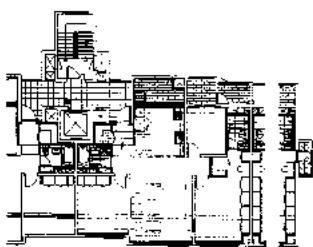
있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외부공간이 단지전체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상쾌한 바람이 부는 아침이면 주민들은 단지를 순환하는 산책로를 따라서 산책과 조깅을 할 수 있다. 조깅로를 따라 다양한 종류의 수목들과 풍부한 녹지공간이 쾌적성을 더욱 높여준다. 또한 단지 곳곳에 조성된 휴게공간에는 다채로운 수목을 식재하고 다양한 조각품의 설치하여 주민들이 더욱 친밀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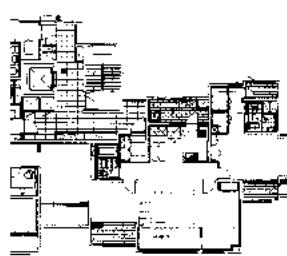
뿐만 아니라 단지내를 흐르는 실가천 주변에는 데크를 이용한 휴게시설을 조성함으로서 주민들에게 체험과 휴식, 조망을 함께하는 다용도의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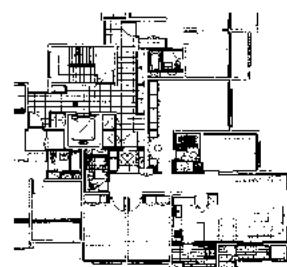
1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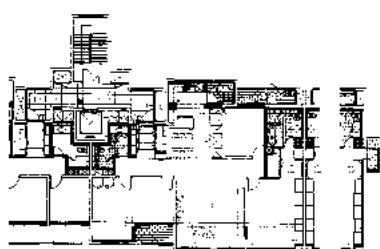
34평 a형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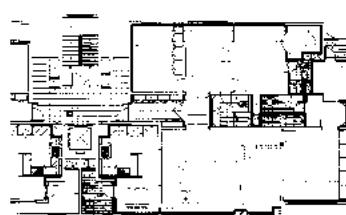
34평 b형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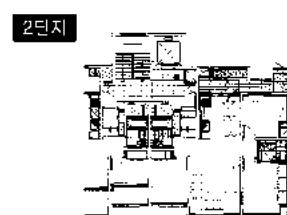
41평 평면도



47평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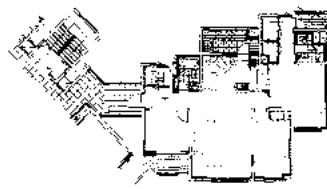
57평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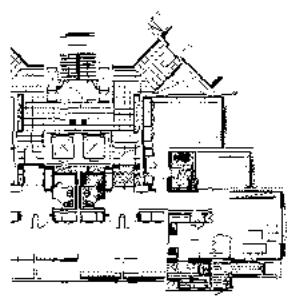
25평 평면도



2단지



34평 평면도



41평 평면도







1. 중앙강장 이경
2. 흰성
3. 수영장
4. 승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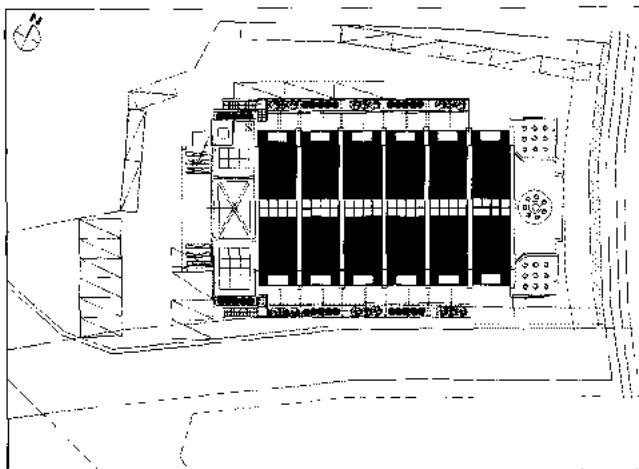
회원작품 | Works

최석중/정희원,(주)E&A건축사사무소
by Choi, Suk-jung, KIRA

박재승/한양대학교 공학대학 건축학부 교수
by Park, Jae-seung, A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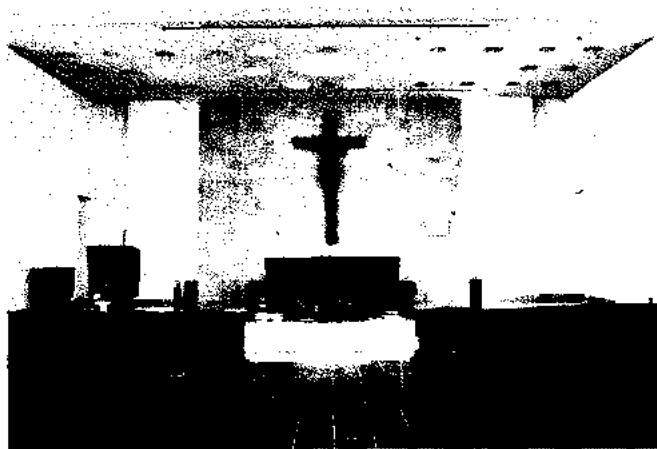
토평성당 Topyng Catrolic Church

•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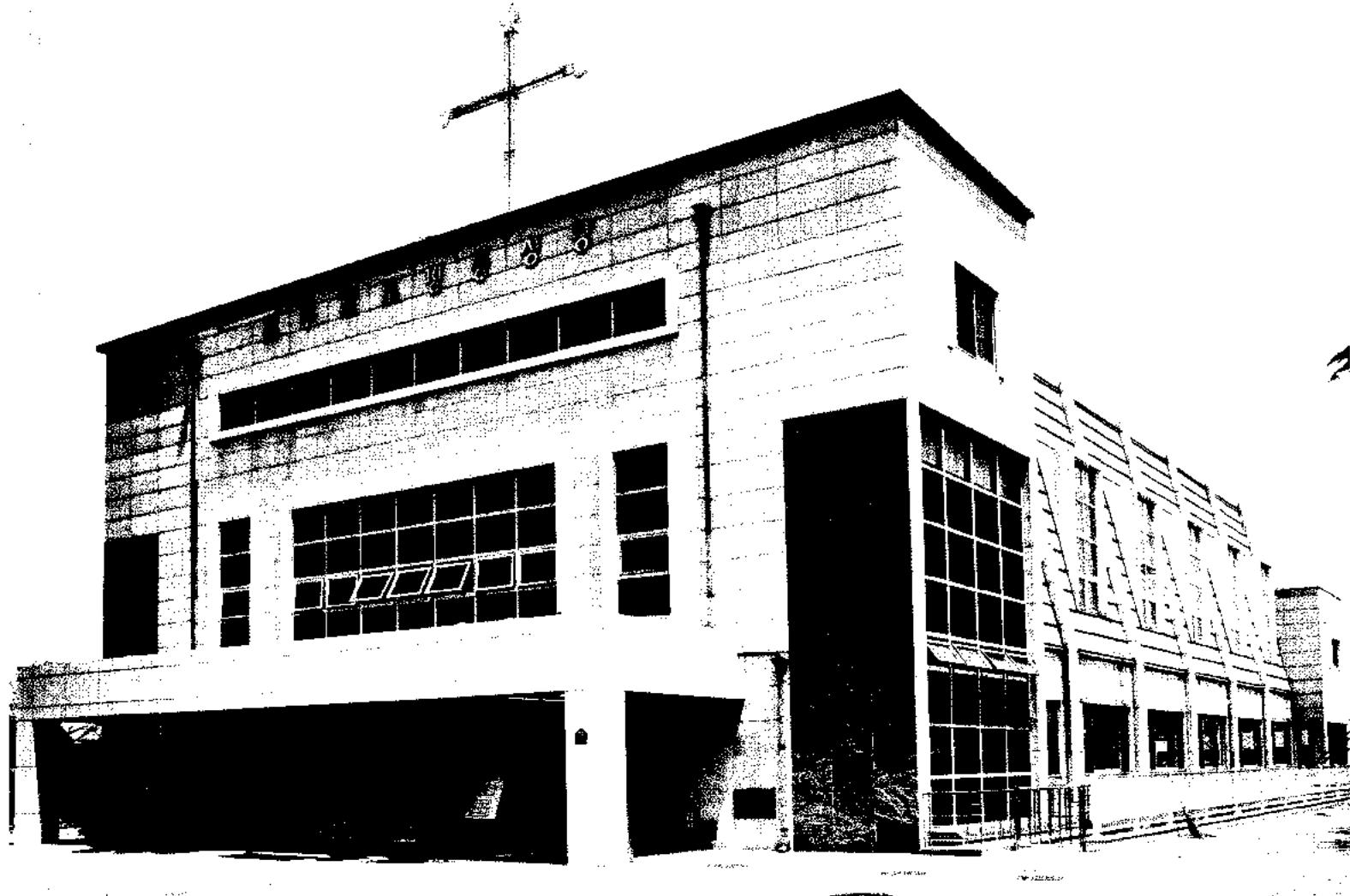
•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280-1
지역/지구	제1종 일반주거지역
주요용도	종교시설(성당)
대지면적	2,103.00m ²
건축면적	782.92m ²
연 면 적	2,442.43m ²
건 폐 율	37.23%
용 척 률	80.71%
규 모	지하 1층, 지상 3층
구 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화강석 벼너구이, 안도사암, 산화동판
내부마감	화강석 물길기, 다채무늬도료, 암연촘음텍스
구조설계	정석봉(주) 한림구조
전기·설비	남공영, 이선경(주) 건일엠아씨
시공사	김철중(주) 한건종합건설
설계담당	신명재, 손승환, 주현돈, 한승우, 이기윤, 박영철



Location 280-1, Topyng-dong, Guri-si, Gyeonggi-do, Korea
Site area 2,103.00m²
Bldg area 782.92m²
Gross floor area 2,442.43m²
Bldg coverage ratio 37.23%
Gross floor ratio 80.71%
Structure S.R.C
Bldg. Scale B1, F3

1. 대다
2. 현경



토평동성당은 1997년 공소로 발족하여 숙원사업이었던 지역의 교회 공동체에 봉사하는 새 성전 건립에 대한 건축주의 의지가 건립 배경이었다.

신축성당의 계획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디자인 목표가 설정되었다.

먼저, 전통교회의 특징인 바실리카적 공간의 존중과 재해석과 환경친화적 건축요소의 도입, 교회 공동체에 편안하게 다가가는 건물의 외관 디자인, 라틴크로스 교회형태의 텍토닉한 구조요소의 적극적인 표현이다.

구리시내 별말삼거리에서 진입하는 8m 도로상에 위치하고 있고, 동서로 긴 대지축을 따라서 성당을 배치하였다. 부지 서측의 8개 도로를 주진입 방향으로 보행자 및 차량이 접근하고 동측의 4개 도로에서도 출입이 가능하다. 대지의 동, 남쪽으로는 매우 양호한 전망이 전개된다.

지하1층은 친환경적 개념을 적용하여 우천시에도 사용 가능토록 천창이 부착된 나목적 선큰가든을 건물 남북측에 1개소씩 배치하여 교리실과 종 회의실이 지하임에도 불구하고 지상층과 같은 수준의 채광과 환기가 가능토록 하였고 대나무와 토담을 배치하여 전통정원의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또한 지상으로의 옥외연결계단을 통해서 접근과 피난의 용이성을 주구하였다. 1층 공간은 사무공간과 소성당, 식당을 배치하였고 계단벽면을 스크린월로 하여 밝은 실내와 조망을 통해서 외부로 열려있는

내외공간의 상호관입을 쇠하였다. 성당의 2층은 주제간을 통해서 접근되고 대성당(500석), 유아실, 고백실, 저의실, 재구실, 제대의 구성요소를 갖고 있으며 3층은 성가대, 준비실, 신도석으로 구성되어 전례에 필요한 기능이 완결되었다.

디자인 목표에서 전통적 교회가 갖는 텍토닉한 요소를 재해석하여 지붕보, 경사기둥, 수직기둥을 일체화하여 노출하고 반복시킴으로서 건물의 외관에 리듬감을 부여하고, 매스의 분절효과를 의도하였고 내부에서는 제대를 향해서 나가는 투시효과를 주는 열주의 상징성을 유추적으로 표현하였다. 공간 구성의 Focal Point로서 제대공간은 단순한 프로세니움 박스로서 처리되고, 제대상부에는 7성사를 상징하는 7개의 채광창을 달아 종교적 상징성을 부여하였다. 제대 배면은 단순한 색상으로 처리하고 벽면 양쪽 단부에서 빛이 뻗어나오는 처리를 하여 후광효과를 의도하였다. 건물외부는 화강석 마감을 주재료로 하여 견고한 외관을 형성하고 교회의 전통적 색채인 벽돌색을 인도사암을 사용하여 액센트적 요소로 처리하였고 지붕재료인 산화동판은 2층과 3층 벽면으로 연장되어 편안한 느낌과 동시에 붉은 인도사암과 색채적 대비를 이룸으로서 입면의 생동감을 부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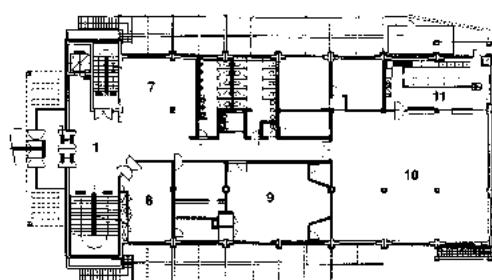
텍토닉한 구성적 표현요소인 지붕보, 경사기둥, 수직기둥의 일체화된 구조요소는 지하 선큰가든까지 연장 노출되어 수직적 리듬감을 극대화 시키고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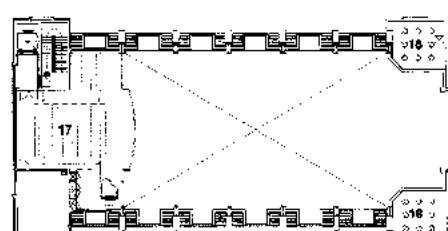


1. 좌측면 전경
2. 우측면 전경
3. 대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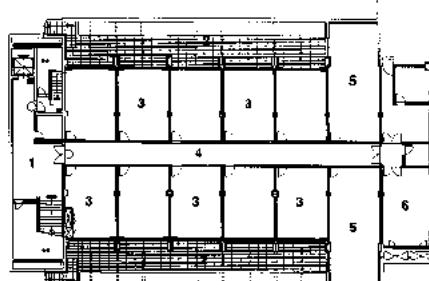
01_ 을	06_ 전기실	11_ 주방	16_ 세의실
02_ 다목적선관가든	07_ 만남의 공간	12_ 우아실	17_ 성가대실
03_ 교리실	08_ 시무실	13_ 대성당	18_ 글라이트
04_ 복도	09_ 소성당	14_ 계단	
05_ 회의실	10_ 세장	15_ 재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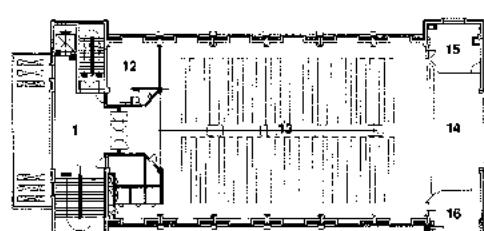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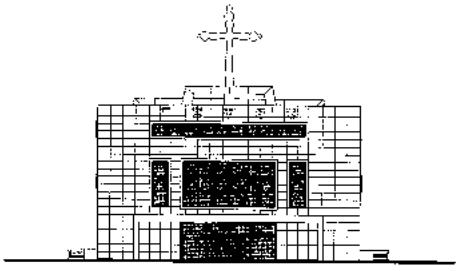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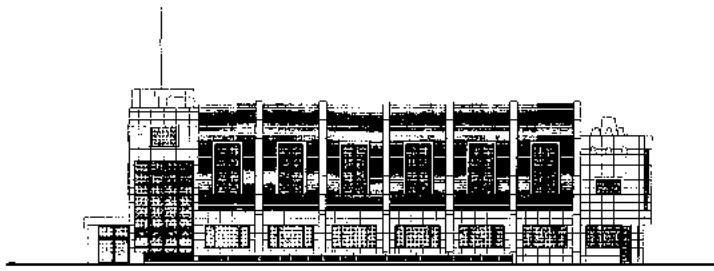
지하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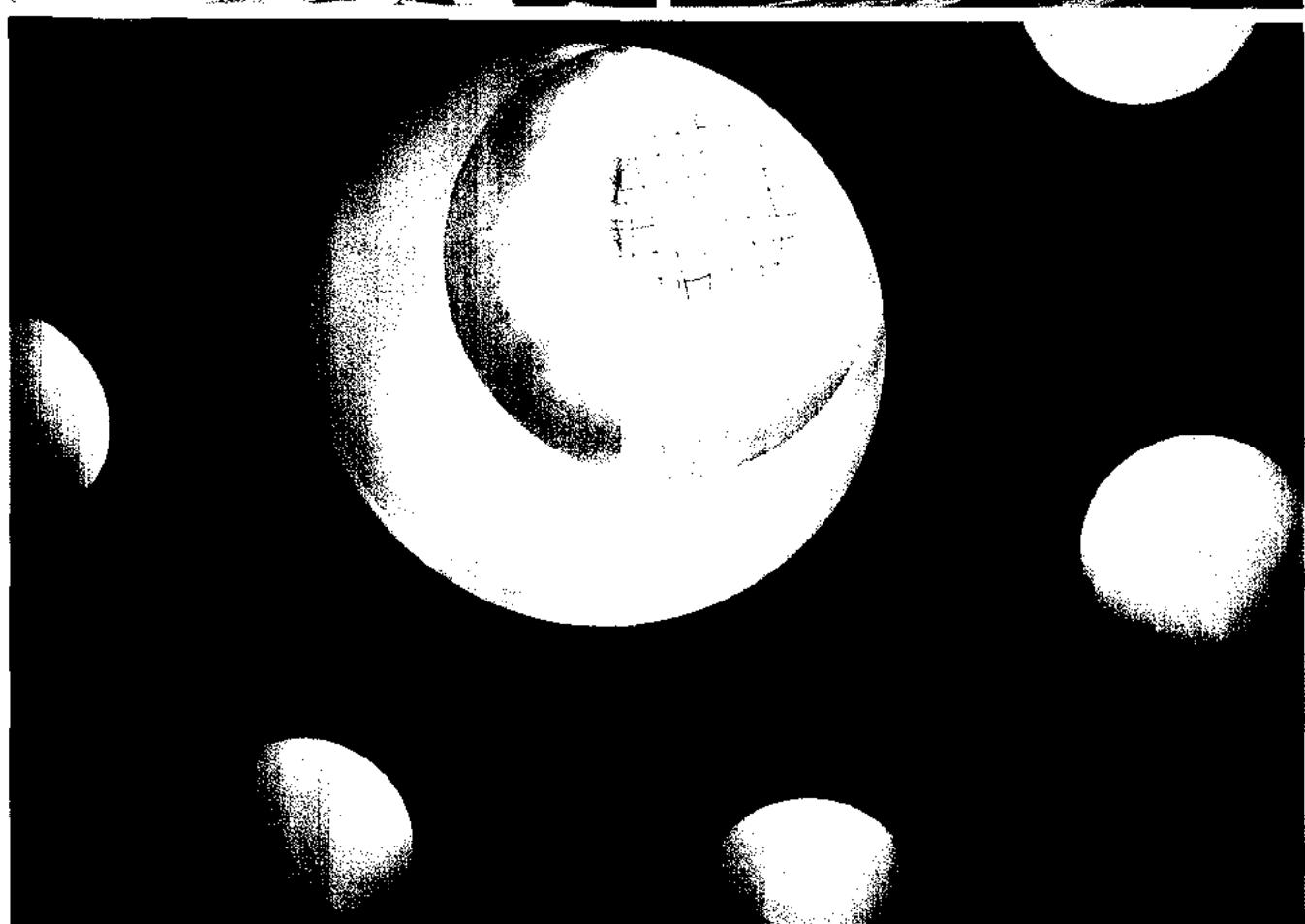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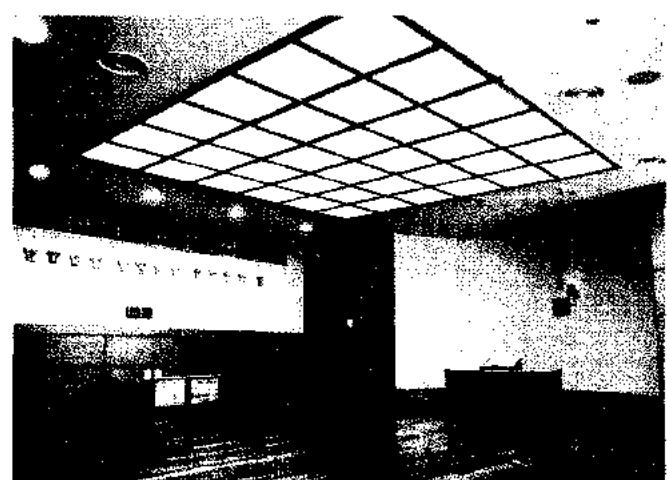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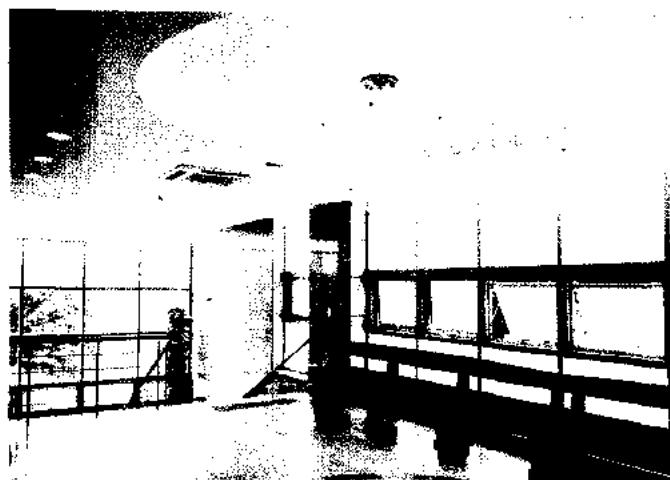


정면도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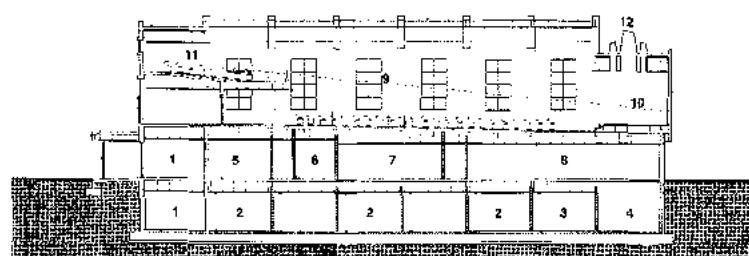
시무실 주세단
2. 옥
3. 성내역

4. 풀
5. 소성당
6. 세인부 대상장

01. 풀
02. 교리실
03. 회의실
04. 전기실

05. 사무실
06. 성모관마사
07. 소성당
08. 식당

09. 대승당
10. 제대
11. 성가대석
12. 둘은이트



단면도

건축설계의 저작권과 그 향후 전망

Copyright of Architectural Design and its Prospects
for the Future

건축이 최근 지식경제부의 영역으로 편입되면서, 건축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그간 국토해양부와 문화체육부 산하에서만 이루어지던 내용위에 '자식이란' 측면의 중요성이 추가로 얹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그간 문화·예술·기술·산업 분야로 정의되었던 건축이 저작분야를 포함하면서 건축의 본질적 정의에 많이 가까워진 것으로 판단된다.

사실, 건축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서 본질은 하나인데, 관찰자의 시점에 따라 때로는 예술로, 때로는 기술로 다르게 표현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고, 이는 건축의 정책이나 기준 등을 결정하는데 혼선을 야기하여 왔던 것도 사실이다. 이런 건축의 다원적 측면을 감안해 볼 때, 건축의 저작권을 언급한다는 것은 상술한 예술, 기술, 자식의 모든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도구로 건축을 본질적으로 재정의 할 수 있는 중요한 개념이라 생각된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최근 몇 건의 주목할 만한 저작권 관련 소송에서는 모두 설계자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판결이 내려지고 있으며, 5월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결론을 낸 "건축설계 입상작의 저작권은 설계자에게 있다"라는 판단은 국내의 주요한 발주기관인 조달청, 주택공사, 토지공사, 용인시, 안양시를 상대로 거둔 성과로 이런 논쟁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즈음하여, 대한건축사협회는 저작권의 눈으로 본 현재 건축과 건축설계에 대한 제도적 검토를 하고, 향후 전망과 준비해야 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본 특집을 기획하게 되었다.

본 특집은 저작권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거나, 마무리 하자 하는 목적이 아닌, 건축계에서 이를 계기로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 된다. 이를 위해 본 특집은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좌담회를 개최하여 저작권에 관련된 다양한 스펙트럼을 확인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기술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전문가의 의견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지금까지 건축설계 계에서 벌어졌던 저작권 관련 침해사항을 살펴, 당시 어떤 해결이 있었는지 알아보고, 외국의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며 두 번째는 적인 측면에서 건축설계 저작권의 내용을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이를 통해 향후 저작권을 이용한 건축설계의 전망과 비전을 확인하고자 한다.

최근, 건축설계분야가 어려운 형편 속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어려움의 원인은 저작권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 만큼 오늘날 건축설계를 담당하는 우리 건축사들의 책임이 크다는 것은 확실한 것이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다. 이제 부터라도 건축설계가 건축 산업내에서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모두 힘을 합하여야 할 것 이고, 금번 기획된 특집이 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잘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건축설계의 저작권과 그 향후 전망' 좌담회

배경 및 목적

본 토론회는 대한건축사협회가 공정위에 제소하여 지난 5월29일 승소한 「건축설계 입상작의 저작권은 설계자에게 있다」라는 판결의 후속 조치로 건축사지편찬위원회가 기획한 「건축사」지 특집의 일부로 기획된 토론회이다. 따라서 본 토론회는 공정위 소송의 경과를 간략히 듣고, 저작권이란 눈으로 다시 건축과 설계를 재조명하고자 하는 자리이다.

일 시 : '09. 7. 3(금) 19시

장 소 : 건축사회관 국채회의실

주최 : 대한건축사협회

주관 : 건축사지편찬위원회

프로그램

- 17:00 ~ 18:00 : 각 단체 편집장 회의(8층 편집실)
- 19:20 ~ 19:25 : 좌장 및 발표자, 토론자 소개(사회자)
- 19:25 ~ 19:30 : 배경설명 및 진행방법 안내(사회자)
- 19:30 ~ 20:10 : 주제발표 I
 - 발표자 : 최영진, 박인수, 조준배
 - 건축설계가 저작권을 빼앗긴 이유와 그 결과
- 20:10 ~ 20:40 : 주제발표 II
 - 발표자 : 김현철, 조준배, 박진호
 - 국내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과 외국의 경우는 어떠한가
- 20:40 ~ 21:10 : 주제발표 III
 - 발표자 : 박인수, 조준배, 김병운, 최동규, 박진호
 - 향후 국내 건축과 건축설계, 그리고 관련 산업에 미칠 영향은 어떠한가?
- 21:00 ~ 21:40 : 자유토론(질의응답) 및 종합정리

주제

제1주제 : 건축설계가 저작권을 빼앗긴 이유와 그 결과

제2주제 : 국내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과 외국의 경우는 어떠한가

제3주제 : 향후 국내 건축과 건축설계, 그리고 관련 산업에 미칠 영향은 어떠한가?

발표 및 토론



좌장



조준배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설계연구실 실장



사회자



김현철
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장



최영진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김병운
한국건축기협회
편찬위원장,
대전대학교 교수



이강업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부 교수



박진호
「건축과 사회」 편집장
인하대학교 교수

박인수_건축설계의 저작권과 그 향후 전망 좌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대한건축사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처의 설계경기와 관련된 불공정한 계약내용에 대해 소송을 제기, 지난 5월 19일 공정거래위로부터 '건축설계 입상작의 저작권은 설계자에게 있다'는 결론을 얻어냈습니다. 그 이후 우리들의 과제들이 더욱 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종합적이지도 체계적이지도 못한 건축설계 저작권에 대한 정리와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오늘 좌담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좌담회는 크게 3가지의 주제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설계가 저작권을 빼앗긴 이유와 그 결과'와 '국내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과 외국의 경우는 어떠한가' 그리고 '향후 국내 건축과 건축설계, 그리고 관련 산업에 미칠 영향은 어떠한가?'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좌장이신 최동규 건축사자지편찬위원장님이 진행하시겠습니다.

최동규_저작권으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소송까지 가게 될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젊은 박인수 건축사의 의지에 제가 기꺼이 동참할 수 있었으며, 한명수 전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의 긍정적인 검토가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바로 제1주제 '건축설계가 저작권을 빼앗긴 이유와 그 결과'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최영집 대한건축사협회 회장과 박인수 건축사 그리고 특히 이강업 교수는 본인이 설계, 기획한 작품을 티인이 무단으로 실시 설계를 함으로써 실제 저작권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좋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협회 최영집 회장은 저작권에 대해 별소 관심이 깊으며, 이번 승소에 만족하지 않고 설계자가 감리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복안이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제1주제 : 건축설계가 저작권을 빼앗긴 이유와 그 결과

최영집_ 오늘 좋은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건축은 창작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며, 건축사가 창작의 주역이라고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작에는, 창작에 대응하는 권리가 있어야 하고 또한 의무도 있어야 합니다. 창작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기에 창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또 그 능력을 사회에 보여주어 인정을 받아야 비로소 창작이라는 수준이 되는 것이고, 창작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이뤄졌을 때, 작가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권리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사건이 건축 전체의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고,
건축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야"**

건축은 위대한 창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에 있어서의 저작권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풍토 속에서 건축사들은 묵묵히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는 타 창작인들은 스스로의 창작활동을 통해 자신의 작품을 완성하고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지만 건축은 스스로 창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극히 적고, 반드시 주문자가 있어야만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보니 건축설계의 창작자는 항상 약자의 입장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공공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갑과 을의 관계로 출발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계약서에는 저작권은 갑에게 있다고 명기돼 있었고 이에 대해 우리는 항상 가슴 아파해 왔습니다. 이러한 태생적인 약점 때문에 건축이 위대한 창작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공공적으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 아픔을 이 자리 모든 분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건축을 개발시대의 생산품인 아닌, 이 땅의 문화를 이루

는 큰 주역이라고 생각할 때, 저작권은 당연히 보호되어야 하고, 그 저작권으로 인해서 건축의 질이 향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대한건축사협회 IMF팀이 이룬 성과는 극히 작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현상설계시 입상작에 대한 저작권만 설계자에게 있다는 협의의 해석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연하게 건축전체의 저작권이 설계자에게 있는 것으로 확대해석을 해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당면 과제입니다.

우선 공공건축물, 대형발주처에서 나오는 프로젝트 먼저 시작해서 설계자의 권리와 의무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근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작권을 인정받으려면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저작권을 인정받을 만큼 작품의 수준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하며, 그것을 보호할 만큼 사회적으로 설계의 작품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 볼 때 이 작은 사건이 건축 전체의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고, 건축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야 하며 그 주역으로서 건축사의 업무가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동규_ 말씀의 요지는 음악이나 미술 등의 창작과는 다르게 건축은 '발주처'가 있어야만 된다는 작가의 특수성으로 인해 창작의 인정이 한계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번 좌담회를 참석하기에 앞서 '건축설계 저작권'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았습니다. 건축에서도 이미 설계도, 모형, 건축물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게끔 돼 있었습니다. 저도 이 사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좌담회를 주도적으로 역할을 한 박인수 건축사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작동회 전경

박인수_ 의견을 말씀 드리기야 앞서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된 사건은 지금히 개인적인 문제로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 개인적인 문제가 조직적으로 움직이게 되었다는 점이 뜻 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발주의 주체에 따라 다양한 프로젝트가 나눠질 수 있는데, 개인이 발주를 내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협의를 통해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사와의 공공프로젝트를 진행하다보면, 불공정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승소 직후 낭보! 석유공사, 사옥 현상 저작권 설계자에 있고, 공사는 일회 사용권한을 갖는다고 저침변경”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는 라디오 안에서 이러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대형마트를 상대로 마트 내 입점하는 상인들이 소송을 걸어 승소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엄연히 불공정한 거래가 이뤄지고 있었고, 공정거래위원회도 소상인들의 손을 들어주었던 것이지요. 그럼 우리 건축계의 불공정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가 나오지 않겠나 싶어 변호사인 친구에게 자문을 해보았더니,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최동규 건축사와 대한건축사협회 한명수 전 회장 및 새건축사협의회 이필훈 회장에게 의견을 전달, 전폭적인 지지를 통해 승소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설계자의 권한에 대해 찾아보았는데, 설계도서에 대한 권한은 현장에서 막강한 효력을 보입니다. 그러나 설계한 사람에 대한 권한은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말이지요. 도서에 대한 권한은 있지만 그 주체인 설계자에 대한 권한은 없습니다. 즉, 설계자는 도면을 그리는 것 외에는 능력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지식 범위에서 설계자가 가질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은 유일한

것이 저작권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래한 대로에서 저작권이 향후 건축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금 우리가 어떻게 다르느냐에 따라 크게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일련 과정 중에 한 가지 말씀 드릴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던 발주처 5개 기관(토지공사, 주택공사, 용인시, 안양시, 조달청)들과 의견 개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에서는 “설계경기에 대한 상금을 지급했기에 저작권을 산 것이다.”라며 “일정부분 설계에 기여 및 관여를 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저작권이 있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또 용인시 같은 경우 “용인시의 건축물은 시의 얼굴인데, 만약 건축사가 다른 지자체에 같은 디자인을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반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저작권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는 계약조건 혹은 별약으로도 해결될 수 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다고 합니다. 지역 내의 문화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이 나자마자 석유공사 사옥 현상의 저작권은 설계자에 있고, 공사는 일회 사용권한을 갖는다는 지침변경을 보내와 기뻤습니다. 그러나 몇몇 현상설계는 아직도 저작권은 설계자에게 있다고 하면서 자신들에게 모든 것이 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즉, 변형된 저작권 침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튼 오늘 좌담회를 통해서 좋은 의견들이 개진되기를 희망합니다.

최동규_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원고로서 소명 시에 박인수 건축사와 동행했는데, 상대편의 소견이 정말 궁색해서 상식을 가진 심의위원들이 즉시 이유 없음으로 기각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작권을 장기간 허용해왔던 것은 우리의 계으름이었다는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알려져 공공기관에서의 계약조건이 개선되고 있다니 그나마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강업_잘 아시다시피 건축설계의 상당부분은 모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에서 저작권을 논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 고전양식, 중세 고딕양식 등에 대해 저작권을 논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건축발전의 많은 부분이 모방에 의존하고 있으며 따라서 건축설계 저작권은 모호한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대 건축교육에서는 다양한 건축기술과 설계기법을 학생들에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러한 교육을 바탕으로 사회에 진출해서 창작활동을 하는데,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라면 본인의 행위가 저작권 위법인지 아닌지는 스스로 판단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일부 몰지각한 건축주와 건축사들이 저작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도덕성과 교육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건축단체 통합 후 전문위원회를 통해 제도 정비해 문제 발생할 시 판사가 옳은 결정 내리도록 해야"

이미 본인은 저작권 문제로 2000년도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제가 한 건축설계를 모 건축사가 부분 수정해서 준공한 다음 여러 건축 관련 상을 수상한 사실을 알고 그 건축사에게 몇 차례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자신의 디자인이라고 밝히는 바람에 저 또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재판을 진행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저작권에 대한 제도적인 보호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법관 또한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판단할 근거가 없었고 소송기간이 3년이 걸렸으며 그 사이 부장판사가 3번이나 교체가 됐습니다.

게다가 마지막 담당 부장판사가 강제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기각을 하겠다는 설득에 하는 수 없이 일부 손해배상을 받고 상대 건축사가 일간지에 해명하는 선으로 일단락 지은 바 있습니다.

재판을 진행하면서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도적으로 저작권은 어디에서부터 인정을 해야 하는가?'였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건축의 기본개념이 정리가 되면, 저작권에 대한 범위도 정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어느 공무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교수님께서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었으나, 실질적인 설계는 ○○건축사사무소에서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시설계를 하는 곳에 저작권이 있구나 하고 느끼게 했습니다. 건축설계저작권에 대한 제도적인 정비가 안된 것입니다.

앞으로 건축단체가 통합을 앞두고 있는데, 전문위원회를 만들어 제도를 정비하여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시에 판사가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재판을 하는 동안 이러한 기반이 전무했으며, 제도적으로 정비가 되지 않은 한국 건축의 미래가 암담하게 느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동규_ 실제로 재판까지 하시면서 겪은 사건의 소회 등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제2주제 '국내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과 외국의 경우는 어떠한가?'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한국건축가협회 건축가지편찬위원장으로 계시는 김병윤 교수님께서 한 말씀해주시겠습니다.

제2주제 : 국내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과 외국의 경우는 어떠한가?

김병윤_ 지난해에 토마건축의 민규암 건축사가 어떤 상업광고에 자신이 설계한 건축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과 관련해서 소송을 전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작품이 TV를 통해 나왔을 때,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혀락도 없이 내가 설계한 건축물을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건축사는 첫 소송에서 패소를 한 후 두 번째 소송을 통해 승소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건축사의 손을 들어준 일화를 통해 본인의 작품을 왜 내 것이라고 그동안 말을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민규암 건축사, 상업광고에 자신이 설계한 건축물 무단 사용 관련 소송사건, 시사 하는 바 커. 건축단체 관련 위원회 설치, 교육과 대응 및 저작권의内外적 상황을 이끌어가야"

지난날 저도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건축주와 계약을 할 경우, 계약서 뒷부분을 잘 보지 않았습니다. 계약하기 급급하기 때문에 잘 보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둔탁한 건축을 만드는 밀비팅임을

알고 행な했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무튼 민규암 건축사의 소송 이후 건축사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었고, 좋은 교훈을 주었다고 봅니다.

건축설계의 저작권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건축물의 저작권에 대해 부여되는 저작권의 수준은 어디까지인가?', '현행 건축물 저작권에 대한 기본적인 사고는 어느 수준인가?', '건축 내부적으로는 인용과 모방의 범위를 어디까지 두어야 하는가?' 등을 검토하고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또 '재산권'과 '소유권'에 대한 문제도 그렇습니다. 내 건축물 가지고 내가 맘대로 사용하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할 것인가 하는 건축을 창작의 관점에서 보다 소유권의 관점에 집중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실행단계에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론적인 접근도 필요할 것입니다. 많은 계몽과 홍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건축가가 가지는 예술성과 독창성에 대한 부분이 독자성과 맞물려 어떻게 인정이 되고 어떻게 인지가 되고 어떤 과정에서 타인의 것과 내 것이 구분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이뤄져야 합니다.

문제가 부풀어져 결과론적 시비를 가리는 상황으로 건축의 저작권을

인식하여 모든 것을 법적으로 해결하려는 풍토도 없어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봅니다.

먼저 건축단체에서 이를 지켜보고 교육하며 대응하는 저작권의 내외적 상황을 이끌어가는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위원회에서 판단하고 처리할 수 있는 장치 마련도 필요할 것입니다.

최동규 법적인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 보다는 위원회 설치로 소프트하게 처리하는 방법론은 건설적으로 생각됩니다. 저작권위원회 같은 곳이 있어서 건축사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 과정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는 프랑스에서 건축공부를 하고 오신 조준배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설계연구실장에게 해외의 사례는 어떠한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엄격하게 되어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일상화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내적인 노력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독일과 같은 경우, 건축사사무소에 입사할 경우의 계약서에 지적 소유권에 관한 부분을 명확하게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이름으로 계약한 서류가 회사에 존재하는 상태에서 회사를 할 경우까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까지를 명기하고 있습니다. 입사 시에 지적소유권에 관한 본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회사와 새로운 조건 등 다양한 논의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우리 스스로가 당장 할 수 있는 것들도 안하고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작은 부분이지만 생활화해서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 내부적으로 먼저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준배 프랑스에서 제가 경험 한 것으로서, 민간 부문의 계약서 뒷부분에 지적소유권에 대한 부분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건축사가 할 수 있는 권한과 발주자가 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자세한 내용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사의 권한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분되어 명시되어 있고, 건축사가 설계한 도서들에 관한 권한을 물려줄 수도 있으며, 건축사가 작고 한 후 권한을 70년간 인정받을 수 있는 내용 등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또한 발주자의 권한으로는 계약서에 명시된 단 하나의 건물만을 지을 수 있으며, 저작물(건물)에 대한 변형을 위한 모든 공사는 사전에 건축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저작물에 관한 본질을 왜곡시켜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왜곡이 심할 경우 건축가는 작품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변형에 대해서는 반대 할 수 있다고 또한 건축사의 권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내용이 자세히 명기되어 있는 프랑스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소유권과 재산권에 대한 소송은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보다는 매우 앞서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반면 공공부문의 계약 시, 일본 같은 경우는 공단(UR)이라고 하죠. 국내로 치자면 공사 같은 성격의 기관의 계약관련 내용을 보면, 국내 상황과 비슷합니다. 계약서 '모든 저작권은 발주자에게 있으며 성과물이 저작권에 해당할 경우 저작권의 권리는 갑과 을이 공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건축사는 발주자의 협력없이 성과물을 공표할 수 없다고 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면을 보면 우리나라의 저작권에 대한 권한이 오히려 앞서 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저작권 권리가 오히려 앞서 가고 있어.

당장 할 수 있는 것들도 안 하고 있지는 않나,

우리 스스로 내부적으로 먼저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아"

이렇듯 우리나라의 상황과 비교해 보면 단순히 법적으로 명시된 분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적 소유권 중 건축저작물의 대상을 보면 영국은 건축물과 설계도면, 일본은 건축물만이지만 우리나라는 건축물, 설계도면, 모형 등을 대상으로 훨씬 더 넓게 명시되어 있

최동규 좀 전에 프랑스에서는 건물을 변경할 시 건축사에게 알려야만 하고, 추후 변형할 시 건축사가 반대할 수도 있다… 매우 고무적인 사례입니다. 이 두 구절만 명기할 수 있다면 아주 행복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로서 통상채플 옆에 시설이 필요해서 더 지으려고 하는 것도 어느 단체에서 반대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으로 계약해서 설계를 계획했다가 떠났을 때, 나중에 자기 이름으로 발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인데, 시저 펠리가 그루뷘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그때 캘리포니아의 구릉지에 계획만 하고 끝났던 것을 시저 펠리가 자기 사무실을 차리고 자신의 작품리스트에 올려놓았던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저작권에 대해서 저작권위원회의 법제실에 있는 김현철 선생님께서, 우리가 모호하게 알고 있던 것에 대하여 질책도 해주시고, 우리가 향후에 이것 말고 더 할 수 있다는 것도 알려주시면… 그 틈을 향해 향해 할 수 있는 지침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철 사실 제가 이 자리에 불려나오기 전에 많이 놀랐습니다. 제일 처음에 연락을 받았을 때에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 박인수 선생님이 이런 일이 있다고 정보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대한건축사협회가 공정거래위를 상대로 제소를 하고, 그것도 저작권을 이유로 제소를 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두 번째, 대가성을 강조하는 공정위가 돈을 받는 저작권 양도를 약관구제법 위반으로 결정을 해준데 또 한번 놀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 오면서 금요일 저녁인데 많은 사람이 와 계신데 놀랐습니다.

어찌 보면 이번 결정에 저도 일조를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정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의견을 요청하였고, 그 의견은 다시 저희 위원회에서 검토되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힘이나마 보탰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위원회도 정례적으로 저작권 전문가 포럼을 개최합니다. 예컨대, 건축사를 모셔서 건축저작물에 관한 포럼을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결정을 보면서 우리도 자체적으로 이와 관련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저작물 공모 시 저작권양도약관의 효력'이라는 주제로 이은영 외국어대 교수님에게 약관규제법에 대해 많은 설명을 해주셨

고, 이은영 교수님에게 발제를 부탁하면서 이번 사건 결정문을 보내드렸고, 교수님도 이 결정문으로 악관규제법을 설명할 때 예를 들며 간접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저작권법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문화의 기본법으로 역할을 해왔는데, 21세기는 산업의 원동력이 '창조력'에 있다고 해서 '창조경제시대'라고 이야기 하고, 창의력이 주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제, 저작권법이 문화의 기본법이자 문화산업의 기본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캐릭터산업, 게임 산업, 소프트웨어산업 등 문화산업에 있어서 저작권이 산업을 발전시키는 전략적 권리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은 문화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외국에서의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재권 정책 조정관을 백악관에 두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Creative Britain', 'Digital Britain'이라는 국가 차원의 전략보고서를 내면서 문화산업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진단하고 지속적으로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음악처럼 새로운 수익모델 스스로 창출해야.
협회차원 자체적인 조정 기능과 분쟁해결 능력 도모 필요
또 역풍 즉, 직원과 재하청의 저작권문제 고민해 봐야”

일본의 경우는 지적재산기본법을 마련하여 총리실 밑에 지적재산전략본부를 두고 총리실 단위로 문화산업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일본의 지적재산전략본부에서 전략을 세울 때 지적재산의 창조, 활용, 보호 세 개의 큰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 과제를 내어놓고 있기 때문에 이를 차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건축저작물에 접목을 시켜보면 건축저작물의 창조부분에서 대한건축사협회의 과제가 무엇일까? 지금 여러분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 우수한 설계가 창작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고, 이강업 교수님이 말했듯이 "예술은 모방에서 시작된다"라는 말처럼 흔히 저작권 부분에서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간 난장이는 거인보다 더 멀리 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인이라는 것은 선조들이 쌓아놓은 건축에 관한 기법이나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리스, 헬레니즘 시대, 고딕시대의 여러 가지 건축 기법들을 모두 쓰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방을 뛰어넘는 보다 우수한 창조물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창조부분의 과제이자 보호의 과제이기도 한데, 저희들이 꼭 침해라고 할 때는 건축사들의 외부적 침해, 즉 건축주를 대항군으로 주로 생각하지만, 창조부분에서는 내부적 침해를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 즉, 내가 하면 아이디어의 차원이고 남이 하면 표절인 것처럼 모방이나 아이디어의 표현이나 하는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내부적 표절을 자제할 수 있도록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자율적인 내부 윤리강령을 마련한다든지 그런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축저작권의 영역을 넓히는 활동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우리 법원은 건축저작물의 기능적인 성격을 강조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삼성의 광주지하철 통신설계사건을 생각할 수 있는데, 지하철 배선 설계도는 저작물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상으로 올라오는 구조물에 대해서는 저작물로 인정하나 지하 구조물 설계도는 저작물로 잘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한건축사협회에서 학자분들을 초청해서 이런 경우에도 독창성이 있다고 많이 홍보하고 설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작권법의 기본원칙이 보호의 대상을 정할 때 아이디어 표현이 분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표현을 보호하지, 아이디어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예술의 전당을 스케치하고 기본설계를 하는데, 스케치부분을 아이디어로 볼 것인지, 표현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스케치 이전에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이번 공모전에 샷갓모양의 스케치를 해볼까 하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들은 사람이 추후 샷갓모양의 스케치를 했을 때 아이디어의 차용인지, 표현의 차용인지 모호합니다.

실제 부산에서는 등대사건이 있었습니다. 등대를 스케치해서 구청에 냈는데, 다른 건축사에게 실시설계를 맡겼습니다. 건축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인가?

법원은 스케치단계에서는 도형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이지 건축저작권은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급심 판단이기 때문에 꼭 그것이 다른 사항에 적용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법원은 설계 도서를 보고 건물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라야 저작권을 보호받는다고 합니다.

활용부분에서 살펴보면, 먼저 저작권은 크게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누어집니다. 저작인격권은 죽을 때까지 양도가 안 됩니다.

조금 전 불란서 얘기를 들었지만, 우리나라로 사실 저작인격권이 보호 받습니다. 저작인격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항상 동의를 받

이야합니다. 우리는 아주 잘 되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은 양도가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1대 1로 불어서는 건축사가 건축주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혼자 힘이 약하면 단체가 모여서 해야 합니다. 다른 영화, 음악, 소설 등도 저작권의 집중단체판단체라는게 있습니다. 협회를 통해서 단체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활용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저작권을 찾았는데, 이게 나한테 무슨 이득이 있나는 것입니다.

기본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할 때 조금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저작권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비즈니스 방법이 생겨야 합니다. 음악의 경우에는 위성방송 등 새로운 음악방송이 생길 때마다 수익이 생깁니다. 불행하게도 건축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수익모델을 스스로 창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침해부분에서 과제가 있습니다. 나한테 권리가 있고 침해 가능성성이 있다면, 건축주가 무단으로 사용했을 때 소송을 해야 하는데 이강업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송을 하면 3년이나 걸릴 수 있습니다. 힘들어서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협회가 지원을 한다거나, 저작권위원회의 조정 기능처럼 협회차원에서 법은 아니지만 자체적인 조정 기능 내자 분쟁해결 능력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 호사다이라고, 역풍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저작권에 대해서 마인드가 생겼습니다. 아픈 이야기

일 수 있습니다만, 직원의 저작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재하청의 경우 저작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나의 저작권을 뺏어간다면서 하청을 할 때는 모든 저작권을 양도받고자 합니다. 하청업체가 저작권의 인식을 가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역풍에 대한 문제도 사전에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동규_감사합니다. 이번에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금 말씀하신 김현철 팀장님께 의견요청이 갔을 때 공정하게 잘 써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수익모델 창출에 대해서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혼자는 힘들기 때문에 협회에서 지원해주는 건 어떨지, 시스템을 만들어서 약한 개인들이 힘을 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설령 구속적인 없더라도 내부적으로 조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다음은 제3주제입니다.

향후 국내 건축법, 건축 관련 산업에 미칠 영향은 어떠한가 인데, 아주 자율적으로 제가 한번 호명을 해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박인수 건축사님이 얘기해보시죠.

제3주제 : 향후 국내 건축과 건축설계, 그리고 관련 산업에 미칠 영향은 어떠한가?

박인수_처음에는 개인적인 문구에서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매우 큰 학습 기간이었습니다. 나를 조사하면서, 저희가 이런 일을 왜 할까?,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까?를 많이 생각해봤습니다. 향후에 대해 얘기하자면…

이 바뀌고 있습니다.

“현행제도의 저작권적 측면에 문제 있어.”

시공현장에서 건물을 만드는 일에 건축사들이 배제된 것은
본 소송과 좌담회를 계기로 보완되어야 할 내용”

최동규_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제2주제에서…박진호 교수님 말씀 안 하셨네요. 박인수 건축사님 발언이 끝나면 그 때 다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이라는 것이 아~다르고 어~다를 수 있어요. 색 하나 바꿨었을 때도 느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그런 경미한 변경으로 치부하기에는 결과물이 전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설계하신 분들이 책임감리하거나 다른 분들이 감리하고 있는 경우에 현장에 나갈 수 있는 아무런 배경이 없습니다. 저작권에 기본적으로 도면, 모형도 있다 고 하는데… 사실 건물을 만들고자 하는 일인데, 시공현장에서 건물 만드는 일에 건축사들이 배제되어 있다는 것은 본 소송과 좌담회를 계기로 보완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저작권이 있다고 명분만 가질 뿐 실질적인 논의나 결과를 기대할 순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최동규_저작권에 대한 것들이 현장에서도 힘을 가졌으면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이번에는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인하대에서 교수님으로 계신 박진호



교수께서, 미국의 경우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제3주제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호_2주제와 3주제를 연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작권이 건축가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본 권리조차 찾으려 하지 않았던 건축가들에게 책임이 뒤따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저작권 관련 결과를 계기로 건축가의 책임 의식에 대해 다시 한 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건축의 문화적 영향력에 대하여 건축가인 우리조차도 목소리가 너무 미약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미국의 경우, AIA에서는 계약의 표준양식을 기본적으로 제공하며 그 외의 규정은 법에서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AIA에서는 계약에 필요한 기준 양식, 우리식으로는 표준약관 정도의 양식을 건축가에게 제공하는 등 절차와 과정, 법적인 것에 대해 조언하며 협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양식의 경우 건축가와 건축주, 건축주와 시공회사(Contractor) 사이의 기본 약관 형식을 제공하게 되는데 이 양식은 건축주와 건축가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서비스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으며 예산을 비롯한 설계의 전반적 과정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축가가 자신의 작품을 필요에 의해 사용할 경우, 관련 사진이나 예술적 표현물 등을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또한 건축물이 완공된 후에도 건축가는 그 작품에 대한 합리적인 정도까지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축주가 필요에 의해 건축물과 관련된 사항들을 사용할 경우, 항상 건축가를 밝혀야 하며 건축가에게 그 작품 저작의 신용(credit)을 주어야 한다고 계약서의 기본 문항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출범하게 되는 대한민국건축사협회에서는 이런 계약문건에 건축가의 권리나 책임 등을 문서화하여 모든 건축가들이 공유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작권은 매우 중요합니다. 건축가의 저작권보호는 우리나라에서 건축이 가지는 문화적인 영향력을 더욱 강하게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건축디자인이 지금처럼 획일적이고 무미건조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인 것은 일차적으로 건축가의 디자인이나 창작 의지의 문

제이기도 하겠지만, 이를 좌절시키는 적, 간접적인 원인이 건축가의 디자인에 대한 권리와 그것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관행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에 대한 저작권과 같은 제도적 변화는 건축가의 창작의욕과 건축설계분야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건축에 대한 무관심이 지배적인 국내에 비해 국외의 경우 건축을 문화의 측으로 이해하고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 만합니다. 일례로, 유명한 건축가들의 도면들과 관련 문서들은 사후 대부분 박물관에 소장되게 되는데 이는 건축가의 작품의 독창성과 그 작품을 표현하는 설계도면의 역사적, 문화적 그리고 예술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의 상황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내의 역사적인 건축 작품의 관련 도면이나 자료들은 지금 어디에 보관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고, 현존하는 건물들도 무분별한 재개발로 인해 그 가치가 훼손되었으며, 사회적 논의나 평가, 학문적 연구도 없이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리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을 통해 현재 건축이 가지는 문화적 영향력에 대해 우리 스스로가 한번쯤 생각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해외 건축공모전의 경우 선정되지 않은 작품까지도 학계에서는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정되지 않은 작품의 저작권도 그 건축가에게 속해있습니다.

그동안 매우 비합리적이었던 우리나라의 건축물 저작권 관련 제도는 일부 발주기관들이 일방적인 양도관행의 담합 속에서 무단으로 건축 디자인을 도용, 모방하여 이득을 취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비용도 지불하지 않는 장치로 그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무단도용은 설계자의 창작 의지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문화수준을 저하시키는 현상을 초래하였습니다. 저작권료로 대체되던 당선사례금은 물론, 당선안과는 다른 결과물 등 발주처에 대한 문제점이 표면으로 들어나면서 당선된 건축가의 책임 감리와 같은 '갑'의 횡포 및 불공정 거래에 대응할 만한 적절한 대응책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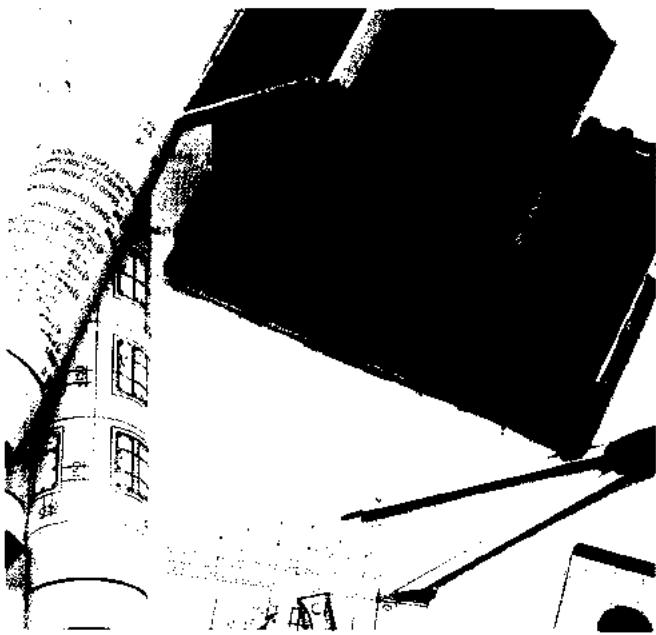
"건축사의 창작의욕과 건축설계분야 위상 높이는 계기 될 것.

저작권이 발효되면 건축가가 더욱더 분발을 해야.

좌담회, 결과물 도출 보단, 이후 향방에 대한

브레인스토밍 시간이 돼야"

앞서도 여러분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저작권을 확보하면 그만한 책임이 따른다고 봅니다. 건축가의 창작디자인에 관한 책임일진데, 건축가가 한 디자인을 본인 디자인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창작품이 얼마나 있었는지 스스로 되물어 봐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설계경기의 저작권이 건축가에게 돌아온 만큼 이제 건축가들에게도 모방의 단계를 넘어서 창작활동에 매진해야 한다는 책임과 의무가 요구되고 있다고 봅니다. 먼저 어느 분께서 건축의 모방에 관하여 말씀하셨는데, 여러 요소들을 모아서 어떤 작품을 만들 때, 그것이 창작품인지 한 번 더 깊게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녹장적 작품은 그만큼 가치가 있으며 존중 받아야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소중한 국가적 건축브랜드로 자리매김 되는 작품들이 많이 나왔으면 합니다. 따라서 저작권이 발효되면 건축가가 더욱더 분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저작권 관련 사항이 건축문화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현 상황에서 어떤 영향을 끼칠지 걱정도 됩니다. 또한 건축물이 만들어 질 때까지 수많은 분야의 사람들의 노력이 들어가고 있는데, 건축 창작물에서 건축사의 저작권, 혹은 저작물이 어느 선까지인지도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좌담회에 앞서 각 단체의 편집장들과 잠시 담소를 나누었는데, 오늘 이 좌담회가 어떤 결과를 도출이라고 보기보단, 저작권 이후 여러 행방에 대해 생각해보는 하나의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최동규 미국은 시스템이 잘되어 있어서 계약서에 건축사가 이것저것 잘 구죽이 되어있다고 하는데, 미국은 독립한지 200년이 되었기에 그렇게 잘 정비되었나 봅니다. 최영집 회장이 이번기회에 미국 AIA와 좋은 문서를 많이 공유해서 민간인 건축주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계약서를 고집하더라도 우리가 최소한도로 지킬 것은 정리합시다. 권한이 주어진 만큼 책임이 무겁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제3주제에 대해서 최영집 회장이 말씀해주시죠.

최영집 이런 일련의 문제들이 오늘날 제가 대한건축사협회의 회장으로 나서게 되었던 원동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건축사사무소를 잘 하다가 몇 가지 문제들에 봉착하면서, 건축설계분야의 권익과 건축사의 위상에 대해서 고민하다보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우선 우리는 오늘의 성과에 대해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겨우 저작권을 갑으로부터 설계자에게 찾아온 것은 아무 영향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서상의 단순한 문장의 변화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시작으로서 해서 어떻게 저작권의 건축회를 이루어나갈 것인가를,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다양복제로부터 보호를 해야 되는 문제. 표절로

부터 보호하는 차원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은 다량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건축의 창작이나 건축의 저작권은 일회성을 전제로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분야의 창의적인 작업과는 이해의 시작을 다르게 해야 합니다.

건축을 하나의 솔루션이라고 본다면 90%의 일반해에 10%의 특수해를 통해 그 가치 전체를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독창적인 작품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00% 일반해만으로도 충분히 건축은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에 저작권은 또 어떻게 될 것이며 특수해의 플러스 비중에 따라서 또 저작권은 어떻게 될 것인가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건축에 있어서 저작권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다루어야 합니다. 포괄적인 저작권과 부분적인 저작권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건축에 있어 계획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건축을 요구조건과 주문프로그램에 맞춰서 온갖 상황들을 입력시켜 솔루션을 찾아내는 계획단계의 저작권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을 완성해 나가는 종합적인 디자인이 그 다음의 저작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다양생산을 할 수 있는 건축이라 할지라도 건축은 거의 일회성을 목적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단계별로 어떻게 보호해야 할 것인가도 앞으로 논의해 볼 문제입니다.

“일회성 건축의 총생산과정에서

설계자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권리가 반드시 확보돼야.

감리의 목적은 설계의 의도가 끝까지 제대로 발전되기 위해
서 지켜지고 있는가 하는 것”

그래서 기본설계만 했을 경우에 기본설계 작가한테 어느 정도의 저작권을 인정할 것인가, 또 좀 전에 매서운, 아픈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중소사무소가 아닌 대형사무소에서 대표자가 프로젝트의 메인 디자이너라고 볼 수 없을 경우에 직원이 설계를 하는 경우에 저작권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이문제도 생각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작가의 권리와 작가의 의도를 끝까지, 설계과정 뿐만 아니라 건축의 생산과정까지 어떻게 보호하고 인정해주고 책임을 줄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책임과 의무는 항상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책임을 주고 권리를 줄 때는 그 의무를 어디까지 요구할 것인가? 또 거기에 따른 대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반복생산을 통해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작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산과정을 통해서 얼마큼 그 저작권을 가치 있게 만들고 얼마큼 그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게 만들고 그러면서 그 건축의 가치를 높이는 만큼 그 높아진 가치 일부분을 저작권으로 설계자가 가져올 수 있느냐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준비돼야 합니다. 다음에 건축물이 준공됐을 때 차후 건축물 관리 과정에서 그 건축물이 존재하는 라이프사이클에서 원작자가 얼마만큼의 권리를 가질 수 있는가? 좋은 예로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증축을 한다거나 할 때 원작자한테 어느 정도의 권리를 인정해주고 또 그만한 대가를 인정해줄 것인가? 기본적으로 원설계자한테 그런 권리를 주는 것이 바람직 한 일일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일회성 건축의 총생산과정에서 설계자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권리가 반드시 확보돼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설계단계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공사단계에서 기술 감리만 들어가

있는데, 진정한 감리의 목적은 설계의 의도가 끝까지 제대로 발전되기 위해서 지켜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실질적인 감리의 의미입니다. 감리의 용어정의를 다시 해야합니다. 감리가 실종된 건축의 생산과정에서 어떻게 저작권이 보호되면서 그것이 업무의 일부로서의 영역을 차지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리 단계에 있어서 설계자의 감리, 편의상 디자인 감리라고 하죠. 디자인 감리를 어느 만큼 인정해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문제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문제입니다.

협회장이 직접 토론자로 참석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만큼 제가 관심을 갖고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참석한 것입니다.

최동규_ 몇 가지 질문, 의문이 있었는데 이것을 즉석에서 김현철 팀장에게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대형건축사사무소의 직원이 설계를 했을 때 그 저작권이 어디에 있는지, 직원이 이를 주장할 수 있는지 둘째, 외국에서 계획을 해오고 국내 대형 편에서 실시설계를 했을 때 저작권은 어떻게 되는지 셋째, 건물의 생성과 소멸이 있을 때 중간단계의 변형이 이루어졌을 때 건축주가 건축사에게 물어봐야 하는지, 임의로 해도 되는지 등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현철_ 한 회사의 직원으로서 명령을 받아 업무로서 디자인을 하고 설계를 했을 때 직원의 이름을 밝히면 직원이 저작권자가 되고, 직원의 이름을 빼고 사무소 이름을 넣으면 사무소가 저작자가 됩니다. 여기에서는 실명을 밝히거나 밝히지 않느냐에 따라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사무소에서는 직원의 이름을 밝히지 않게 되었고, 따라서 법도 바뀌어 실제로 만든 사람의 이름을 밝히더라도 건축사사무소가 저작자로 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직원의 경우에 아무런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디자인 부분이나 설계 부분에서 이 직원이 입사해서 만든 것도 있지만, 입사 전 개인적으로 디자인 한 것을 회사에 제시한 경우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직원에게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건축저작물은 기능적 저작물이기 때문에 리모델링, 증축, 개축, 감리단계에서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서는 건축저작물의 경우에 모호하기는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의 증개축은 허용합니다. 그것은 저작권인격권, 특히 동일성유지권의 예외를 규정한 것으로 건물의 외관을 건축주가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실제 만든 사람 이름 밝혀도 건축사사무소가 저작자로 되는 것으로 개정.”

어느 정도 건축주에게 유리한 규정을 두고 있어 기본설계자 동의 없이 실시설계 하면 기본설계 권리 침해”

약식빠른 건축주라면 설계 발주 계약을 할 때 그 계약서에 감리 중에 감

리자가 지적하는 범위 내에서는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동의를 한다는 규정을 넣는다면, 그 건물의 동일성을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을 다 나열해서 동일성유지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법은 이 점에서 어느 정도 건축주에게 유리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건축에 관한 유명한 판례 중 에메랄드호텔사건이라고 있다. 우리나라에 기본설계 용역을 주어서 건축사가 투시도와 모형도를 완성하였는데, 건축주가 일본에서 설계를 해왔습니다. 투시도와 모형도를 만든 사람에게는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투시도와 모형도는 1차 저작물이고 실제 설계도는 2차 저작물입니다. 예를 들어 시나리오는 1차 저작물이고 영화는 2차 저작물입니다. 따라서 소설을 바탕으로 제작한 영화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소설의 원작자에게도 대가를 지불해야 하고 영화 제작자에게도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2차 저작물을 만들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원작자의 동의서가 있어야지만 2차 저작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기본설계자의 동의 없이 실시설계를 하면 기본설계의 권리 침해가 됩니다.

최동규_ 제 3주제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 분이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윤_ 저작권 문제는 권리, 법적인 문제 등을 포함하여 건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부터 사용하는 과정에서까지 다양한 상황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건축을 만들기까지 얹힌 사연들이 많기도 하고 또한 슬픈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이지만 우리의 에밀레종에 얹힌 사연이나, 러시아의 모스크바 성 바실 성당의 설계자가 황제인 봉군이 반에게 두 번 다시 같은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눈을 빼앗긴 사례를 보아도 건축은 예전부터 두 번 지으면 안 되는 저주의 물건이기도 합니다.

“민규암 건축사의 사례, 건축계 큰 파장 일으킨 사건. 그의 승소 이유는, 창작 과정이 결과물에 뚜렷하게 나타났기 때문. 우리 단체들, 건축설계 저작권 문제 아래에서는 초월적으로 모여야”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 듣는데 건축을 하지 않는 사람이 보는 관점에서도 건축은 축복이기도 하고, 저주이기도 하다는 말을 들을 때 많은 공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흡사 폭풍우 속에서 사는 듯한 시간을 건축을 통해서 살아온 듯 하지만 한사람의 건축하는 사람으로 입장으로 보았을 때, 늘 무언가로부터 피해를 받는 듯 한 느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피해의식이 엄습해 오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유지하고 지켜야 할 것들은, 초기 단계에서는 다른 사람들 것을 모방하고, 흉내 내고, 배끼지 않는 창작의 경계를 민감하게 의식하며 주의해야하며, 또 다른 면에서는 자신이 만든 건축이 사회에 대응하며 인정되는 저작의 수준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한사람의 건축가가 자신이 이룩한 창작의 결과에 대해서 사회전반에 그 의미를 알리는 일에서 앞장선 민규암의 사례는 건축계에 큰 파장을 일

으킨 하나의 사건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건축을 바라보는 사회의 일반적인 시선과 수준을 알려준 계기가 되었고, 그 결과는 1차 소송에서 차가운 현실로 돌아와 폐배를 안겨주었지만, 다시 실망하지 않고 진정한 노력을 계속해 항구적인 권리인 인정받았던 것입니다. 그가 승소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건축이 가지고 있는 창작의 과정이 결과물에 뿌듯하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가 쓰고 있는 작법, 그 건축사가 고안한 기법, 그 건축물로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모두 창작이라는 과정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사회가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저작의 문제를 통해 커다란 이슈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결과로서 스스로 자긍심을 가질 수 있었고, 또 새로운 과정에서 더욱 자성적 측면으로, 건축단체 차원에서 대한건축사협회에서도 이 문제를 중요한 문제로 다루고 있고, 한국건축가협회 역시 작가적 의지를 앞세운 건축가의 큰 의미를 명시한 작가의 굴레를 더군다나 인식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어떤 순수성을 지켜야 되고, 독자성이라고 하는 명분을 지키기도 해야 되지만 건축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어떤 것들이 정말 항구적인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작품이라는 것을 지켜보고 유지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그 률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모두에도 말씀 드렸듯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선 우리 단체들이 활동성이 있는 조직으로 변모하여 건축설계 저작권이라는 문제 아래에서는 초월적인 상황으로 모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건축의 창작행위에 책임감을 부여하고 쉽게 남의 것을 인용하거나 모방하지도 않는 또한 건축가의 작업에 창의성을 유지관리하며 건축의 기반을 강하게 만들어 나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최동규_ 이야기를 듣다 보니 민구암 건축사의 일련의 행동들을 보니 본인의 설계에 대해서 매우 긍지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됐다. 나아가 건축물에 대한 사진까지도 자신의 고유한 창작물에 대한 방어라는 차원에서 용기가 대단하다고 봅니다. 이강업 교수도 3년간이나 걸쳐서 소송까지 겪으셨는데, 그 노고를 알게 됐습니다. 이강업 교수님, 말씀하시지요.

이강업_ 건축설계저작권은 다른 분야의 저작권과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건축은 일회성이 되어서, 음악이나 미술과는 다른 시각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건축설계는 창작의 과정인데, 어떻게 보면 산모가 아이를 임태해서 출산하는 것과 흡사하다고 봅니다. 건축도 큰 규모의 건축을 설계하면 비슷한 시간과 과정도 거치지 않습니까. 사실이 산모의 분신이라면 건축물 자체가 건축사의 분신입니다. 그것이 부정됐을 때 정신적 충격은 매우 대단히 큽니다.

“건축설계 산모가 아이를 임태해서 출산하는 것과 흡사.”

건축설계저작권 접근은 건축사의 위상에서 시작해야”

제가 3년에 걸친 소송을 통해서 이러한 일에 따른 고통을 빼저리게 체험했습니다. 혹 그 느낌을 ‘정신적인 강간’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금전적인 것이 아닌 건축가의 위상에 관한, 건축에 대한 자존심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몇 년 전에 신축한 건물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건물 사진을 로비에 크게 붙여놓고 그 밑에 이 건물은 건축문화대상을 받았고, 건축주는 누구, 시공사는 어디라고 적었고 건축가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사회에서 바라보는 건축사에 대한 위상입니다. 따라서 건축설계 저작권에 접근 자체는 건축사의 위상에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대부분 건축사들이 공감하실 꺼라 생각합니다. 건축설계저작권 문제를 정리하여 떨어질 때로 떨어진 건축사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최동규_ 말씀 중에 김현철 팀장님에게, 혹시 이게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건축은 유지관리를 위해서 설계자를 밟히는 표지를 어딘가 분명히 정해 놓는 게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김현철_ 앞에서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눠진다고 했는데, 인격권이 3개로 세분화 되어서, 동일성유지권, 성명표시권, 공표권이 있습니다. 그중 성명표시권은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할 권리가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성명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가 어디까지 인지가 애매모호합니다.

최동규_ 남은시간이 많지 않아서 휴식시간을 가지면 맥이 끊어질 것 같아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특별히 1, 2부로 정리하지 않겠습니다. 자유토론이라고 하는 게 애매하니 플로어에서 질문을 받겠습니다.

박인수_ 오늘 특별히 김현철 선생님의 좋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말씀에 의하면 동일성유지권이 계약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동일성 유지권 자체는 효력이 없는 것 아닌가요.

김현철_ 인격권은 양도는 할 수 없지만 동의는 해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저작권이나 계약서를 나눌 때, 건축주에게 유리하게 계약을 할 경우 우스개 소리지만 세 줄만 쓰면 됩니다. 양도할 수 있는 권리는 모두 양도 한다. 양도할 수 없는 권리는 포기한다. 포기할 수 없는 권리는 행사하지 않는다는 세 가지면 모든 저작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박인수_ 답은 나왔군요. 주신 말씀은 매우 특별한 경우이고요. 이런 경우들은 정해서 저작권 관련가이드를 쓰면 될 것입니다. 부당하게 저작권을 갖으려는 것이 아니고, 저작자가 저작권을 갖으려 하는 것이므로 원의에 충실하도록 환경이 조성되어야겠습니다. 물론 저작권을 가져가서

어떤 편리를 도모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으나, 그 생각이 올바르지 않은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움직여야겠고, 특히 글로벌 시대에 맞는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건축물 뿐 아니라 그 외 관련된 시설과 장치, 재료 등에 대해서도 저작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 건축설계 과정 중 저작권 이용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형성 가능성”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저는 건축이 일회성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패널 여러분들이 건축이 1회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는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건축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와 연계라든지, 통합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설계하는 건물 외에도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디자인하는 것 같습니다. 건물 내 주어진 환경에 따라 특별한 장치가 고안되거나 가구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아이덴티티를 높이기 위한 작업을 하기도 해서 설계하시는 분들이 건축물 뿐 아니라 그 외 관련된 시설과 장치, 재료 등에 대해서도 저작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면 하더라도 커튼이 새롭다면지, 벤더(vender)들의 생산된 물건을 사다 쓰거나 선택할 경우, 저작권과 관련해서 새로운 관계를 맺고 마켓을 형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작권과 관련한 이런 논의 자체가 건축도 건축이지만 건축설계 과정 중에도 저작권을 이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형성되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현철 선생님이 약을 주시고 또 병도 주셨는데, 병적인 부분은 회장님과 건축 3단체를 통해서 저작권 관련 가이드라인, 저희들 설계하시는 분들의 권익보다는 프로페셔널 서비스의 일종으로의 저작권을 얘기하고 싶었던 게 더 큽니다. 향후 거국적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최동규_ 저작권만을 집중해서 생각하다보니 수익모델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나와서 굉장히 기대해봅니다.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유흥재_ 저는 대구의 부운 건축사사무소 유흥재입니다. 대한건축사협회 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참석하기 위한 시간이 되지도 않음을 느끼면서 몇 가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저작권 사용을 폐쇄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득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한글과 우리의 건축문화를, 나아가 우리 고유의 사상과 전통적인 풍습을 외국에도 내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저작이라는 용어를 ‘짓는다’라는 의미로 해석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농사를 짓다, 이름을 짓다, 집을 짓다, 시를 짓다, 밥을 짓다 등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짓는 게 아닙니다. 같이 공유함으로, 일류의 행복과 보편적인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의 각성을 위한 것으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선득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에 건축설계 저작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계는 자유로운 사고입니다. 자유로운 생각의 보장이 없으면 설계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건축설계 저작권은 설계자의 자유로운 영혼에 대한 구속을 강요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제자가 스승을 닮고, 자식이 아버지를 닮으며 후배가 선배를 닮아가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건축설계를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구분지어 일차저작권, 이차저작권으로 나누는 것은 잘못된 것. 설계는 하나일 뿐, 나눌 수가 없다”

지금까지 설계저작권의 시비는 설계저작권의 귀속 문제였다고 봅니다. 당연한 귀결인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자와 설계자와의 저작권 적용은 지극히 제한적이야 하고, 엄격해야 합니다. 누가 봐도 구분 할 수 없을 경우에만 해당되어야 하며, 비슷하다는 이유로 저작권 적용은 회원들 간에 불협화음만 발생 할 뿐입니다. 또한 건축설계를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구분지어 일차저작권, 이차저작권으로 나누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건축사 업무대가 사정에서 편의상 나누었을 뿐입니다.

건축설계는 설계입니다. 설계는 하나일 뿐 나눌 수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동규_ 다음 질문 있습니까.

김지덕_ 우리나라에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권리를 이제부터 협동하여 권리를 찾아오기 바라는 뜻에서 몇 마디 하겠습니다.

우선 3단체가 합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설계경기 위원회의 활동을 좀 더 강력하게 그 영향력을 발휘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나라 텐키설계를 할 때 아래 건설사가 주도하는 ‘갑’과 ‘을’ 계약서에는 ‘저작권은 발주하는 건설사에게 있다’며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설계계약서 조항을 삽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개인 건축사가 주장을 할 수 없는 사항들인데 AIA Design Agreement 계약서에 저작권관련 문구가 있는 Standard Agreement를 쓸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AIA처럼 KTRA가 작업해주셨으면 합니다.

“저작권관련 문구 있는 Standard Agreement를 쓸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AIA처럼 KIRA가 작업해야. 제도적 장치, 통합단체 설계분과위원회서 정책 세워야”

이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작업으로 전 건축사들이 쉽게 이용 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으로 제안 드립니다. Concept의 제안을 A가 작업했다면 최초 작업건축사에게 그 저작권을 주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최초 안의 창안자가 기본도면인데 이것만을 작업했다고 이것은 건설 회사가 저작권을 주장하는 것은 좀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국제회의에서 심심치 않게 저작권, Copyright, 현상설계의 작품, 제출 양을 줄이자는 제안들이 상당히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더 체계적으로 작품출판제출 매수를 지금처럼 A0 또는 A1사 이즈 판넬 6매씩, 8매씩 할 것이 아니라 A3사이즈 판넬 3매 또는 4매정 도로 줄여서 우수한 제안 건축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하면 건축사 분들의 창작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저작권 토의에 이 건도 함께 논의하도록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즉, 제출매수를 정말 저작권을 주장 할 수 있는 가능성 위 정도로 한정할 수 있는 것이 어떠한가 이야기 드리는 바랍니다.

현상공모도 작품 심사 후 당선작을 발주처 마음대로 변경 할 수 없도록 그 규정을 만들어 모든 작품에 적용하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제 도적 행정적 규정을 만들어 지키도록 했으면 하는 바를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한번 지어진 건축물이나 작품은 영구 보존까지 하는 데 우리나라에서는 창작의 권리인 저작권까지 인정을 안 한다면 향후 미래의 우리나라 저작권의 권리 주장은 실행불가능의 국가로 전환돼질까 봐 두렵습니다. 아니 설계업 자체가 위태로울 것 같습니다.

현상공모 당선작품 그대로 지은 건물이 우리나라 현상공모 전체 중에서 얼마나 있는지 참으로 한심한 정도의 현상공모 풍토라 생각됩니다.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무엇인가 제도적 장치를 3단체 설계분과 위원회에서 탁월한 정책을 세워주실 것을 바랍니다.

최동규_발주처 문제의 심각성은 알고 있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이에 관한 TF팀도 만들어 조정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기대해 봅니다. 한 분만 더 질문을 받겠습니다.

오성훈_ 오성훈이라고 합니다. 얘기를 쭉 듣다보니까 저작권이 건축사에게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 같다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저작권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건축사법이나 선진화법 등에서 실제적인 내용을 개선하려고 노력했지만 내부끼리의 문제인 듯 싶은데, 공공성이나 대외적인 문제라고 봤을 때 단순한 문제라고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작권 내용자체에 대해서 심도 있게 보고 개정이 되었을 때, 기본설계 1차 저작권이고, 실시설계는 2차 저작권, 동일성유지권 등의 얘기를 들으면서 대처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건축분야의 저작권법이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건축사법까지 접근되지 않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김현철_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무단으로 이용하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 권리의 침해가 됩니다. 배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설 '남부군'을 영화로 만들었을 때 남부군을 만들기 위해서는 남부군을 만들겠다는 동의를 받으면 거기에서 양해가 된 것으로 됩니다. 협력을 받지 않으면 두 가지 권리 침해가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동일성유지권에 대해서 말이 없었다고 해도 2차 저작권에 대해서는 양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턴키방식의 저작권 문제, 이 상황에서 무슨 의미라는 발언,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 새로운 미래 개발하는 등이 이 좌담회 목적"

아까 대구에서 오신분이 말씀하셨는데, 저작권에 대해서는 3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저작권을 옹호하는 사람이 있고, 저작권을 부정하는 사람, 저작권 내에서 저작권을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CCL이라고 것이 있습니다. 내게 저작권이 있는데 내 권리를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의 권리를 사회에 환원하는 것입니다. 기증할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저작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보다는 내 권리를 가지고 학생들이 재창작할 수 있도록 사회에 환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조금 전에 턴키방식의 저작권 부분의 문제가 이러한 상황에서 저작권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첫발이지만 그렇게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패널들이나 여러분이 힘을 모아서 한걸음 한걸음 내딛어 가며 이와 같이 저작권에 대해서 문화를 바꿔나가고 새로운 미래를 개발하고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번 좌담회의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현실이 어렵다고 포기하는 건 비겁하지 않습니까!

최동규_ 오늘 김 선생님은 정리까지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생긴 의문이 김현철 선생님을 통해서 해결이 되어서, 정제된 간단한 답으로 나와 통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정도에서 질문은 멈추시고, 오늘 회의는 이렇습니다. 3단체가 통합된다는 것은 이미 알고 계셨고, 결론이 무겁고 데디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건축가지 편집장인 김병윤 교수, 그리고 새건축사협의회 편집장인 박진호 교수가 함께 참석하여 토론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통합단체로 나아가는데 오늘처럼 건축을 둘러싼 환경조건에 대해 상호 협조하고 공동의견을 내는 것도 큰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많이 알고 관심이 많다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대한건축사협회로 오셔서 문을 두드리면 면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자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한국에서 건축저작권 소송 진행하기

To win an architectural copyright suit in Korea

민규암 / 정회원, 토마 건축사사무소
by Q. M. Min, KIRA

최근에 국민은행을 상대로 한 저작권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여러분들로부터 관련 문의를 받고 있다. 대개 몇 년 전 필자처럼 아무런 저작관 관련지식도 없고 소송경험도 없는 분들이다. 가장 큰 공통점이라면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당했음에 이를 바로잡고 그에 대한 타당한 보상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분들을 위해 그저 먼저 경험한 한사람으로서 그간의 경험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소송은 지루하다. 저작권 소송은 더욱 지루하다. 이것이 필자가 4번의 재판 즉 서대문 구청이 필자의 설계를 아무런 상의 없이 변경한 것에 대한 저작권 중재위원회와 법원에서의 2번의 재판 그리고 최근 국민은행을 상대로 한 법원에서의 1심 및 2심의 2번의 재판을 경험한 소감이다.

평균 법원에서는 두 번의 사건 모두 한 재판 당 약 1년여의 시간을 펼쳤다. 일반적으로 간단한 민사소송이 수개월에도 판결을 받아낼 수 있는 것에 비하면 사건의 내용이 비록 단순하고 명백하더라도 상당히 길다.

국민은행을 상대로 한 소송은 매우 단순한 사건이었다.

국민은행측이 필자의 건물 앞에서 무단으로 광고촬영을 진행했고 국민은행은 이를 모두 인정하고 있었다. 이런 상태에서 단지 저작권법을 적용하는데만 1심 2심 모두 각기 담당판사들이 모두 1년씩의 시간을 허비한 것이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 지금 돌이켜보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판사들 자신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비록 저작권법을 잘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적용한 판례를 찾기가 힘들고 그러므로 저작권법의 적용에는 현재 정해진 판결의 규범이 없으므로 판결 전 더 고심하게 만들고 시간이 소모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소송을 들어가기 전에 저작권 관련소송은 장기전이며 심리적으로 소송의 당사자인 자신이 어느 정도의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정신무장이 필요하다.

소송 전 저작권 중재심의위원회의 존재를 알고 있어야 한다. 이건 매우 중요하다고 최근에 더욱 느낀다. 저작권 중재심의위원회는 정부가 설립한 기관으로 정식소송에 앞서서 상대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장소이다. 단, 이 방식에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이 중재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소송의 상대방을 설득해서 같이 중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한다. 아무리 본인은 중재를 받기 원하더라도 상대방이 중재를 회피한다면 정식 소송 밖에는 상대를 불러낼 수 없다. 그러나 일단 상대방이 중재에 동의한 경우 상방 모두 시간과 비용에서 큰 이득을 본다.

중재위원회는 보통 3인의 위원들이 공동으로 중재과정에 참여하게 되고 이 위원들은 보통 저작권법 관련 전문 변호사나 교수 등 최소한 저작권법을 별도로 연구하는 법조인들이 진행하게 된다. 그러므로 일반 법정의 판사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갖게 되며 그 판단의 정확성도 훨씬 높다고 볼 수 있다. 이 기관의 판결을 받게 되면 다시 이 사건을 갖고 서 일반법원의 판사에게 가서 재판을 청구하더라도 그 판결이 다시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필자는 서대문구청관련 소송에서 중재위원회를 경험해 보았고 일단 판결이 된 후에 이를 다시 서울지방법원에 가져갔을 때 거의 판사들이 이 판결에 크게 이의를 달지 않거나 못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저작권 중재위원회는 법적 강제력이 없다.

중재위원회는 일단 중재가 시작되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다. 직접 본인이 서너 차례 중재재판에 적극 참여할 각오를 해야 한다. 대신 비용은 단지 서류를 접수하는 인지대 몇 만원 이외에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그리고 전문법조인들의 판결이므로 그 판결까지는 수개월 정도의 시간이면 충분하다. 그러나 여기서 유의할 점은 이 판결문은 아무런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본인은 이 위원회로부터 서대

“필자에게 연락하시는 분들 대부분의 경우 아쉬운 점은 본인들의 분노에 비례해서 너무나도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는 점이다. 최소한 저작권 소송을 진행시킬 각오라면 저작권법 관련 서적 1권 정도는 읽을 각오를 해야 한다. 그래서 크게 저작권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알고 나서 소송의 진행여부를 본인 스스로 판단할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문구청에 대해서 서대문구청은 즉시 임의로 변경 시공한 부분은 철거하고 재시공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지만 서대문구청은 이를 전혀 따르지 않았고 본인은 결국 서울지방법원에 가서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판점에서 보아도 한번 저작권 종재위원회의 중재는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고 본다.

저작권 소송은 본인이 공부해야 한다. 이 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본다. 어느 소송이나 마찬가지이겠지만 소송의 당사자가 관련법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소송의 성패가 좌우될 수 있다고 믿는다. 국민은행의 1심 재판에서 필자는 무참히 징계당했다. 그러나 필자는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내어야 할 지경이었다. 그러나 필자는 과감히 2심에 도전할 수 있었다. 그것은 단지 막연히 정의는 이긴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시 이미 몇 번의 재판으로 담당판사보다 저작권법을 더 잘 이해한다는 자신감이 있었고 필자의 주장이 2심, 3심에 가서는 반드시 판철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민은행 1심 판결문에는 다음과 같은 판사의 주장이 적혀있다. 본 사건의 건축물은 공공의 장소에 항상 노출되어 있으므로 누구든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상업적으로 사용 시에는 단지 그 원저작자가 누구인지 말을 빙히면 크게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으므로 본인이 국민은행 측에 대한 저작권법 소송은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 마디로 수준이 하위의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조금만 저작권법을 공부해 보면 알겠지만 국내 저작권법상 건축물의 경우에 공공의 장소에 항상 노출되어 있더라도 그 복제권을 상업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이는 원저작자에게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명백히 명시되어 있다. 단 저작권자가 사망한 후 50년이 경과된 경우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저작권이 소멸된 경우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이런 관련사항들을 알고 있었고 2심을 가볍게 진행시킬 수 있

었다. 만약 2심에서 패소했다하더라도 3심까지도 갈 수 있었을 것이다.

필자에게 연락하시는 분들 대부분의 경우 아쉬운 점은 본인들의 분노에 비례해서 너무나도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는 점이다. 최소한 저작권 소송을 진행시킬 각오라면 저작권법 관련 서적 1권 정도는 읽을 각오를 해야 한다. 그래서 크게 저작권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알고 나서 소송의 진행여부를 본인 스스로 판단할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물론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생각보다 제한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사실 저작권 전문변호사라 하더라도 건축물 관련소송은 경험해 본적이 거의 없으며 어떤 의미에서 건축사 자신이 조금만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더 전문기가 될 수도 있다.

국민은행소송에서 상대방은 필자의 건축물 중에서 일부분 즉 건물의 한 면 중에서도 약 50%에 달하는 부분만을 광고의 대상으로 삼았으므로 전체 건축물을 감지할 수 없고 이는 건축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냈다. 이런 경우 변호사보다는 건축사가 더 좋은 반박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소송은 단지 변호사가 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 변호사 혼자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건축사 본인이 충분히 저작권법을 이해하듯이 저작권법 자체를 이해해야 한다. 이것이 결국 소송의 지속적인 진행여부 및 여러 어려운 결정의 순간순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건축물 저작권소송은 많은 체력과 정신력이 요구되는 지루한 싸움이다. 관련지식을 꾸준히 습득해야하고 현재의 법제도 시스템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도 필요하다. 이런 모든 것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있고 지금 본인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이 부당함을 느낀다면 과감히 한번 해 볼만 한 일이라고 믿는다. ■

건축설계저작권의 의미와 지식산업으로서 건축설계

Meanings of Architectural Works Copyrights and Architectural Design as Knowledge Industry

고영희 / 변리사, 건축기술사_성창특허법률사무소 대표
by Koh, Young-hoe

건축설계저작권의 이해

지적 재산권 체계

건축설계저작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의 전체 체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은 인간의 정신적 창작물을 창작한 자가 독점권을 갖도록 보장해 주는 제도적 장치이다. 온갖 노력을 기울여 만들어 낸 정신적 창작물을 보호해 주지 않는다면 누구도 창의력을 발휘하지 않으려 할 것이기 때문에 산업발전과 학술문화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실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기 위하여 투자를 한 자가 투자한 사실 때문에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모순이다. 지적재산권은 창의력을 복돋워 지적인 창작물을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제도인 셈이다.

지적재산권은 크게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과 저작권(Copyright)으로 구분된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나타난 분야는 편의상 신지적재산권으로 분류한다. 산업재산권에는 흔히 얘기하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그리고 상표에 관한 권리가 포함되고, 저작권으로는 문학, 예술에 속하는 정신적 창작물을 보호한다. 저작물에는 소설, 영화, 음악 등이 대표적이고, 건축설계도는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는다.

통상 저작물이라고 하면 음악, 영화, 소설 등을 대표적으로 떠올린다. 이런 점이 건축사들로 하여금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장애가 되어 온 점도 있을 것이다. 저작권법 제4조에는 시, 소설과 같은 어문저

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과 함께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를 포함하는 건축저작물'이 예시되어 있다.

저작권에서 대표적인 권리가 복제권이다. 다른 저작물에서는 복제의 개념이 '인쇄, 복사, 녹음, 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을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지만 건축저작물의 경우에는 위 정의를 그대로 적용시키기 힘든 점이 있어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시공하는 것'을 복제라고 정의하고 있다. 설계도서 자체를 복사하는 것도 복제가 된다.

저작물이란 사상이나 감정이 외부로 표현된 것이다. 저작물로서 보호되는 것은 사상(Idea) 자체가 아니라 사상의 표현(Expression)이다. 아무리 사상이 같다 하더라도 표현이 다르면 저작권 침해라고 할 수 없다.

건축저작권의 권리 내용

저작권은 저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베른협약 제5조 제1항은 저작권의 향유와 행사는 어떠한 방식에 따른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도 베른협약의 취지를 받아 법에 반영되어 있다. 그러므로 건축설계도는 건축저작물이고 설계를 완성한 때에 저작권이 발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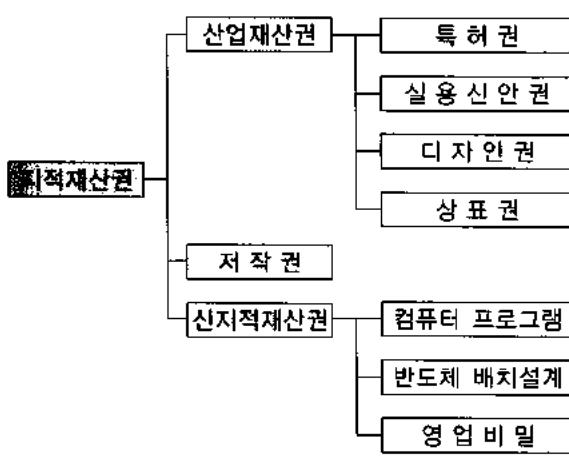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다. 건축저작물의 저작자는 건축설계를 한 사람을 말한다. 창작에 아이디어를 제공한 자, 저작자의 보조자, 설계의뢰자는 저작자가 아니다. 저작권은 작품을 창작한 사람이 갖는 것 이 원칙이다.

건축저작물인 건축설계는 통상 건축주의 의뢰를 받아 건축사사무소에서 건축사의 창의력을 바탕으로 보조자의 도움을 받아 설계한다.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건축사가 저작권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법인에 소속된 건축사가 설계를 한 경우에도 그 건축사가 원시적으로 저작권을 갖는다고 본다. 그리고 건축주가 건축사사무소에 의뢰하여 설계한 경우에도 저작권은 설계를 수행한 건축사사무소 또는 건축사에게 있다.

별도로 저작권의 귀속에 관한 계약조항이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 저작권이 귀속되고,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일반 법리에 따라 설계자에게 건축저작권이 귀속된다.

저작권의 내용은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분된다.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가 자기의 저작물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 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며 그 성질상 일신전속권이다. 저작인격



권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이 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의 재산가치 면에서 저작자에게 주어지는 권리로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시권, 배포권, 전송권 및 2차 저작물 작성권이 규정되어 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에 존속하는 것으로 양도될 수 없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 우리나라의 저작권 보호기간은 베른협약이 채택하는 바와 마찬가지이다.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각국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점차 보호기간을 늘려가는 경향이고, 한미FTA협상에서는 70년으로 되어 있다.

건축저작물의 정의

건축이란 인간의 여러 가지 생활을 담기 위한 기술·구조 및 기능을 수단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공간예술이다. 건축은 용도라는 목적성에 적합하여야 하며, 적절한 재료를 가장 합리적인 형식을 취하여 안전하게 이룩되어야 한다고 하며, 통상 건축의 3대 구성요소는 구조, 기능, 미로 설명하고 있다.

저작권법에서 따로 정의를 하고 있지 않지만 건축의 속성과 저작권법의 규정을 참고하여 정의해 보면, 건축저작물은 '건축물 등의 축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된 설계도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건축법에서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을 말하고 있지만 저작권법에서의 범주는 굳이 건축물에 한정할 이유가 없어 '공작물, 구조물, 조형물, 조경시설물 등 축조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구조물'을 포함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

건축저작물의 종류

통상 설계도서라고 불리는 것이 건축저작물이 될 것이다. 설계도는 작성단계에 따라 기본설계도, 실시설계도, 시공도(Shop drawing)가 포함될 것이고, 분야별 설계도는 건축, 토목, 상하수도, 구조, 기계설비, 전기설비, 조경, 통신, 제어설비 설계도를 꼽을 수 있다. 그리고 시방서, 구조해석서, 설비나 전기분야의 용량계산서도 설계저작물에 포함된다.

건축저작권 보호상의 몇 가지 문제

창작성 문제

저작권법상의 정의에서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고 하여 창작물일 것을 요구한다. 통상 저작물은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고 하지만 창작성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지 않

다. 특히 건축저작물이라 할 때 건축저작물이라는 정의도 명확하지 않거나 건축물의 특정 부위의 설계도서(예를 들어 커튼월 설계, 창호설계, 무대설계, 설비공사설계 등)에 대하여 창작성이 없다는 이유로 저작물을 부인하는 판결문을 볼 수 있다.

저작물성을 부인하는 판단은 창작성을 오해한 것으로 생각한다. 저작물에 요구하는 창작성은 용어의 종류에 불문하고 독창성을 의미하지 저작물의 진보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원어로서 말하면 Originality이지 Creativity는 아니라는 뜻이다. 즉 창작성이란 저작물의 기원(Originality)이 저작자에게 있으면 다른 저작물을 도용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더구나 창작성을 예술성으로 확대하여 예술과 전혀 관계없는데 무슨 저작물이냐는 주장을 한다면 곤란할 것이다¹⁾.

저작권의 귀속

건축물의 설계도서는 건축주, 건축사, 건축사의 보조자, 구조, 설비, 조경 등 관련 전문가 등 여러 분야의 참여자의 합동작업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저작권의 귀속, 저작권 침해에서 면제되는 범위, 반복 건축될 경우 저작권 침해여부 등 사회적인 관행을 반영한 특별 법이 없다면 혼란이 생길 우려가 많다.

건축생산 프로세스와 관련한 문제

건축생산은 기획→기본설계→실시설계→시공→유지관리→철거의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는 '기본설계→실시설계→시공'에서 발생한다.

건축설계에서 기본설계는 실시설계를 전제로 한 저작물이다.

기본설계도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대상이 된다는 점은 이견이 없을 터지만 2차 저작물 작성권과 관련지어 볼 때 해결해야 할 난제가 있다.

기본설계 자체로서 건축물을 지을 수 없으므로 2차 저작물(실시설계) 작성은 불가피한데 2차 저작물 작성권이 실시설계자에게 허락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실시설계자의 설계도로 건축하는 도중에 설계계약상의 문제로 설계용역계약이 중도해지 되었을 때 설계도 이용권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설계계약이 해지되어 저작물 이용권이 건축주에게 없다면 더 이상 그 설계도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다는 결과가 되는데 부동산이 갖는 사회적 의미를 고려할 때 정립이 필요한 부분이다²⁾.

설계 계약상 포괄 양도 규정의 문제

통상 설계 입찰공고 또는 용역계약에서 설계도에 관한 일체의 권리는 발주자에게 귀속된다는 취지의 조항을 포함시키는 경향이 많다.

발주자는 해당 건축물을 지어 소유하면 되므로 설계도에 대한 사용권만

1) 건축저작물의 창작성 판단에 대한 판례평석은 계간 저작권 2005 가을호(제71호) 참조

2) 99미7466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결정사건에서 대법원에서는 공사 중간에 설계계약이 해소된 경우 설계도의 사용권이 건축주에게 있다는 판결을 한 바 있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분적인 내용들로 이루어진 건축설계계약에서 설계도서 등이 원성되어 건축주에게 교부되고 그에 따라 설계비 중 상당 부분이 자금되었으며 그 설계도서 등에 따른 건축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중단할 경우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건축주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건축사와 건축주의 사이에 건축설계계약관계가 해소되더라도 일단 건축주에게 하여된 설계도서 등에 관한 이용권은 의연 건축주에게 유보된다.

있으면 충분하고 굳이 설계도에 대한 모든 저작권을 가질 이유는 없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저작권이 발주자에 속하도록 규정한 약관은 무효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을 이끌어 냈다. 그러면서 당선작은 1회 사용권, 입상작은 전시 출판에 대한 권리만 허락받는 것이 적절한 것을 권유하고 있어 앞으로 설계 계약에서는 이것이 기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많아졌다.

약관으로 해석되는 계약에 대해서 포괄양도 규정이 무효라는 결정이므로 개별 계약에서는 여전히 포괄 양도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어 협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인식을 바꿔나가야 할 과제로 본다.

지식산업으로서 건축설계업

지식산업의 특징은 사람의 지적 창의력을 동원하여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런 지적 산출물을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데 비해 복제는 쉽다.

복제는 복사기의 출현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고, 컴퓨터의 발달로 산출물을 전자서류로 제작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복제는 더욱 쉬워졌다.

복사기에 의한 복제는 원본보다 품질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지만 전

자서류는 원본 품질과 꼭 같은 사본을 만들어 낼 수 있어 저작권 제도는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는 형태로 변화되어 왔다.

지적 산출물은 일단 생산되고 나면 추가 비용이 별로 들이지 않고 배포가 가능해 대중적 인기가 있는 작품이 나오면 큰 부가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주요 선진국들이 20세기 말부터 지식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건축설계작품도 기본적으로 지적 산출물로서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나 소설, 영화, 음악 등 다른 종류와 차이가 나는 점은 건축물이 땅에 정착되는 것이고 땅은 입지한 곳마다 고유 환경을 갖고 있어 어느 건축물의 설계를 그대로 다른 곳에 적용하기는 곤란하다고 하겠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건축저작물은 다른 저작물과 같이 배포, 전송, 공연이 쉽지 않아 배포에 의한 수익 창출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공동주택, 특정 회사의 지사 건물, 고속도로 요금소, 휴게소 등과 같이 일정한 유형을 각 지역마다 건립하는 설계의 경우에는 비록 숫자가 작지만 수익 창출도 가능하다고 본다.

저작물은 아니라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가 되므로 설계에 포함된 각 부분마다의 설계는 다른 건축물에서 채용할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을 필요로 한다. 각 부분마다의 설계를 개발해 두는 것도 설계 저작권을 풍성하게 만드는 일이 된다.

전문가 기고 3

건축저작권의 법적 내용과 심사청구의 쟁점 검토

Legal matters of Architectural Copyright and Investigation of an issue of examination request

이승호 / 변호사_법무법인 한별(서울특별시건축사회 법률고문)
by Lee, Seong-ho

시작하며

지난 5월에는, 수십 년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져 왔던 건축저작권과 관련된 구태(舊態)가 하나 깨어졌다. 즉,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건축설계 입상작의 저작권은 설계자에게 있다'라는 취지로 '08. 12. 대한건축사협회의 조달청, 용인시, 안양시,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도지공사의 건축설계경기지침 중 입상작들의 저작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된다는 조항의 불공정 약관여부 심사청구에 대해 청구인들의 주장을 대부분 이용을 한 것이다.

건축사가 이번 사건의 피청구인들을 비롯한 발주처에 제공하는 건축설계도면은 건축사의 정신적 노력의 산물로서 일정한 재산적 가치를 지니는 지적재산권의 일종에 해당하는바, 이러한 지적재산권은 그 저작자인

건축사에게 귀속되는 것이 너부도 당연한 것인데도 거래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여, 이번 사건 심사청구 대상 약관조항에 드러난 것처럼 대부분의 설계용역계약서 및 지침서 등에는 건축사의 노력의 산물인 설계도면의 저작권을 피청구인과 같은 대형건설업체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혹은 공기업 등의 발주처에 귀속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축사로서는 설계용역계약을 수주하는 속칭 '을'의 입장에 있다 보니 용역 수주를 위해서는 본건 심사청구 대상 약관의 내용과 같은 저작권의 일방적인 귀속규정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기 힘든 실정이었는데, 이번에 대한건축사협회가 건축사의 대표기관으로서 이러한 불공정하고 잘못된 거래의 관행을 바로잡기를 기대하며 심사청구를 하였던 것이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본건 약관조항들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

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를 위반한 불공정약관으로 모두 무효라고 선언을 한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번 사건의 핵심인 건축저작권의 법적 내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본건 심사청구의 쟁점 및 공정위 결정의 의의에 대하여도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다.

건축저작권의 법적 내용(건축설계도면의 저작권)

저작권 일반

저작권이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하여 법이 그 창작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그 창작물을 독점적으로 사용케 하고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복제·공연·방송·전시·배포 및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 등 행위를 하거나 그 창작물에 대한 창작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권리를 말하는데, 이러한 저작권은 크게 창작자의 경제적·불질적 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저작재산권과 창작자의 관념적·인격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인격권으로 구분된다. 다시 전자는 복제권(저작권법 제16조), 공연권(제17조), 방송권(제18조), 전시권(제19조), 배포권(제20조), 2차 저작물등작성권(제21조) 등으로 후자는 공표권(제11조), 성명표시권(제12조), 동일성유지권(제13조) 등으로 세분된다.

건축설계도면의 저작권법상 의의

건축저작물은 사상 또는 감정이 토지상의 공작물에 표현되어 있는 저작물을 말하며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5호는 건축저작물을 예시하면서,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를 들고 있고, 한편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8호에서는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을 예시하고 있어 건축설계도는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5호와 제8호에 모두 해당될 수 있어 명백히 저작권법이 보호하고 있는 권리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건축설계도는 저작권법에 따라 그 창작자인 건축사가 그에 관련된 모든 저작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건축사가 갖는 저작권의 구체적 내용

살펴본 바와 같이, 건축사는 자신이 창작한 설계도면에 대해 저작권을 갖게 되고, 이러한 저작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저작재산권 – 복제권, 2차 저작물 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갖는데(법 제16조), 이를 복제권이라 하며, 여기서 권리란 배타적인 권리를 의미한다. 복제권은 저작재산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이며, 여기서 복제라 함은 인쇄·사진·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고 특히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법 제2조 제14

호).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건축사의 설계도면을 그대로 복제하는 것은 물론이고 설계도면에 따라 건축물을 시공하는 것도 건축저작물의 복제에 해당하여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다만, 저작자의 이용허락 혹은 저작재산권의 양도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도면에 따라 건축물을 시공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별도로 살펴보겠다.

한편 저작자는 원저작물에 대한 2차 저작물 또는 그 저작물을 구성부분으로 하는 편집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한을 가지는바, 건축저작물에서 2차 저작물 작성권이 중요한 이유는 대개 건축설계과정이 기본 설계와 실시설계로 나누어지고, 기본설계의 내용에 따라 설계자로서 선정될 수 있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건축주(발주처)로서는 여러 건축사의 설계안을 경합시켜 설계안을 결정하고, 결정된 설계안을 실시설계 단계로 넘기는 것이 통상의 모습인데, 이 과정에서 설계내용은 마음에 들지만 그 설계자를 실시설계자로 결정하지 않고 설계비용절감 등을 고려하여 다른 건축사에게 실시설계를 맡기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 때 기본설계 설계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기본설계자와 2차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 저작인격권 –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또한 저작자는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을 공표할 것인가, 공표하지 않을 것인가, 공표를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공표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공표권을 갖는다.

여기서 공표라 함은 저작물을 공연·방송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일반 공중의 수요를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건축사는 자신이 창작한 건축저작물의 공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다.

성명표시권은 저작자가 자신이 그 저작물의 창작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바, 즉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자신의 실명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이다.

저작자가 실명으로 공표를 하고 있는데 저작권이용자가 그것을 무명으로 공표하거나, 저작자가 표시한 저작자의 성명 또는 칭호를 삭제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은 모두 저작자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설계도나 건축물 등 건축저작물에 그것을 창작한 건축사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을 표시하는 것은 명백한 성명표시권의 침해가 되고, 건축사가 설계용역계약에 의하여 건축설계도를 완성하여 건축주(발주처)에게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도 건축주(발주처)는 설계자인 건축사의 실명을 표시하여야 하는 것이다.

동일성 유지권은 저작자가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저작자인 건축사의 독창적인 설계도를 양도받은 건축주(발주처)가 임의로 설계도를 변경하면 건축사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는데, 다만, 건축물의 경우에는 순수한 예술적 목적보다는 주거용 등 실용적 관점에서 전축되는 측면이 많으므로 건축물의 노후화, 파손 등으로 인하여 개축, 증축의 필요성이

있어 건축물에 변경을 가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동일성유지권이 일부 제한될 수도 있다.

· 이용권

저작권법 제41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2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저작권의 양도와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구분하고 있다. 이용허락은 저작재산권자의 이용 승낙의 의사표시이며 이용허락계약에 의해 발생하는데, 실제 계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것이 저작권 양도계약인지, 이용허락계약인지 명백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일어난다.

즉, 어떠한 계약이 불분명하여 그것이 저작권 양도계약인지, 이용허락계약인지 명백하지 않은 경우 그 구별기준에 관하여 명확히 확립된 견해나 판례는 없으나,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면, 계약의 문언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저작자에게 주어진 경제적 대가가 통상의 관념을 훨씬 초과하는 고액인지 여부를 따져 보고, 나아가 계약의 구체적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거래관행이나 당사자의 지식, 당사자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해석하여야 함을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건축사와 발주처 사이에 맺은 계약의 내용인 ‘설계용역 계약’에 대해서 살펴보면, 그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은 건축사는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발주처는 건축사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발주처가 건축사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설계용역의 완성에 대한 통상의 대가에 불과하고 설계도면에 대한 저작권까지 양도받는 대가가 포함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판례의 취지대로 계약문인 그대로의 해석보다는 건축사와 발주처의 관계나 경제적·사회적 지위, 저작권법의 취지, 구체적인 업무 수행절차 등을 고려할 때, 건축사가 완성한 건축설계도면의 저작권은 건축사에게 유보되고, 건축주 혹은 발주처는 당해 건축설계도면의 이용허락만을 받은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이다.

본건 심사 청구의 쟁점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범위

건축설계경기에 참가하기 위해 건축사가 발주기관에 제출한 설계도서 등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범위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제2조 및 제4조에서 밝히고 있다.

다만 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창작성(Originality)’을 가져야 할 것이고, 나아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독창성(Creativity)은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도 무방하다고 하고는 있다.

한편, 건축설계도는 많은 기술내용을 포함하기 마련이고, 그러한 기술내용은 창작성이라는 특성이 없으므로 저작권의 대상이 아니고 오히려 특허나 실용신안으로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가능하나, 건축사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설계도서·모형 등과 향후 이를 통해 건축될 건축물 중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妥當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서도 발주청이 창의성이 요구되는 일정한 경우에는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를 건축설계경기를 통해서 발주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다. 따라서 본건과 같이 건축설계경기를 통해서 건축을 하게 될 경우에도 그 건축물은 일반적으로 창의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이익형량의 필요성

실패본 비와 같이 건축사의 창작물인 설계도, 모형 및 건축물의 저작권이 원칙적으로 건축사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한편으로 발주기관에서도 건축사들이 설계한 건축물을 직접 사용할 건축주에 해당하므로 저작권을 포함한 건축물과 관련한 모든 권리를 귀속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즉, 건축저작권은 다른 저작권과는 달리 ‘실용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발주기관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저작권 귀속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현재의 건축설계경기지침처럼 저작권 전부를 모두 귀속시키는 것은 건축사의 이익을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으므로 발주기관과 건축사들의 이익을 형평하여 발주기관이 건축설계경기를 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저작권의 일부만 귀속시키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적정한 저작권의 귀속범위

본건 약관조항들은 개별적인 경우를 상정하지 않고 모든 경우에 있어 저작권을 발주처에 귀속시키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는 저작권을 상대방에게 양도한다는 저작권 양도계약으로 볼 수가 있다.

그런데 실패본 것처럼, 저작권이 전부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인은 당해 저작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못하고, 양수인이 저작권자로서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저작권의 양도 시에도 반드시 그 전부가 양도될 필요가 없으므로 양당사자가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만큼 일부만을 양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도 저작권의 양도계약인지 저작권 이용허락계약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저작자에게 권리가 유보될 것으로 유리하게 추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가 있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 29130).

한편, 발주기관이 건축설계경기지침을 통해 달성하려는 최종적인 목적은 건축물을 용도에 맞게 건축하는 것일 것이다.

즉, 발주기관은 저작인격권의 내용인 성명표시권 등에 대하여는 전혀 관심이 없고, 향후 복제권을 행사하여 동일한 건물을 다시 건축하는 것도 주된 목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한 당선작이 아닌 우수작·기작의 경우에는 건축설계경기의 결과를 홍보하기 위한 전시·출판에 사용

하기를 원하는 정도가 전부일 것이다. 그렇다면, 발주기관의 위와 같은 목적은 저작권을 포함적으로 양도하지 않고서도 달성될 수 있는 것인 바, 본건 심사청구에 대한 결론처럼 당선작의 경우에는 당해 저작권의 1회 이용 허락권, 전체 입상작에 대해서는 전시·출판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만 주어지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발주기관은 건축사에게 저작권을 갖게 하면 동일한 건물이 다시 건축될 가능성에 대하여 우려할 수 있으나, 건축사는 창의적인 건축물을 원하는 발주기관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항상 새로운 설계를 할 것이므로 사실상 동일한 건축설계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상정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그리고 발주기관이 만약 이러한 점을 염려하여 저작권을 전부 양수받기 원한다면, 별도의 협상을 통하여 저작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저작권을 양도받아야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이지 우월적 지위에 있는 일방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정할 사항은 아닌 것이다.

또한, 발주기관은 당선된 건축 저작물을 그대로 건축하기보다는 용도에 따라 많은 변경이 필요하므로 저작권의 귀속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건축물이 용도에 맞게 사용되려면 필요한 변화가 어떤 것인지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건축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므로 합당한 변경의 경우에는 건축사와의 협의로 변경이 가능할 것이므로, 이러한 주장도 설득력은 없다고 하겠다.

다만,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동일성유지권의 침해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저작권법 제13조 제2항에서는 또한 동일성 유지권의 예외로서 저작자는 건축물의 증축·개축 그 밖의 변형에 대하여는 이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발주기관 등 건축주는 건축 후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사의 동의 없이 변경도 가능하므로 이러한 우려도 기우에 불과하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저작인격권은 본래의 성격이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양도가 불가능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건 설계경기지침에서는 저작권 전부를 귀속시키고 있으므로 저작인격권의 성질에도 반한다고 하겠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발주기관에 귀속시키는 저작권의 범위는 당선작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을 건축하는 데에 필요한 '저작재산권의 1회 이용허락권', 전체 입상작에 대하여는 전시·출판에 사용할 수 있는 권한으로 한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을 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의 의의

주지하시피, 건축설계도면은 건축사가 자신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창조한 전형적인 지적재산이다. 따라서 건축설계도면에 대한 모든 권리 는 당연히 저작자인 건축사에게 속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건축설계산업이 수주산업의 특성을 띠고 발주처가 국가기관 또는 거대한 자본을 가진 대규모 기업 등 사회적, 경제적 강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인해 건축사는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포기하는 내용의 본건과 같은 약관 조항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못한 채 수십년이 흘러왔다.

즉, 본건과 같은 약관조항은 사회적 강자에 의해 미리 마련된 계약 서식에 부동문자로 삽입되어 사용됨으로서 사회적 약자인 건축사가 당연히 가져야 할 권리를 박탈하여 왔고, 저작권법의 취지를 몰각시켰으며, 건축사의 창작의욕을 좌절시킴으로서 관련 산업의 발전마저 저해하고 있었는바, 급번 공정위의 결정은,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건축저작권 분야의 저작권에 대한 일방적 양도 관행을 시정하겠다고 하겠다.

즉, 설계도면의 저작자인 건축사는 단 1회의 설계용역계약으로 그 설계도면의 사용권한을 박탈당하는데 반해, 발주처로서는 1회의 비용만을 지불하고 당해 설계도면을 무한대로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는 복제권의 심각한 침해를 막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공정위에서 적정히 판단한 것처럼, 본래 발주처가 건축사에게 자급하는 대가는 건축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라고 할 것이지, 설계도면에 대한 저작권을 양도하는 것에 대한 대가가 아니고, 설계도면에 대한 저작권의 양도를 위해서는 건축사와 발주처 간에 별도로 저작권 양도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설계계약의 내용 중에서 별도로 저작권의 양도 혹은 이용허락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별도의 약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용역의 대가만 지급하고 설계도면의 저작권까지 양도받겠다는 것은 정의 관념에 심히 반한다고 할 것인데, 이번 공정위의 결정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내려준 것이라고 하겠다. 이로 인해 이제는 향후 건축사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형·설계도서 뿐만 아니라 이를 기초로 완성된 건축물까지도 저작물로 볼 수 있으며 창작성을 가지고 있으면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됨으로서, 결론적으로는 급번 결정은 발주처와 건축사 간에 서로 발전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한 판단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

건축 저작권의 향후 진행방향

Progress Plan of Architectural Copyright for the Future

박인수 / 정회원, (주)아이아크 건축사사무소
by Park, In-soo, KIRA

건축설계에는 기술적인 사항도 새로 개발하여 반영되는 것이 많다. 결로처리를 위한 벽체 구조,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바닥 구조, 각종 시공법 등이 이에 해당할 것이며 2008년에는 특허청에서 공간설계에 대하여 심사자침을 마련하여 시행 중이므로 창의적인 공간배치에 대해서는 특허로 보호 받는다.

나아가 건축물 내외부에는 디자인 요소도 많이 반영된다. 이런 외관 설계는 디자인 보호법으로 보호 받을 여지도 많다.

설계도서뿐 아니라 설계도서에 포함된 기술적 사항, 디자인 요소를 포함한 지적재산권을 풍부하게 하는 것이 건축설계산업을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만드는 길이 될 것이다. 건축설계업을 지식산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주역인 건축사들이 어떻게 풍부한 내용물을 만들어 내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금번 공정위 판결인 “건축설계 입상작의 저작권은 설계자에게 있다”의 의미

오랜 기간 동안 각종 설계 공모의 저작권이 발주자에게 귀속되어 왔다. 언제부터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저작권이 발주처에 귀속되면서, 건축이 제 자리를 못 찾아 온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다. 특히, 건설사들의 주택사업이 활발해 지면서 발생한 설계업무와 또 턴키라는 발주방식이 일변화 되면서 턴키 참여 컨소시엄에서 설계하게 된 분들은 예상컨대, 거의 예외 없이 저작권을 발주자에게 내어준 것이 사실 일 것이다. 또한 일반 공공/민간 발주(건축 관련 전담부서가 있는)와 규모가 있는 공사(公社)들은 언제부터인가, 저작권을 계약상 ‘갑’에게 귀속 시켜 왔다.

이에 대해 건축설계를 담당하는 우리 건축사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저작권의 귀속에 대해 부당함을 언급 하여왔고, 간간히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등, 역할을 하였지만, 이것이 건축계의 담론이나, 설계의 의미를 바로 세우는 작업등으로 연계되진 못했었다. 다행히,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각 소송도 작던 크던 설계자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판결이 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행적 저작권 귀속은 더해졌고, 이제는 ‘갑’이 저작권 귀속을 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여겨질 정도의 분위기가 만들어 지기도 했다.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각종 계약의 종류와 횟수가 많아짐에 따라 계약은 당사자인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해 진행되는 일반적 상황과 아울러,

‘갑’의 사회적 권한이 매우 커 자연스럽게 공정하지 못한 계약들이 체결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을’은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사회적 파워게임에서 밀릴 경우, 계약상 상호 합의 하여야 한다는 계약의 기본 원칙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었고, 이런 불공정한 거래를 감시하는 곳이 바로 “공정거래위원회”이다. 따라서 공정위는 주로 사회적 약자들의 소송을 많이 담당하게 되어, 하도급, 불공정 약관 등을 바로 잡는 일을 주 업무로 하고 있다.

본 공정위 제소도 그런 맥락에서 건축설계를 하는 건축사가 사회적 강자인 발주자에게 원치 않는 계약을 해주고 있는 상황을 바로 잡는 것이라하겠다.

하지만, 본 제소는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아서 계약의 문제를 불공정하다고 판단하기 이전에 저작권이 무엇이고, 왜 설계한 건축사에게 저작권이 돌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3개월여의 준비와 7개월여의 소송기간을 거쳐 얻게 된 금번 결론이 일회의 행사로 지나가기보다는 건축의 지양분으로 삼아지길 기대한다.

건축사의 일이라는 것이 법규적 단순 정의 보다는 활센 복잡하고 가치 있는 업무라는 것, 즉, 건축주의 좋은 환경을 만들며,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고, 도시와 지역의 상황을 배려한 업무 그리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관련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여 통합적 해결안을 제시하는 등, 건축생산에서 건축사의 역할과 의미가 금번 기회에 정확히 평가되고, 알려지길 기대한다.

이를 계기로 한국의 건축이 국제적으로 손색없는 생산 환경과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머지않은 장래에는 외국에서도 통할 수 있는 국제적 가치의 건축물을 스스로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작은 동네에서부터 큰 도시의 건축까지 불필요한 절차 없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며, 이용자들이 즐겁게 이용하고 삶의 기억으로 남는 건축과 도시환경이 되길 바란다.

저작권의 기준으로 본 국내 건축생산제도의 현황 : 저작권은 책임이 되어야 한다.

건축물이 생산되는 과정을 보면 크게, 기획, 설계, 시공, 입주, 유지관리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건축이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한 것으로 본다면, 이런 과정이 설정된 것은 결국 많은 성공과 실패의 경험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국가마다 각 단계의 표현과 식도는 다를 수 있지

만, 동일한 양상으로 진행된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건축의 차이를 가져오는 부분은 어디에 있을까?

당연히 시공, 입주, 유지관리 보다는 기획과 설계 부분에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건축물과 그 환경을 결정하는 가장 직접적인 부분은 기획과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한편, 차이를 만드는 것 말고, 건축생산 전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가장 강화되어야 하는 분야는 어느 단계인가 생각해 보면, 역시 설계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설계는 기획에서 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을 망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설계는 고유한 영역이기도 하지만, 무형의 건축을 유형의 건축으로 만들어 놓는 중요한 단계이고, 여기에는 인문, 사회학적인 내용부터 기술, 자재 등 분야까지 망라되는 종합적 분야이고, 기획과 시공, 유지관리를 중재하므로 건축을 성공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단계로 볼 수 있다.

건축 생산과정에서 이렇게 중요한 설계를 판단하는 일 즉, 설계를 결정하거나, 설계를 할 건축사를 선정하는 일은 똑같이 건축의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결정이라 하겠다.(이런 결정에 대한 내용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나, 본문의 취지상 생략한다) 설계를 시작하게 되면, 기획에서 정해진 조건들을 확인하고, 재해석하게 된다. 또 관련된 절차에 따라 대관업무를 진행하게 되고, 공사비에 맞추며, 시공할 수 있는 도서를 만들어 내게 된다. 간단히 표현하자면, 국내의 건축사 업무기준에는 “계획설계”, “상세설계”, “실시설계”로 구분되어 있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구체적인 건축물의 설계로 자라나게 된다. 한편 이 과정에는 많은 관련자들과의 협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건축주는 물론이고, 여러 엔지니어(기계, 전기, 토목, 구조, 조경, 견적 등)와 관련 공공부서의 공무원 및 심의위원회들이 그들이다. 이들의 서로 다른 입장에서 언급하는 전문적이거나 비전문적인 내용들은 설계자가 판단하여 건축에 녹아들게 조정하여야 하므로, 설계의 시작에서 끝날 때 까지 전 과정이 하나의 저작을 위해 진행하는 과정이며, 이를 통해 시공될 결과물을 위해 이루어지는 저작과정이라 하겠다. (국내의 공공건축물과 사업승인 받는 건축물에서 설계자는 사공 과정 중에 배제되어 있는데, 이는 저작의 완성이란 측면에서 매우 위험하고, 허술한 환경이며, 경미한 변경 등에 따라 건축물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을 인식치 못하는 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듯, 설계행위 자체는 매우 복잡하고, 서로 상충되는 문제들을 조정하며 진행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제도는 매우 중요한 설계의 환경이 된다. 예를 들어, 야구경기장에서 규정이 없다면, 방망이와 야구공을 든 큰싸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야구 규정은 야구를 재미있는 경기로 운영되게 하고, 상호간 관계를 설정하며 즐길 수 있게 해준다.

건축설계에서도 일견 이런 제도적 환경이 있으나, 설계의 다양한 가능성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진 못하여, 너무도 빈번히 예외적 경우가 발생되고 있고, 이럴 경우마다 건축의 의미 보다는 개인적 재량 등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 경우, 잘못된 결정은 건축의 가치를 크게 훼손하게 되고, 또 사회적 비용을 추가로 발생시켜 관련된 개인이나, 공공이 결국 손실을 갖게 된다.

종합해보면, 건축생산과정에서 전 과정을 아우르고, 통합하며 가장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단계는 설계이고, 따라서 그 업무를 주관하게

되는 건축사는 더욱이 중요한 지위를 갖게 된다. 건축사는 자신이 설계한 건축물의 저작권을 가짐으로 비로소 건축물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완수하게 되고, 법정 책임 외에 사회적 책임도 갖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건축물을 만들어 나가는데, 모든 관련인은 이를 주관하는 건축사에게 협조하고, 상호간 업무분장과 합계 등을 명확히 하여, 좋은 건축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조건을 이룩하여야 할 것이다. 자신의 권한을 내세우고, 입장만을 위하여 건축이 희생되는 일은 앞으로 없어져야 할 것이다.

건축 산업의 총괄자로서 저작권자인 건축사 : 도면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금까지 건축사는 실질적인 업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건축 산업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기 보다는 보조자 역할로 정의되었던 것이 여러 곳에서 드러난다. 물론 건축사 개인이 주도적 역할을 자임하며, 성실히 수행하였던 분들이 많이 계신 줄 알지만, 적어도 건축 산업을 정의하는 법률적 범위에서는 그렇지 못했었다. 이런 상황에서 본다면, 금번 공정위 판결로 저작권을 설계한 건축사에게 주었다 하더라도 관련법에 의해 저작권이 실현되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

건축설계를 정의하고 있는 법률인 건축사법에 의하면, “설계”라 함은 자기 책임 하에 (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를 위한 도면, 구조, 계산서 및 공사시방서, 기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이하 “설계도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한 바를 해설하며, 지도, 자문하는 행위를 말한다. 고 정의하고 있다. 결국 이 조항을 살펴보면, 설계 도서를 작성하고, 의도한 바를 해설하고, 지도, 자문하는 것이 설계란 뜻이며, 좀 더 축약해 보면, 설계 도서를 작성하고, 이를 설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필자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설계를 정의할 때, “설계 도서를 작성하고 의도한 바를 설명하는 등의 행위”가 잘못 정의 되었다 라고 하기보다는, 설계의 정의에서 더욱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 따로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작곡의 정의에 악보를 그리는 것이 없고, 소설 창작의 정의에 원고지에 쓰는 법이 없는 것처럼 설계의 정의에 도면 그리는 것이 정의될 필요는 없다는 점이다. 다시 건축사법의 설계 정의로 돌아가서 설계도서의 작성은 없애고 보면, 의도를 설명하는 것만 정의에 남게 되고, 이것이 정의로서 설명하기에 불충분 하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정의를 만들면 된다는 것이다.

필자가 이야기 하고 싶은 “도면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하는 것은 도면을 그리지 말자거나, 도면의 중요성이 떨어졌다는 것이 아니고, 도면과 관련된 내용은 별표나 규칙 등에서 정의하면 충분하다는 뜻이고, 보다 중요한 설계의 의미와 저작권의 취지에 맞는 건축설계 행위의 새로운 정의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는 뜻이다.

건축사법의 설계에 대한 정의 중 또 하나 언급하고 싶은 내용은 “…자기 책임 하에…”라는 표현이다. 당연히 민주주의 사회에서 책임이 있으

면 권한도 있어야 한다. 건축설계 혹은 설계자에게 주어진 권한 중, 지금 까지 법률적으로 정의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은 저작권에 없다. 혹시 있다면 무엇이며 어디에 정의되어 있는가? 물론 설계도의 권한이 시공을 조정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지만, 그를 설계한 사람의 권한은 아직 찾아보지 못했다.

건축과 관련된 제도와 규정 등이 완전하다고 하지 않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설계의 정의에 나오는 이 “…책임…” 표현은 저작권을 갖는 지식산업의 건축설계가 갖기에는 빈명한 표현이다. 당연히 건축사의 설계는 책임이 따라오게 된다. 전장에도 기술하였지만, 저작권은 그 자체로 권한이자, 책임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책임은 별도의 규정에서 소상히 기술하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되고, 이런 구차한 내용으로 설계를 정의하기보다는 지식산업의 총체로, 건축 산업의 총괄자로 건축설계를 정의하는 일이 매우 시급하다 하겠다.

건축설계의 정의에서 “자기 책임 하에” 와 “도면작성”이 다른 정의로 대체되고 나면, 건축설계는 보다 품위 있는 저작의 경지에 다가갈 수 있고, 이는 그간 도면작성 업무로 국한된 듯 한 인상을 없애며, 건축 산업의 중심으로 나설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

건축생산의 전 과정에서 살펴 보았듯, 건축을 만들어내는 과정 중 설계단계 만큼 전 과정을 소화하며,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주관해 나갈 단계가 없다. 그 만큼 그 역할이 중요하단 뜻이고, 거기에 걸 맞는 정의가 필요하단 뜻이다. 또한 이를 실행하는 설계자, 즉, 건축사의 역할과 의미가 더욱 중요해짐을 의미하기도 한다.

저작권자로서 건축사에게 주어진 책임과 도전 과제

이제 공정위의 판결 덕분에 설계자가 저작권을 완전히 갖게 되었다고 가정하면, 이제 우리 건축사들의 저작권의 책임과 이에 상응하는 권한을 갖고, 또, 도면작성을 벗어나 건축 산업의 중심에서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까?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사회적 기여와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되길 매우 바라지만, 한편으론, ‘가능할까?’ 하는 지문이 이어진다.

그동안 이에 대한 준비가 되지 못해서일 것이고, 또 그간 진행되어 온 관련 상황이 아직 관성을 갖고 남아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바로 지금부터 우리 건축사들은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고, 이에 걸 맞는 건축사의 자질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우리를 둘러싼 제도 정비가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관련인들의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건축생산 관련 제도를 만들어 내야 한다. 관련제도가 지금 없는 것은 아니나 정교하게 가다듬고, 정비하며, 지속적으로 제도 환경을 성숙시켜야 하겠다. 이를 위해선, 통합될 협회의 위상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숙제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이제, 문체부니, 국해부니, 지경부니 하는 등의 이야기 보다는 건축을 잘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내용을 위주로 쉬지 말고 관련제도를 성숙, 성장 시켜야 한다.

애정과 노력으로 건축사들의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날까지 진행되어야 하는, 건축사의 업무가 존재하는 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일이다.

미국의 제도를 보면 1890년대부터 지금까지 그들의 제도가 지속적으로 변화, 성장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방과 주정부가 매우 치열하게 또 화합하며 지금의 제도를 만들어 온 것이다. 우리도 아직 미천한 기간이지만, 진지하게 제도성숙을 이뤄나가야 한다.

두 번째로 건축사의 자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어떻게 보면, 건축사의 자질이란 측면이 가장 핵심과제라고도 할 수 있다. 건물을 설계하고 설계비를 받는 정도의 서비스에서 벗어나, 건축과 관련된 사회의 가치를 높이는 일로 변환되어야 한다.

특히 전문가로서 전문적 서비스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건축 관련 지식과 경험을 갖추어야 하고, 오피니언 리더로서 사회에 중요한 의견을 개진하여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선 전문가의 계속교육과 보다 실질적인 경력 관리 등이 절실히다. 또한, 우수한 인재를 사회의 다양한 면에서 진출케 하여, 건축산업과 그 관련산업 및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호를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건축사가 설계를 한다는 너무 기본적인 내용에서 발전하여 문화, 금융, 정보화, 온라인 비즈니스 등 다양한 건축의 수요에 부응하여야 한다.

한편, 건축사나 건축사가 건설기술자격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데, 이는 하루속히, 건축사의 관리 방법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건축사가 국가 자격기술법에 빠져있어, 그 존재가 모호한 현실에서 국가 자격기준으로 건축사를 관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당연히 우리의 관리방법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고, 이를 국가기술자격으로 번역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적어도 건축사가 초급기술자 취급을 받진 말아야 할 것이다.

대학도 관념 위주의 연구와 사변적 연구에만 몰두하는 것에서 벗어나, 보다 실질적이고, 치밀한 연구를 하여, 설계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 지식을 공급하여야 할 것이다. 많은 학교들이 5년제 교육을 택하고 있고, 건축이 독자적인 분야로 움직이는 방향을 보이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이와 아울러, 많이 사라졌지만, 전문대학원 등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여 다양한 학문의 배경을 갖는 젊은이들이 보다 건축에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세 번째는 업역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건축사의 자질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지만, 저작권자로서 건축사가 건축과 도시의 공공적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현대 도시와 건축이 서로 분리되며, 업역의 세분화에 따른 분할과 또 새로운 업무를 위한 통합 등이 동시에 발생하는 복잡한 시대의 건축이 어떤 책임을 다할 수 있을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의 것이 꼭 오늘날 통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성이 있다. 유연한 눈과 판단으로, 지속적인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결국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

큰 열매가 아니어도 된다. 지금 당장 의미 없어도 된다. 하지만, 이 열매들이 모여 쌓였을 때, 건축사가 저작권자로서 사회적 소명과 책임을 다

하고 있도록 느껴져야만 한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실패한다면 오늘의 작은 열매인 건축설계 저작권이 모두 찾수고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만드는 업무를 자부 하며, 건축주의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수고를 불사하였으나,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고작 하수인이나, 기능인으로의 취급 뿐이었다. 따라서 금번 공정위 판결의 결과를 그 동안 있었던 저작권 관련 판결중의 하나로만,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 건축설계의 역할과 의미를 다시 자리매김하는 계기로 삼기 소원한다.

그렇다. 건축은 이미 사회적 약자의 업무가 되었다. 건물을 만들 수 있는 힘 있는 건축주들의 상대적 약자가 되었고, 건축설계 대비 사회적 점유가 큰 시공업체에 비해 사회적 약자가 되었다. 결국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보호할 보호막을 잊어 버리진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든다.

금번 공정위 소송을 받고, 필자는 인터넷의 블로그를 몇 건 검색해 보았다. “늦었지만, 잘된 일이다”, “건축에 저작권이 없었었나?”, “이런 당연한 일을 왜 이제야…” 등 두서없는 반응들이었다. 또 공정위 심결에서도 너무도 당연한 결론을 두고, 전문위원들의 의견이 갈리는 등, 이제는 저작권이 설계자에게 있다라고 판결을 받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했던 것만은 아니었다.

금번 공정위의 판결은 이제 건축이 새로운 방향으로 진행할 새로운 신호탄으로 생각하고 싶다.

그간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고, 사회적 환경을 만드는 업무를 자부 하며, 건축주의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수고를 불사하였으나,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고작 하수인이나, 기능인으로의 취급 뿐이었다. 따라서 금번 공정위 판결의 결과를 그 동안 있었던 저작권 관련 판결 중의 하나로만,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 건축설계의 역할과 의미를 다시 자리매김하는 계기로 삼기 소원한다.

설계를 한 사람들이 저작권을 갖지 못하는 무스운 상황이었으나, 그간 발주기관의 공정거래상 불합리한 계약조건으로 이를 막아갔다. 이에 따라 설계를 대중하고 시공하면서 상황논리에 맞게 변경하며 진행하여 온 것이 관행이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이용자의 편리와 가치의 가능성에 대한 기준보다는 공사비 자체에 대한 판단이 우월했던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설계상 만들어졌던 가치의 기준보다는 실행가치의 기준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고, 모든 프로젝트가 그렇진 않았겠지만, 이런 경향이 있어왔다.

따라서 금번 공정위의 결정은 건축물의 시공과정 중 생길 수 있는 변화 등에 대해 원래 설계자 그 결정을 이를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는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시공 중엔 경미한 변경이란 것이 있는 데, 이는 법적인 테두리에선 아무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으나, 건물의 결과에 있어선 ‘아’와 ‘어’의 차이만큼 다른 건물을 만들게 된다.

공공건축물이나, 사업승인을 받는 프로젝트들의 경우, 설계자는 설계 단계에만 참여하고, 시공과정 중에는 참여할 기회나, 관련된 비용에 대한 부분이 없어, 특히 경미한 설계변경이나, 색상, 재료 변경 등에 대해 설계자는 배제되고, 준공 시 가보면 엉뚱한 건물이 만들어져 있던 경우가 많이 있었다.

기획단계에서는 인문, 사회학적 데이터와 건축의 조직하게 될 프로그램, 그리고 대지의 가치 등 건축의 다양한 전체를 확인하여 설계의 가능성을 만들어 주는 단계이다. 따라서 기획은 높은 시견의 건축 전문가의 조언이나, 운영이 필수적이다. 이들은 건축의 향후 진행에 대해 미리 예측하고, 주어진 조건 내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읽어 낼 수 있어야 한다. 물론 건축의 소유자나 운영자, 이용자들의 의견은 필수이다.

건축사는 이렇게 만들어진 설계조건을 토대로 조건과 그 결과를 이어주는 역할, 즉, 실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때, 건축의 저작권이 발생하게 된다. 만일 저작권이 설계자에게 없는 건축이라면, 그 가치도 없는 것이고, 결국 사회적 책임도 없어지는 건축이 되고 만다. 부연하면, 저작권이 없기 때문에, 해 달라는 대로 하면 되는 단순 용역업자가 되고 만다.

혹시 지금까지 국내의 건축에서는 건축사에게, 해달하는 대로 그려주길 바라진 않았는지 하는 의심이 든다. 물론 건물을 만들어 내는 일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서든 무너지지 않게만 한다면 기획, 발주, 기본설계, 상세설계, 실시설계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국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많은 경우가 상기 단계에 준하거나, 번역될 수 있는 진행단계를 갖고 있다.

국내의 경우를 보면 이런 단계들이 정하여져 있으나, 관련되어 설계자, 즉, 건축사의 업무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 설계와 관련된 내용들이 상호 정합되어 있지 않아, 설계 시 상당한 혼란함과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우선 발주자의 요구사항 및 디자인 가이드가 부실하거나, 현실과 맞지 않아, 실행 상 많은 어려움이 생기고 있고, 이는 고스란히 설계자들의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 물론, 건축서비스의 목적이 환경에 부합하는 내용들을 서비스하는 것이라 볼 수 있으나, 저작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는 매우 불합리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청 터키의 경우, 설계안이 결정된 이후, 문화재 심의 등을 통해 설계안을 다시 만들어야 하는 일이 발생되었다.

원칙적으로 발주 전에 문화재 심의를 위해 미리 관련부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저작이 가능한 상황일 것이고, 그런 상황이 발생한 이후라면, 계약상 시간과 비용에 대한 재 설정이 매우 필요한 형편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건축설계에게 상황이 그렇게 되었으니, “참고 진행해 달라”는 것이고, 이에 대해 문제시 하면, 설계자를 바꾸는 형편이며, 설계 서비스가 좋지 못한 것으로 된다. ■

설계경기 | Competition

강남 도곡 1 문화센터

Dogok-1 Cultural Center

당선작 / 이승연 장희연 · 김태명
(주)원양 건축사사무소
+ 정무웅(단국대학교 교수)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892-6번지

지역지구 제3종 일반주거지역

주요용도 문화 및 접객시설(뮤지컬전용극장), 공공업무시설(주민자치센터), 전시장, 문화센터, 도서관 등

대지면적 2,812.00m²

건축면적 1,320.12 m²

연면적 14,443.00m²

건폐율 46.94%

용적률 145.97%

규모 지하 5층, 지상 6층

발주처 강남구청

설계담당 총괄_심재한

최준섭, 장정우, 염창선, 정우정, 철미선,
정승철, 김수현, 송재준, 정혜린

Interfusing and Interflowing...

주거단지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시와 자연의 점이 지역에 위치한 대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속에 열린 마당으로 주민들의 활동을 담아내는 역할을 부여하고, 자연의 연계를 통해 문화공간에 자연이 스며들 수 있도록 하였다.

본 계획안은 문화, 복지, 행정 서비스를 아우르는 복합주민센터로서 지역사회를 아우를 수 있는 도시의 쉼터를 제공하는 문화예술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기대한다.

Culture Crystal

-도곡의 문화를 담아 도시를 빛내는 단 하나의 보석같은 문화센터

동명(名)의 유래인 돌(石)을 도곡문화센터의 기본적인 이미지로 설정한다. 대지에 놓여진 '하나의 둑'은 지역이 가진 과거와 현재의 문화를 담아내어, 주민들의 활동을 통해 도곡의 빛나는 문화

의 보석이 될 것이다.

그 중심공간은 밝게 빛나는, 투명한 공간이며, 열린 마당과 입체적으로 연계되어 자연스럽운 진입을 유도한다. 이를 둘러싸고 있는 스킨은 Solar system과 변화하는 LED sign을 적용하여 신, 재생 에너지의 효과와 활동적인 이미지의 파사드를 갖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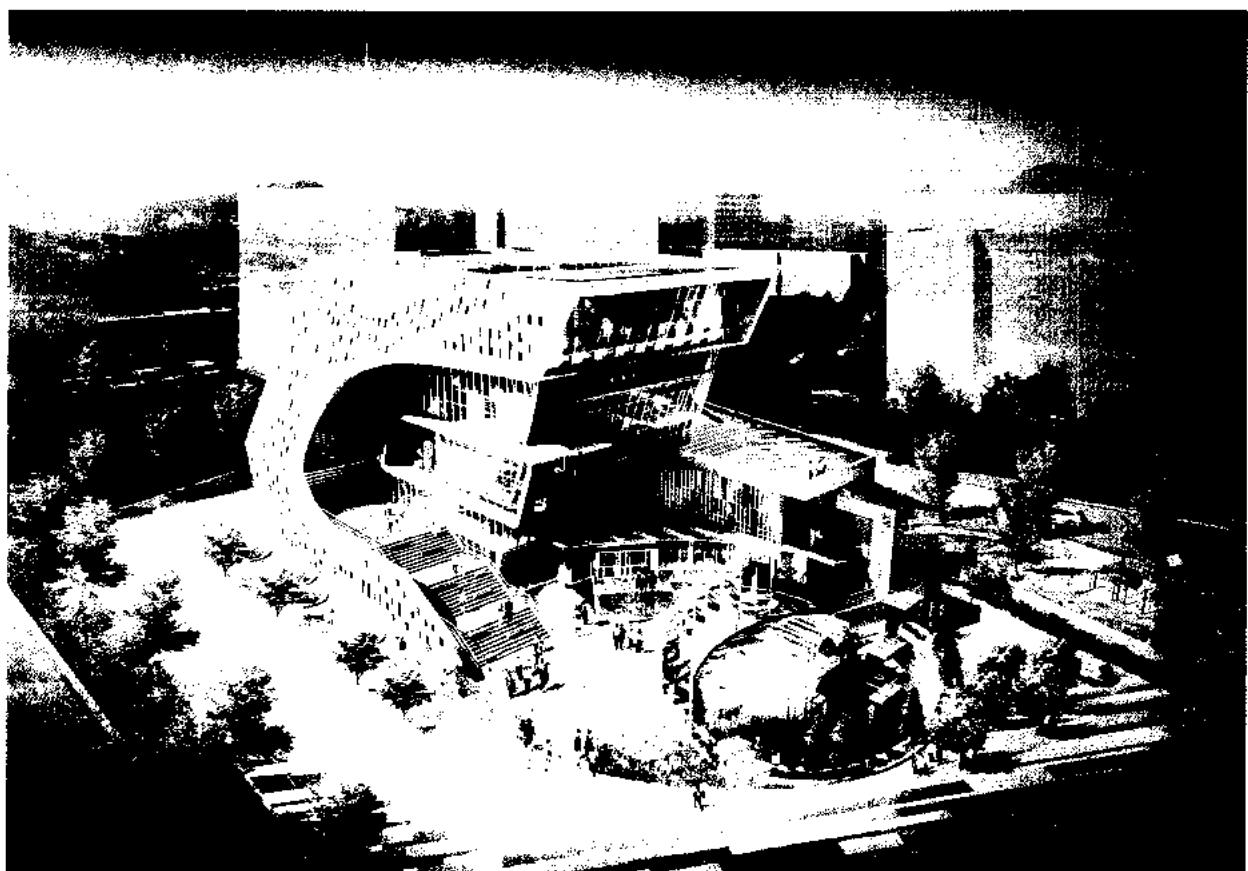
Minimum box & Maximum plaz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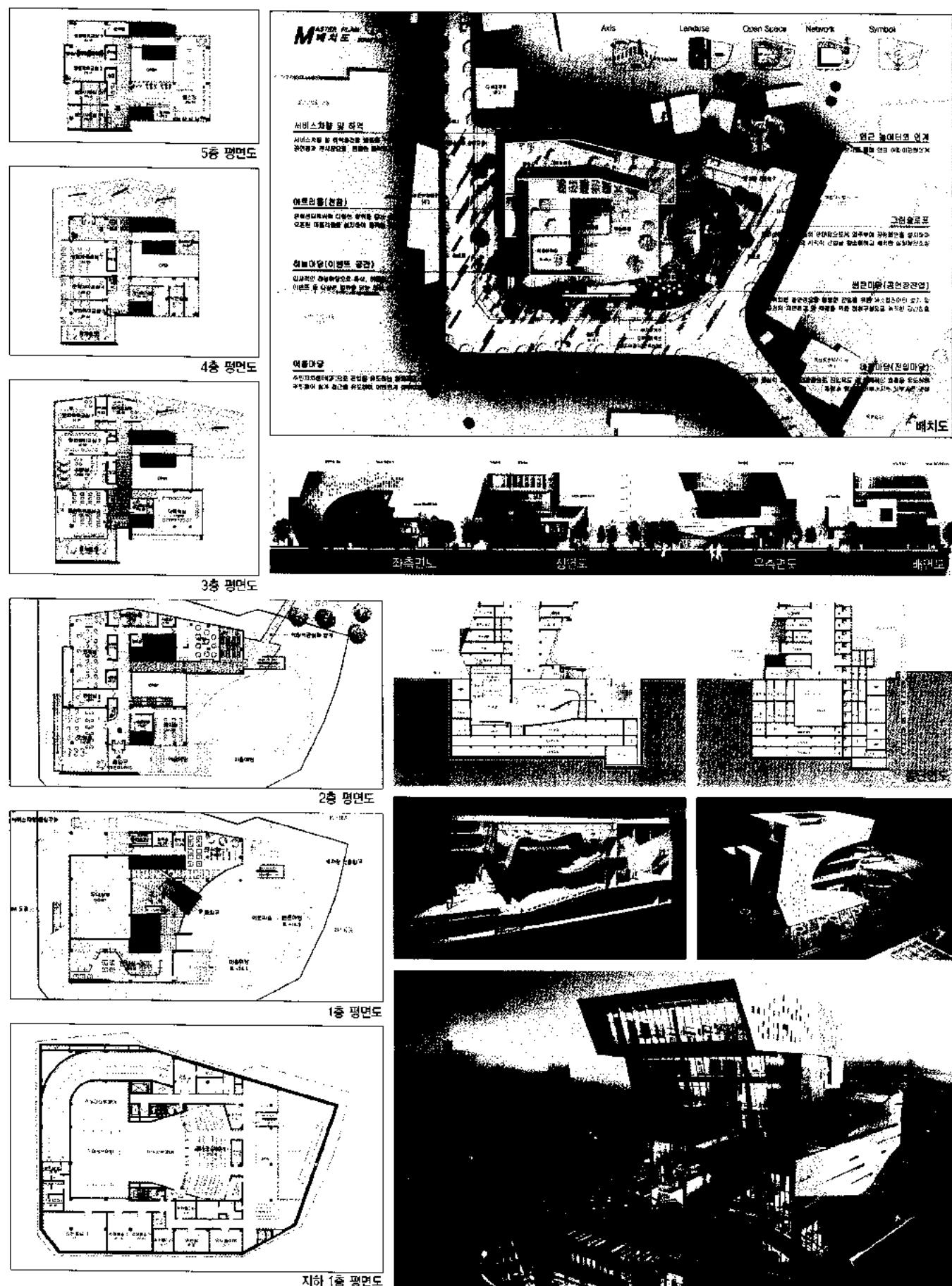
-집약된 볼륨과 입체적으로 확장된 저층부 계획으로 주민을 위한 열린 마당

다양한 프로그램을 최소한의 볼륨에 효율적으로 집적하여 최대한 넓은 면적의 광장을 만들어 낸다.

이 광장은 도심속 공원의 역할로서 주민 소통의 중심 장소가 될 것이다.

이러한 외부공간의 확보는 복합적인 프로그램간에 일어날 수 있는 시각적, 공간적 간섭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외부활동을 입체적으로 담아내는 열린 마당으로 계획하였다. ■





강남 도곡 1 문화센터

Dogok-1 Cultural Center

우수작 / 김병현 제작원
(주)창조 종합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서울 강남구 도곡동 892-6

지역지구 제3종 일반주거지역

주요용도 주민자치센터, 뮤지컬공연장, 문화센터, 도서관

대지면적 2,812m²

건축면적 1,405m²

연 면 적 14,184m²

건폐율 49.97%

용적률 148.47%

규모 지하 4층, 지상 6층.

설계담당 양웅, 정석호, 지충훈, 전지영, 김태훈,
황보애, 김재현, 정우선, 김혜미, 정우량,
홍순필, 김혜연, 김진형, 하재원

Split Site

Split site strategy creates an artificial cavity which is activated by the circulation of people and activities flowing through the space.

분화된 대지와 매스는 공용공간을 형성시켜, 자연스러운 공간적 위계와 주민의 활동적 교류를 만들어낸다.

Macro/Micro Urban Conn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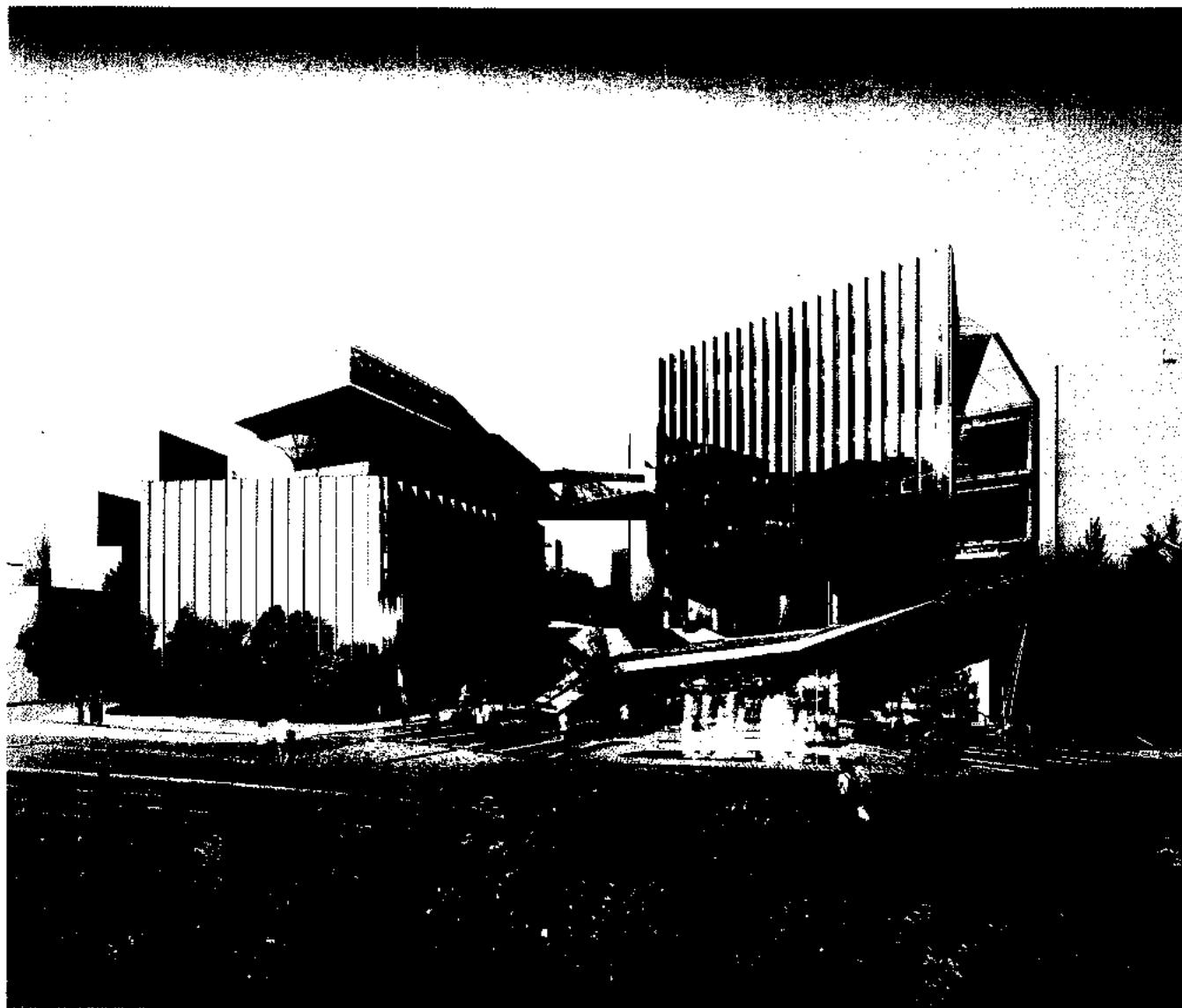
Duality of human and urban scale and daytime and nighttime u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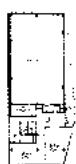
도시적 맥락의 성격을 내포하는 단위 자체를 이해하고 사용시간대 별의 전략을 제시한다.

Theater as Anch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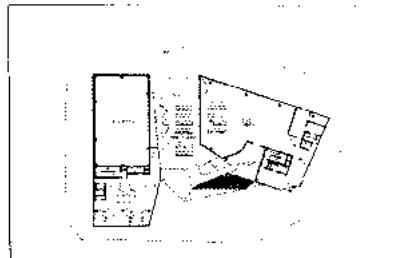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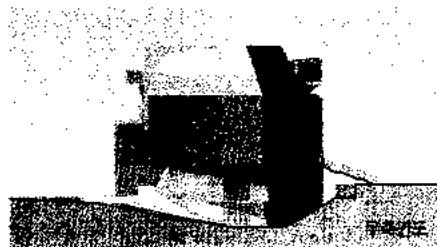
The theater is an anchor on which the other programs form and manipulate around.

뮤지컬 극장이라는 상징적이고 공간적인 구심점을 형성하고, 공용공간과 함께 간결하게 정리되어 있는 문화센터 및 주민자치센터를 그 주변에 배치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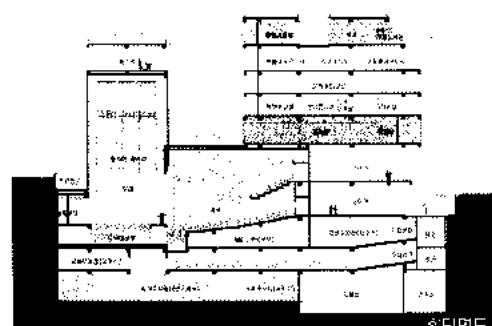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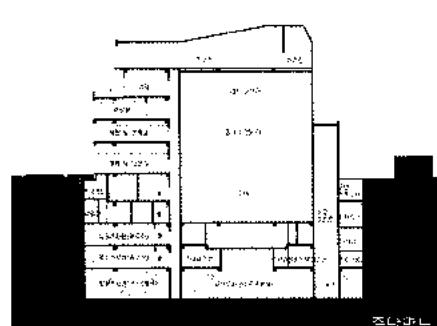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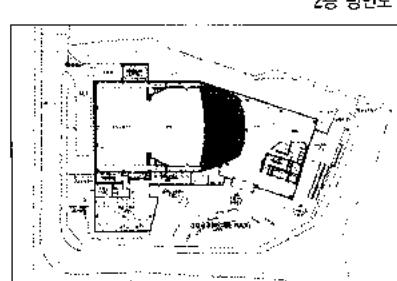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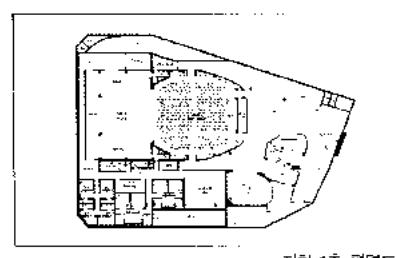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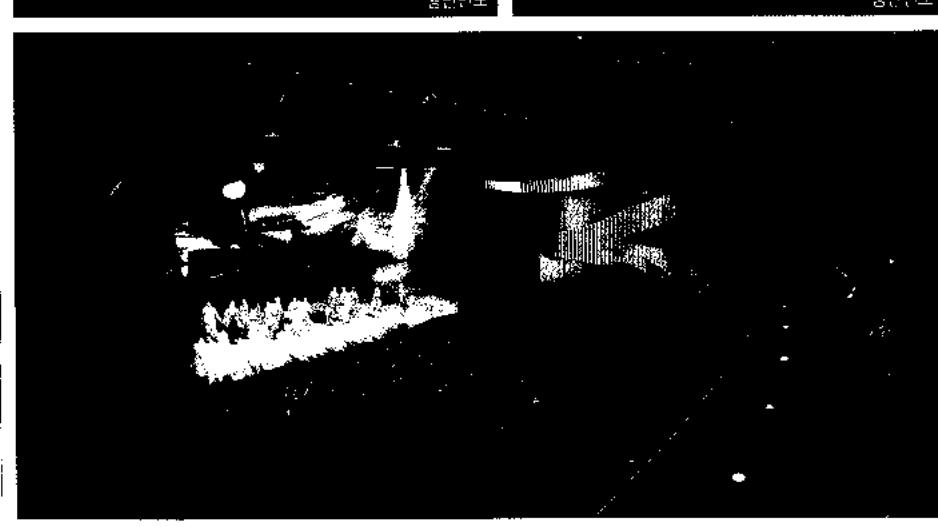
층단면도



층단면도



1층 평면도



지하 1층 평면도

강남 도곡 1 문화센터

Dogok-1 Cultural Center

가 작 / 조주환 제작

(주)시아플랜 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892-6번지

지역지구 제3종 일반주거지역

주요용도 문화 및 접회시설, 업무시설

대지면적 2,812m²

건축면적 1,385.42m²

연 면적 14,362.13m²

건폐율 49.27%

용적률 135.46%

규모 지하 5층, 지상 5층,

설계담당 윤정현, 김창국, 정향준, 조계원, 김영선,
박명재, 원소윤, 이상현, 윤자운, 윤정옥,
김해림, 권혁석

■ Concept

도곡1 문화센터는 도시의 주변 맥락에 대응하여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여야 한다.

지역문화에 대한 공공성 확보를 위해 전면광장과 후면부 공원을 계획하여 바음을 최대화하였고, 주민자치센터의 접근성 및 개방성을 고려하여 배치를 계획하였다. 수직적으로는 문화센터와 공연장 사이 지역에 열린 입체 테크를 구성하여 도시와 문화공간 간의 완충역할로 유기적인 공간구성과 문화·교류·소통의 장을 제공한다.

행정, 문화, 교육이 어우러지는 지역문화의 중심이 되고자 현악기의 Scroll eye를 모티브로 한 Harmony Icon을 통하여 새로운 문화의 물림을 형상화하고 도심에 아름다운 문화의 선물을 그려보고자 하였다.

Harmony Icon은 사람, 자연, 문화 중심의 생활을 담는 공간이며 지역의 Identity와 Community를 실현하는 장이다. 입체보행테크를 통한 공간의 변화는 소통과 교류의 장이며 사람들의 자연스런 유입을 통해 건축과의

또 다른 만남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공연장의 주출입 공간인 Eco Atrium은 빛의 유입을 통한 수직적 공간연계·빛과 소리의 특별한 공간을 창출하게 된다. 친환경적 요소와 Digital Surface를 동시에 접목시킨 Eco Roof는 살아 숨쉬는 자연을 제공한다.

■ 건축계획의 특징

Sound Cone (문화의 아이콘, 에코아트리움)

- 공연장 주출입 공간으로서 지상·지하 시설의 연계 및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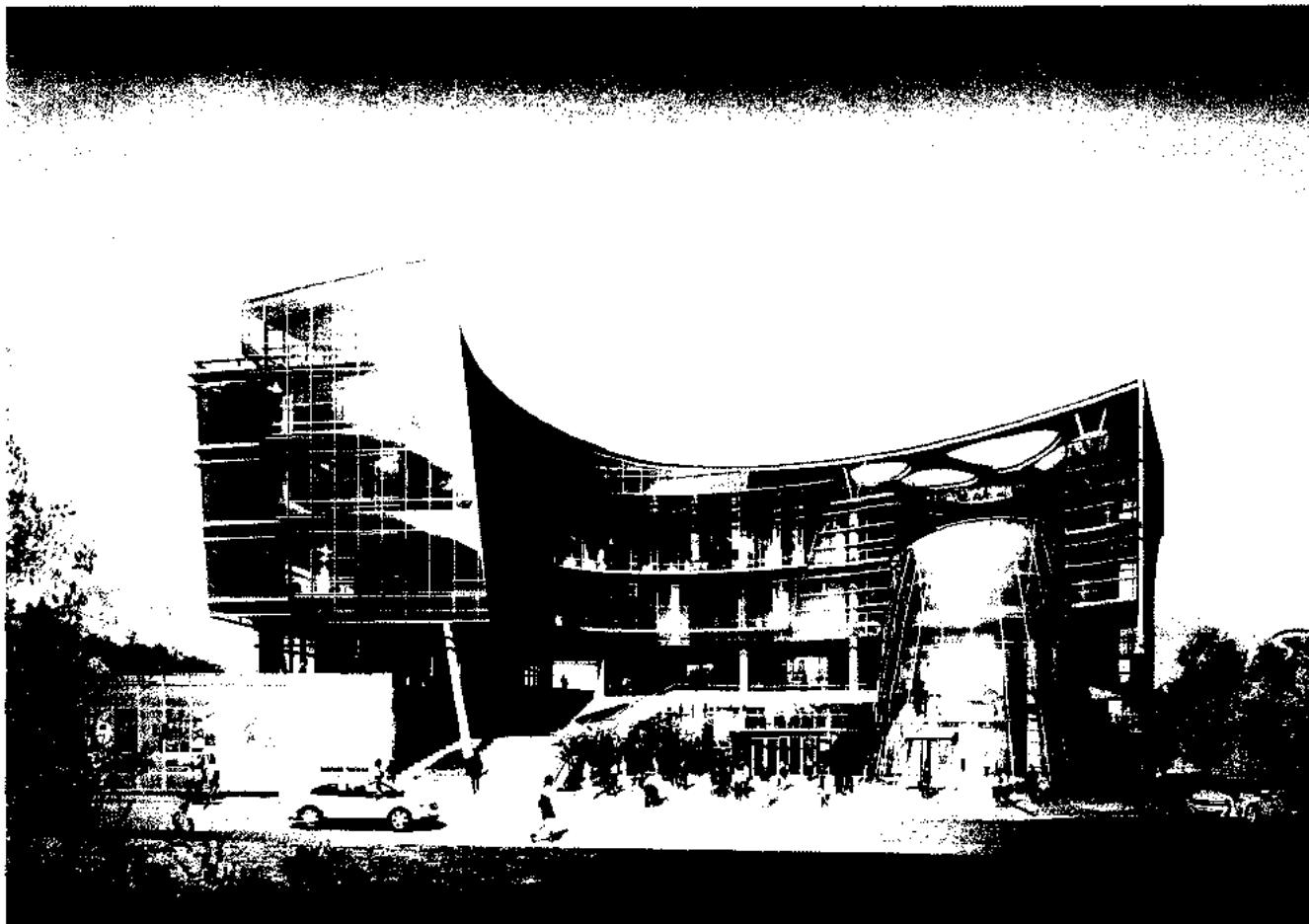
Galley Deck (문화, 교류, 소통의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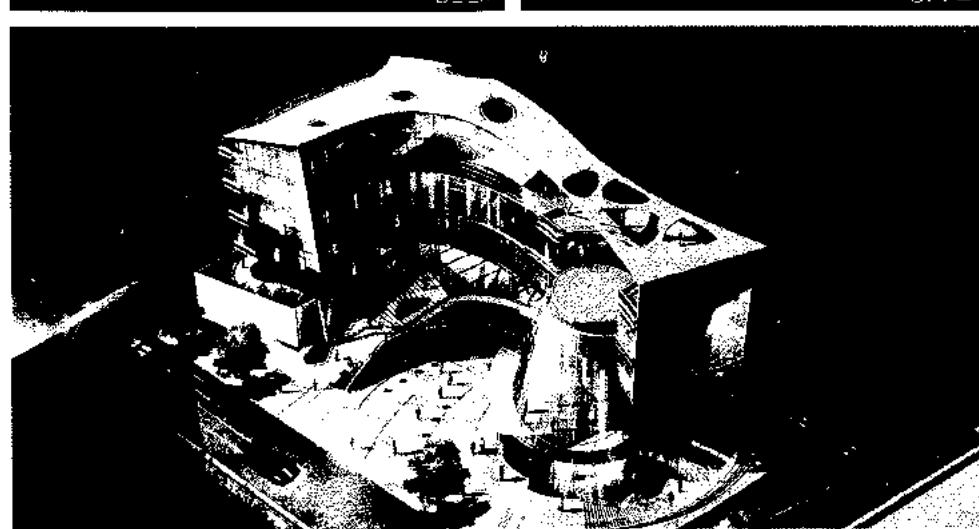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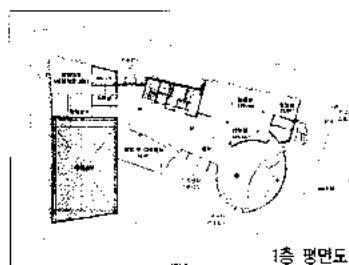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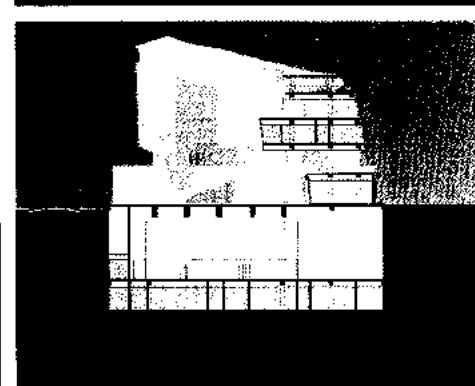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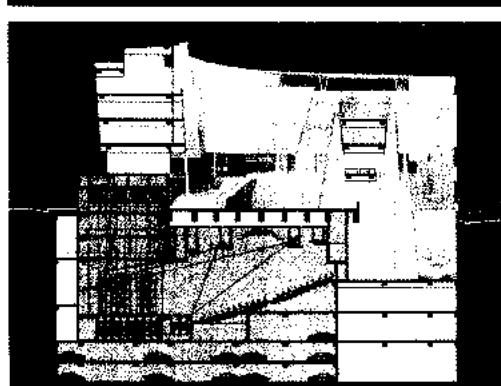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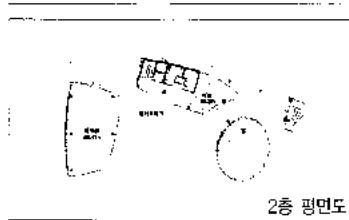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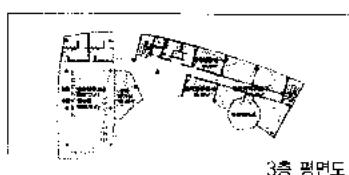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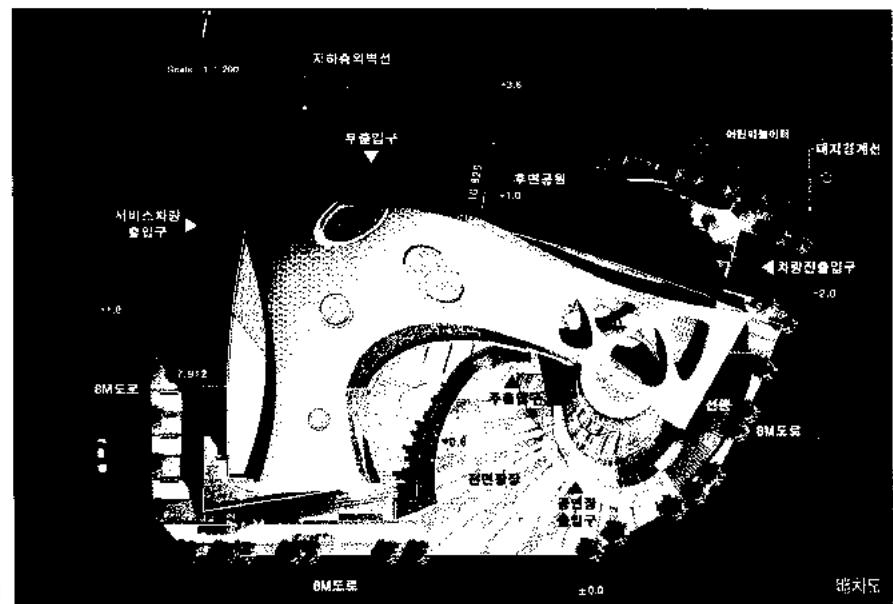
- 2층 Deck에 전시시설, 카페테리아의 설치로 문화교류 및 만남의 장 마련

Eco Roof (살아숨쉬는 자연의 장)

- 친환경 요소로 BIPV, 옥상정원, Digital Eco Surface 설치

이 3가지의 주요계획을 통하여 문화센터의 기능이 지역문화 발전의 구심점과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고자 하였다. ■





건축사의 ‘꿈’을 담는 전시회로 구성

- 30조, 건축 자재 시장 리더 역할 필요

An Exhibition Filled with Dream of Becoming an Architect

김형진 / 정회원, 가이아도시 건축사사무소
대한건축사협회 사업위원회 위원장
by Kim, Hyeong-jin, KIRA

‘ZERO혁명, 친환경건축을 디자인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2009년 한국건축산업대전은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2006년부터 3회에 걸친 한국건축산업대전이 전시회의 초석을 다진 행사였다면, 이번 4회 전시회부터는 건축사의 역량을 보여주는 ‘꿈’의 전시회로 거듭나고자 한다. 지금 까지 우리가 내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왔다면 이제는 외부를 향해 우리의 목소리를 내어야 되는 시점이다. 우리의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서 외부로 시각을 돌려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2009한국건축산업대전은 더욱 의미있고, 중요하다.

우리의 꿈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니 이 길을 걸어 왔는가? 우리가 갖고 있는 역량은 무궁무진하다.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하며 걸어왔던 모든 것을 전시회를 통해 보여주고자 한다. High Technology에 대한 이해, 문화 창조자로서의 역할, 친환경 녹색 건축의 구현, 건설 산업의 초석, 디자인 발전의 리더, 더 나아가서 도시 구성의 기본 요소로서의 건축을 보여주고자 한다.

‘사고하는 건축에서 행동하는 건축’으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는 항상 도시개발의 방관자로서 자리매김 해왔

다. 이제는 행동으로 우리의 건축을 다듬어 나가야 할 때이다.

올해 건축 예상 공사액은 110조원으로서, 자재 시장이 30%를 차지한다고 보면, 건축 자재시장은 30조원에 달한다. 건축사가 10%만 Handling 한다고 해도 3조 시장을 우리의 시장으로 만들 수 있다. 이 시장은 기존의 설계 시장과 맞먹는 시장 규모다. 이 시장을 우리는 간파하고 있다.

건축자재 시장은 건축사가 리더 역할을 해야 한다. 중심을 잊고 건축 자재 시장은 표류하고 있다. 자재 업체들이 어디로 눈을 돌려야 할지 우왕좌왕하고 있다. 리더의 탄생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것이다. 건축 자재들이 겸증 없이 사용되고 있고 곳곳에서 불량 자재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다. 과거에 당연시 여겼던 자재 선택권이 시공업체로 넘어가 있다. 감리업체의 자재 겸증 능력에도 한계가 있다. 자재 겸증권 및 자재 선택권을 다시 우리에게 돌려야 한다.

한국건축산업대전은 협회에서 예산 지원이 없는 비예산 사업이다. 총 전시회 예산을 자재업체들을 유치하거나, 협찬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자재업체들의 지불 비용이 제일 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자재업체들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전시회가 구성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시회에서 계속 새로운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효과를 봤다고 느끼게 해 주어야 전시회가 운영된다. 지금까지는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건축사들이 갖고 있는 역량으로 자재업체들이 효과를 봤다고 느끼게 해주는 방법은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간단한 방법은 우리 전시회에 전시된 좋은 자재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한 실질적인 혜택이 입소문이 나서 많은 자재들이 우리의 손을 거쳐갈 때, 건축사에게 거는 기대가 커지게 되고 자재 시장에서의 우리의 역량은 확대될 것이다. 물론 전시회를 통한 자재 시장에서의 역량 확대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이곳에서 우리의 기초 체력을 다지는 데 매우 좋은 마당이다.

또한 이번 전시회는 High Technology에 대한 효과적인 전시를 기획하고 있다.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건축이 기본인데도 불구하고 일선 현장에서는 현장을 중시하지 않는 건축 디자인 현실로 인해 불량품을 양산하고 있다. 불량품은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기 마련이다. 양질의 고급품을 제품화시키는 데에 우리의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High Technology에 대한 정보교류 및 기술 시장을 건축사가 선도해 나가야 한다. High Technology의 구현의 장(場)을 한국건축산업대전이 보여줄 것이다.

문화란 한순간에 형성되지 않는다. 구구한 역사를 통하여 형성되는 것이 문화다. 역사를 가진 문화에서 우리는 희열을 느끼고 삶의 정취를 느끼게 된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건축문화를 알리고, 건축문화의 중요성을 외부로 알게 해야 한다. '문화 전시회'가 한국건축산업대전이 추구하는 목표 중 하나이다. 문화는 멀리 있지 않다. 우리 가까이에 문화는 존재한다. 건축을 공예 등 미술과 접목시킨 바우하우스에서 유럽 건축을 알 수 있듯이 건축문화는 우리 삶의 주변에 있다.

앞으로 우리 자손에게 물려줄 유산은 '친환경, 녹색 건축'에 있다. 지금까지 혹시 소홀히 해 왔다면, 이번 MB정부의 슬로건에 기대어 더욱 발전 시켜야 하는 시점이다. 환경 재앙으로 치닫는 도시 환경에서 우리는 건축사의 Vision을 보여 주어야 한다. APT 입주민들이 겪는 신규 입주 건물의 환경 호르몬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환경오염 Zero, 아토피 Zero,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여야 한다. 또한 열에너지 사용 Zero를 통한 화석연료 Zero 지대, 탄소 Zero 지대를 만들어야 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친환경 특별관을 만들어 전시할 예정이다.

도시가 지금까지는 신속한 개발로 인한 무채색의 도시라면, 이제는 Design을 가미한 인간미 넘치는 도시여야 한다. 'Design 강국' 우리가 만들 수 있지 않는가? 이번 전시회를 통하여 Design KOREA의 모습을 보여 주고자 한다. 2009 한국건축산업대전은 전문가 집단의 전문전시회로 구성되고 있다. 최근의 여러 건축전시회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라면 건축산업대전은 건축 전문성을 보여주는 전시회가 될 것이다. 건축 전문업체가 효과적으로 홍보 할 마당이 한정 되었고 홍보효과를 의문시 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전시회의 포지셔닝은 의미가 있다. 우리가 추구할 의미가 있는 위치가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다. 미국의 AIA 총회가 Conference, 자재 전시, 기술전시, 건축사의 Festival의 성격을 갖는 흥겨운 총회

한국건축산업대전 2009
KOREA ARCHITECTURE FAIR & FESTIVAL

KAFF
KOREA
ARCHITECTURE
FAIR &
FESTIVAL

2009. 10. 07(수) ▶ 11(일)
COEX 3F Hall C_주 대서양홀

제로혁명 :
친환경 건축을 디자인한다

전시종목
전시관련 부대행사
전시행사
전시관련 부대행사
전시관련 부대행사

로 건축사들의 축제로 거듭나고 있다. 한국건축산업대전도 이에 못지않는 행사로 재탄생 될 것이다.

이 이외에도 다른 많은 전시가 기획되고 있다. 친환경교육행사, 건축영화제, 공공 프로젝트관 등 볼거리를 다양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일반인들도 관심을 갖는 행사도 기획 중에 있다. 대한건축사협회에서는 사업위원회가 전시회를 주관하고 있다. 단장님 포함 위원 10여명과 직원 2명이 10억원 정도의 예산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일반 중소규모 회사의 성격이다. 그만큼 협업에 바쁜 위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 이러한 조작으로 전시회를 진행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건축사 모든 회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 전시회를 성공시키고 우리가 자리 매김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뭉쳐야 될 때이다.

이번 전시회는 대한건축사협회 회원만이 아닌 모든 건축인의 힘이 결집되어야 한다. 또한 건축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여 성공적인 한국건축산업대전으로 거듭나야 한다.

건축사 여러분! 참가업체 등을 적극 소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한국건축산업대전 URL : www.kaff.biz

유럽공동체(EU) 국가들의 설계공모제도와 독일연방국 전(前)수도 「본(Bonn)」시의 ‘교육의 집’ 공모 수상 심의위원회 수상결정 회의 참관기②

Architectural Competitions in the EU-States & Experiencing the Jury session for the "House of Education" in the City of Bonn/Germany

이선구 / 송실대학교 건축학부 명예교수
by Prof. Dr. Lee, Sunkoo
Soongsil University, Seoul/Korea

「본(Bonn)」시 건물관리청(SGB, Städtisches Gebäudemanagement Bonn)이 공모공시 한 연방시 「본」 보를러 광장 ‘교육의 집(Haus der Bildung)’의 설계공모는 아래의 일정에 따라 진행되었다.

- 2008. 4.22 유럽연합(EU) 공모공시 발송
- 2008. 6. 4 응모마감
- 2008. 6.12 참가자 범위 결정
- 2008. 6.13 제반 서류 송달
- 2008. 6.24 질의응답(클로퀴움)
- 2008. 9.15 공모작 제출
- 2008.10.17 공모 시상심의위원회 회의
- 2008.10.24부터 공모작품 전시

‘교육의 집’ 설계공모는 세가지 서류로 구분되는데, 독일연방국의 다른 공모과정에서 처럼 ①공모공시(Auslobungstext), ②공모결과 기록(Protokoll) 및 ③문서화(Dokumentation)로 구성된다.

공모공시

공모공시 문서는 이번 ‘교육의 집’의 경우 총 4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제 1장은 공모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예컨대, 공모주관자, 공모의 조절과 운영, 공모대상, 공모의 종류, 허용범위, 참가자격, 공모서류, 질의응답, 공모작품 제출, 시상 심의위원회, 예비검토, 판단 제(諸)기준, 상금 및 매입, 계획작업 위임, 저작권, 공모결과 공시 및 공모작품 공공전시, 공모작품 반송, 공모작품 훼손 또는 분실에 대한 보증책임, (시상심의위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와 공모일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 여러 공모절차에 관한 사항들 중 우리나라의 경우와 다른 점은 시상심의위원회 위원들—심사위원, 부(副)심사위원 및 (표결권 없는 해당분야)전문가—의 명단을 공모공시 문서에 처음부터 분명히 밝히고 있는 점이다.

우리의 경우 보통 공모주관부서가 수행하고 있는 ‘예비검토’는 제출된 작품들의 가치판단 없이, 형식을 갖추고 양적(量的)으로 검토되며, 작품들의 법적 구속력있는 판단은 나중 시상심의위원회에 귀속된다. 예비검토 결과는 결정을 위한 예비검토 보고서로서 시상심의위원회의 자유로운 이용에 이바지한다.

이번 '교육의 집'의 경우 「본」시 건물관리청의 위탁을 받은 '도시 발전, 도시계획, 도시계획법 주식회사 니만+시테게사(社) (Niemann+Steege Gesellschaft für Stadtentwicklung Stadtplanung Städtebau Städtebaurecht mbH)' 가 2008년 9월 16일부터 1개월간 이 작업을 수행하였고 '예비검토 보고서 (Vorprüfungsericht)' 는 2008년 10월 17일 시상심의위원회 회의록 송달로서 통보된다. (이하 '공모 출품작 예비심사' 부분 참조)

상금 및 매입

총 71,000유로(한화 1억 2천 8백만원)가 상금 및 작품 매입비로 책정되었으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상금	작품구입 ¹⁾
1등 25,000€ (~4천 5백만원)	1. 4,000€ (~7백 3십만원)
2등 17,000€ (~3천 6십만원)	2. 3,000€ (~5백 4십만원)
3등 12,000€ (~2천 백 6십만원)	3. 2,000€ (~3백 6십만원)
4등 8,000€ (~천 4백 4십만원)	

시상 심의위원회는 공모공시된 금액의 결정을 자체결정을 통하여 위와 다르게 배분 할 수 있고, 공모 참여자들은 비용보상에 관한 권리가 없고, 작품 제작에 대한 보수도 받을 수 없다.

계속작업 위임

시상 심의위원회는 공모결과 결정 후 계속작업을 위임하기 위하여 서면 추천을 하게 되며, 공모주관자(「본」시 건물관리청)는 시상 심의 위의 추천을 존중하여 수상자 1인 또는 복수의 수상자들에게 '건축사와 엔지니어를 위한 보수규정(HOAI)' 15조에 따른 1부터 5까지의 과업단계(1.기초조사 2.예비계획 3.설계계획 4.허가계획 5.실시 계획) 작업을 위임하게 된다.²⁾

소유권 및 저작권

수상 및 매입으로 표창된 작품들의 제반 서류는 공모 주관자의 소유물이다. 작품들은 공모주관자가 공모 참가자의 이름을, 법적 인물의 경우 저작자와 저작자의 협력자 이름을 명명(命名)하여 전시할 수 있고 특별한 보상없이 문서화할 수 있고 출판할 수 있다. 공모주관자는 첫 번째 출판권을 가진다.

당선작 모조(模造) 건축에 대한 보호를 포함하는 저작권, 설계출판권은 저작자 소유이다. 이용권의 양도와 함께 공모 참가자와 그 법적 후계자는 공모작품과 실현된 작품간의 차이를 허가 할 것을 약속한다.

이 의무는 1965. 9. 9일자 저작권법을 통하여 정해진 법적 틀 내에서 유효하다.

공모결과 공시 및 공공 전시

공모결과는 공모참가 권리 검토의 유보(留保)하에 모든 참가자들과 주(洲)공모위원회에 시상위원회 회의록 송달로서 통보된다.

평가에 허가된 모든 공모작품들은 저작자 이름 제시하에 14일간 공공에 전시된다. 이 전시에 시상심의위 회의록 또한 전열된다. 전시 장소 및 전시 개시와 전시기간은 공모과정 참가자들, 공모위원회 및 공공언론과 전문잡지들에 적시(適時)에 통보된다.

공모작품 반송

공모작품들의 반송은 요구에 따라 또 무료로 공모참가자들에게, 작품들이 공모주관자의 소유로 전환되지 아니한 한 「니만+시테게」 도시발전 도시계획 도시계획법 주식회사가 발송한다.

보증책임

공모작품들의 훼손 또는 분실에 대하여 공모주관자는 공모주관자 가 자신의 사안에 통상 적용하는 주의를 행하지 아니한 경우, 훼손된 또는 분실된 자료들의 수선 또는 다시 마련함을 위한 비용보상 보증 책임을 진다.

이의제기

시상 심의위 결정은 최종적이다. 공모과정 실행에 있어서 규칙을 어긴 경우 공모 참여자들은 회의록 도착 후 10일 내에 공모주관자에게 항의 할 수 있다.

공모주관자는 공모위원회의 양해 아래 결정을 내린다.

공모 출품작 예비심사

1. 예비심사 과정

연방 시(市) 「본(Bonn)」의 「교육/문화의 집(Haus der Bildung)」 설계공모 출품작들의 예비심사는 「본」시 건물관리청(Städtisches Gebäudemanagement Bonn, SGB)과 긴밀한 조율하에 「뒤셀도르프」시 소재 도시계획관련 전문계획 사무소 「니만+시테게(Büro Niemann+Steege)」주식회사가 2008년 9월 16일부터 1개월간 수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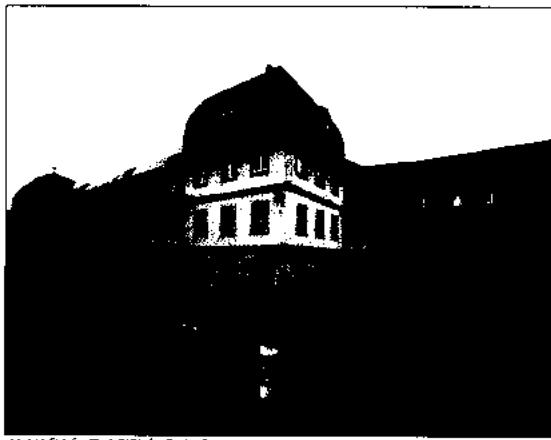
건축 제비용 검토는 「켐펜 크라우제(Kempen Krause)」엔지니어 사(社)에 외주(外注)하여, 이 회사로 하여금 에너지와 구조계획 및 투자와 운영비용의 타당성을 검토케하였다.

이번 공모과정에 상관된 「본」시 관계자들이 2008년 9월 24일, 「니만+시테게」사무소가 제출한 작품들을 선별(選別)한 후, 회동하여 아래 15인의 인사들이 예비심사에 참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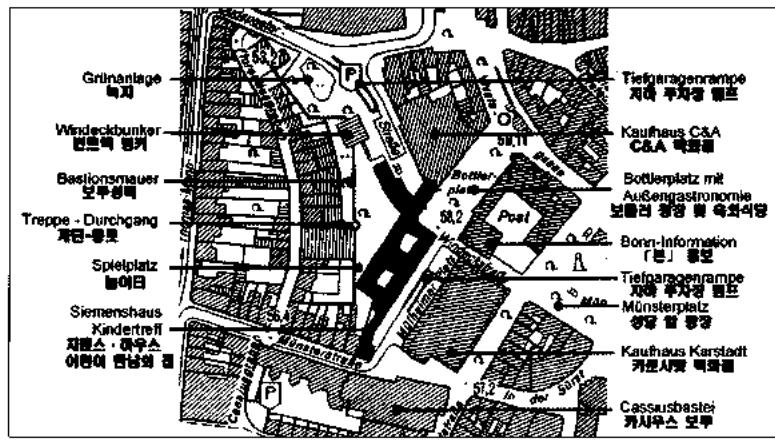
- 「본」시 건물 관리청(SGB) 프로젝트 주관인 데트마르 · 쿠
- 「본」시 건물관리청 지상건물/기술업무 담당부장 아네테 · 브리머 외
- 도서관장 마리안네 · 브라육만

1) 작품구입은 사설상 4등 이후 5, 6, 7등에 해당됨.

2) HOAI의 9과업 단계에 관한 자세한 것은 이선구,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 기준 기초조사 · 유럽 각국의 건축사 업무와 대가기준에 관하여—" (최종보고서 2009. 2. 24) p.16 및 pp.38~42 참조



연방서「본」「보풀리」광장 「교육의 집」



「교육의 집」 위치도

- 국민대학(성인교육기관, VHS)장 잉그릿 · 쉘 박사
- 시문화 담당부서 아네테 · 호르츠
- 문화재 관청 프란츠 · 요셉 탈봇 박사
- 건축 법규청 빌리 · 도르마제
- 도시계획청 마르쿠스 · 발터
- 소방 및 위험방지부 토마스 · 베닝
- 니만+시테게 사무소 베아테 · 니만 박사 외
- 캠펜 · 크라우제 엔지니어 사(社)

-문화재 보호

-교통 관계사항

-건축법적 및 계획법적 관계사항

-전략문서³⁾

-형식적 기준들

예비심사 결과는 아래 범주(範疇)에 따라 세분된다.

■ □ □ 충족시키다./있다.

□ ■ □ 조건부로 충족시키다./불완전하게나마 있다.

□ □ ■ 충족시키지 못한다./없다.

5. 판단 기준들

제출된 작품들은 수상심의 위원회에서 과업제시에 언급된 판단기준들에 따라 판단되며, 순서는 가치평가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도시계획적 및 건축적 개념의 형태구성적 및 공간적 질(質) 특히,
- 지도적 상(指導的 像, Leitbild)⁴⁾/모범 및 형태를 결정 짓는 기본 아이디어
- 도시계획적 주변 및 주변 공지와의 연계, 주변 이용과의 연결
- 도시계획적 틀의 제여건과의 창의적이며 구법적 타결(妥結), 특히 기념물(문화재) 보호적 사안에 관련
- 적절한 척도성(尺度性)
- 공지(空地)의 형태구성 및 이용상의 질(質)
- 기능적 및 기념물 보호법적 국면, 특히
- 부동산 입지 및 기존 건조물과의 상관관계 개념
- (건물)이용상의 변경 및 건물 증축 가능성들의 제시
- 외적(外的) 및 내적(內的) 동선의 기능성 제시
- 설비체계, 생태(生態)적 및 에너지 기술적 개념
- 건축계획적, 건축법적 및 기념물 보호법적 실현 가능성의 확보
- 경제성, 특히
- 실현 가능성
- 유통성

공모수상 심의위원회 수상결정 회의(Preisgerichtssitzung)의 틀 속에서 「니만+시테게」사무소가 예비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니만+시테게」사무소에 제출된 응모작품들은 공모공고를 준수하였는지 및 질의 응답 「콜로퀴움」후 규정된 형식적인 규제사항들을 지켰는지 검토되었다. 제출도서의 형식을 지켰는지 및 요구된 업무를 전부 충족시켰는지가 검토되었다.

2. 제출된 응모 출품작품들

총 15개 사무소들이 공모작들을 기한내에 또 익명으로 제출하였다. 작품 저작자들의 표지(標識)는 1001부터 1015까지의 위장번호로 대체되었다.

3. 예비심사 보고서 내용

15개의 응모작품들은 똑같이 1001부터 1015까지 번호 표시한 4페이지의 비교 설명서로 제시되었다.

4. 검토 기준

공모공고자(주관자)의 규제사항을 지켰는지는 아래의 범주에 따라 문서화(文書化)되고 경우에 따라 주석으로 보완된다.

- 일반사항
- 도시계획적 제 목표
- 공간계획상의 요구사항들

3) 에너지 기술, 구조역학 및 비용에 관한 제문서.

4) “지도적 상(指導的 像, Leitbild)” 개념은 모범적이며 이상적인 영상(模像, image)을 뜻하며, 어느 계획 아이디어가 가장 이상적인 이미지를 보이는지를 의미함.

- 건물 유형 및 이용상의 안배(按排)의 경제성
 - 투자 및 투자 후속 비용
- 수상심의 위원회는 판단에 필요한 추가 기준을 발전시킬 수 있다.

6. 예비심사 보고(출품작 1001부터 1015까지)

나중 수상심의 위원회에서 1등 당선작으로 선정된 출품번호 1002의 예비심사 결과를 예시하면 아래와 같다.

연방도시 「본(Bonn)」/보틀러(Bottlerplatz)광장 “교육/문화의 집(Haus der Bildung)”

기본개념(작품설명서로부터 편집발췌)

설계의 우선적 목표는 한편으로 ‘교육의 집’에 사람들을 초대하는 입구(入口) 상황을 만들고, 다른 한편으로 건물내부에 두 가지 이용분

야 (국민대학과 도서관)간의 공동 이용을 유발하는 연계를 실현시킨 점이다.

설계는 이를 위하여 두 가지 커다란 건축적 조치를 취하였다. 외부로부터의 인지를 위하여 「지멘스 하우스」 대신 새로운 초대하는 입구 건물이 만들어졌다. 건물내부 감지를 위하여 커다란 대표성을 지닌 독서 미당 겸 광정(光正)이 만들어지고, 이 광정주변으로 시립도서관과 ‘국민대학’ 교실들이 배치되고 서로간의 시각적 연계를 가능케 한다.

‘교육의 집’의 후원(後園)은 옛 도시성벽에 기대어 그림과 같은 피난처를 구성하며 고도(高度)의 체재의 질을 창출한다. 따라서 도시박물관과 주모자를 위한 건물 설계개념의 주요사안이 되었고 외곽은 완전하게 유지된다.

「플로렌티우스」 해자(核字) 통과도로와 도시 성벽을 노출시킴은 도시계획적으로 매우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어 이를 더 이상 덮는 일은

“Haus der Bildung” Bottlerplatz Bundesstadt Bonn		
	1001 NF Realisierungsfeld: 5.811 qm NF Ideenfeld: 2.952 qm	
	1002 NF Realisierungsfeld: 6.632 qm NF Ideenfeld: 2.658 qm	
	1003 NF Realisierungsfeld: 6.612 qm NF Ideenfeld: 2.726 qm	
	1004 NF Realisierungsfeld: 6.131 qm NF Ideenfeld: 3.054 qm	
	1005 NF Realisierungsfeld: 6.600 qm NF Ideenfeld: 3.323 qm	
	1006 NF Realisierungsfeld: 6.352 qm NF Ideenfeld: 3.089 qm	
	1007 NF Realisierungsfeld: 6.711 qm NF Ideenfeld: 3.156 qm	
	1008 NF Realisierungsfeld: 5.849 qm NF Ideenfeld: 3.058 qm	

1001~1015 위장번호로 표시된 공모 출품작들(NF 이용면적, 실현 부분~아이디어 부분)



▲ 상 심사위원회 회동, 중앙이 위원장 「브루데」 가드너 교수



등굣물을 수회하는 심사위원회

배제되었다.

「빈트엑」 벙커의 건물 갸스어 대조를 이루며 벙커 주변으로 벙커에 기대어 「필리그란」 구조의 신축구조물로 확장된다. 건조물의 높이와 부파는, 기존 건물들에 필요한 인동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율되

었다. 여기에 가로선(건축선)은 일층 고의 입구 건조물로만 표시된다.

상부로 향하는 건물부위는 「빈트엑」 벙커의 기존 건축선 상에 위치하고 있어 인접한 “로襦의 집”的 전면에 일관되게 계속되는 입면을 가능케 한다. ■

일반사항	소견
■ □ 공모한계를 준수	
도시계획적 목표 요구사항	소견
「보틀러」 광장 목표영역 ■ □ 기존상황유지, 특히 입구상황유지	기존 입구를 행정만을 위하여, 건축적 변경없음
「뮐하임」 광장 목표영역 □ ■ 새로운 이용을 위한 입구상황을 만들기 위하여 「지멘스·하우스」를 끌어들임	신축+새로운 이용: 도서관 및 국민대학 주 출입구를 「지멘스·하우스」 건물에 신축
「부다페스트」 가 목표영역 □ ■ 기존 건물들과 건축적 보완 및 도시 가옥의 철마선 높이와 및 건축선 유지 ■ □ 기존녹지와 차도에로의 연결도로들을 - 지하차고 진입로 포함 - 새로운 구성으로 편입	벙커 증축은 도시가옥 철마선보다 높지만, 건축선을 지킴 「부다페스트」 가의 시립박물관입구
중정 목표영역 ■ □ 증축이 1층 영역보다 높지않음 ■ □ 녹지배치 연관성 있음 ■ □ 구성에 있어서 역사적 도시성벽연계 ■ □ 도시성벽에 녹지구역 보존	증정 내에 증축없음 증정내 공지공간으로 포함시킴: “문화정원” 주변으로 산보로

교통분야에 대한 요구사항	소견
■ □ 부자에 「뮐하임」 광장을 통하여 접근 ■ □ 후방(後方) 영역으로의 접근(빈트엑 가/부다페스트가) □ ■ 「뮐하임」 광장 가로포석 변경예정 ■ □ 후방영역에 추가 지상주차장 없음 □ ■ 공공영역에 추가 자전차거처장소 마련 □ ■ 「부다페스트」 가와 「플로렌티우스」 해자(亥子)와의 보행자 연결로 유지 및 연결로 폐쇄시설마련 가로쪽으로부터 장애물 없는 진입로 있음	없음 없음 폐쇄 가능성에 대한 언급 없음
	빈트엑 가/보틀러 광장 관문 및 신(新) 「지멘스 하우스」 내(內) “국민대학”/도서관 주출입구 바로 밑에

기념물 보호에 대한 요구사항	소견
■ □ “옛 사청(Altes Stadthaus)” 입면에 건축적 조작금지 □ ■ 보루(堡壘) 벽으로부터 신건물의 거리 두기 □ ■ 건물골조에 구조적 개입금지 □ ■ 계단보존 ■ □ 기존 복도 규모 유지	눈에 보이는 변경 없음 벙커: (보루) 벽을 추모지 로비에 보이도록 하며 증축에 포함시킴 1층과 2층에 내력벽을 기둥시스템으로 교체 주계단 보존, 부계단을 옮긴듯함

5) 「철마선 높이(Traufhöhe eaves height)」 개념은 유럽 도시 가로상(像)을 수직방향으로 규칙성 있는 연속적인 높이를 유지하게 하는 건축법 규정으로, 수령 투영적 성격의 건축선과 함께 도시계획적 두 가지 주요 개념이다.

계획법적 및 건축법적 영역의 요구사항		소견	공간계획/이용가능한 바닥면적(NF)		요구면적(㎡)	실제(㎡)	%
■ ■ ■ 인동거리 준수		대지경계에 「자멘스·하우스」에 증축, 병커의 뒤편 인동거리 검토요	실현부분 총	5,950~6,250	6,632	108.7	
■ ■ ■ 지구축조양태계획 (Bebauungsplan)의 내용 고려		「자멘스·하우스」건축선 초과, 병커증축 가능부지 밖에 방화구역 인지불가, 열린 중앙도	아이디어부분 총	2,980	2,858	97.58	
■ ■ ■ 화재예방: 소방차 진입로, 건축적 방화 등		서열람실 및 병커 증축에 방화구역 인지불가, 행시홀에 두 번째 구호길 없음 병커층을 올림에 “고층건물” 요구사항 필요	실현부분				
■ ■ ■ 필수적 피난길		비상구가 부분적으로 옥외로 이끌지 않거나, 타용도로 전용됨	시립도서관 총	3,065~3,300	3,167	99.51	
■ ■ ■ 필수적 계단실		병커 계단실에 직통하는 옥외계단 없음, 「자멘스·하우스」에 열린 계단실	도서실 면적	2,215~2,450	2,251	69.51	
여타사항		방화구역에 대안으로서 완전한 스프링클러 설치	사무실 면적	600	666	111	
			서고	250	250	100	
공간계획에 대한 요구사항		소견	국민대학 총	2,350~2,400	2,593	109.19	
시립도서관			세미나실	1,795~1,820	1,983	109.71	
■ ■ ■ 상세요구사항(도표참조)		어린이와 청소년 분야가 인지가능하도록 분리되지 아니함. 운영측면에서 두개의 도서관 출입구가 불가능하며, 도서관 충간을 연결하는 승강기 없음	사무실	455	468	102.86	
국민대학(Volkshochschule)			여타제실	110~135	142	115.92	
■ ■ ■ 상세요사항(도표참조)		1층에 서비스 및 자문사무소 없음	시립도서관/국민대학 공동	285~300	497	169.91	
시립도서관/국민대학의 공동이용			행정	250	제시안함		
■ ■ ■ 상세요사항(도표참조)			아이디어 부분				
시립박물관			시립박물관 총	2,350	2,300	97.87	
■ ■ ■ 상세요사항(도표참조)			상설전시	1,100	972	88.36	
행정이용			특수전시	250	303	121.2	
■ ■ ■ 상세요사항(도표참조)			출입구	40	0	0	
시립박물관		도면상의 전시공간 크기를 검토할 수 없음	어린이 워크숍 공작실	40	53	132.5	
■ ■ ■ 상세요사항(도표참조)			사무공간	220	148	67.27	
추모장소			사무 인접 공간	270	334	123.7	
■ ■ ■ 상세요사항(도표참조)			공작실 및 수장고	430	490	113.95	
시립박물관/추모장소			추모장소 총	380	357	93.95	
■ ■ ■ 상세요사항(도표참조)			전시공간	180	174	96.67	
여타사항		전 세도서에 승강기 문(門) 개구부 안목치수 검토불가	사무공간	200	183	91.5	
			시립박물관/추모장소 공동	200	201	100.5	
투자 및 운영 제비용에 대한 목록을 비롯한 전략문서		소견					
■ ■ ■ 에너지 기술 개념		적절하며 경제적					
■ ■ ■ 구조역학적 개념		단순					
■ ■ ■ 비용한계 준수		초과 ≥ 20%					
형식적인 판단기준들			기존 임상(林柵狀)에 대한 언급없음, 도시 계획적 아이디어 부분에 대한 단계적 실현 표시가 글로서만, (배 치도 의의)도면 방위표시 결여, 식 별데이터 서류 1장만, 디지털 식별 데이터 서류 결여				
■ ■ ■ 요구된 제(諸)과업							

□ 1차 평가순회 □ 2차 평가순회 □ 3차 평가순회 □ 시상/작품매입

이사회

제6회 이사회

2009년도 제6회 이사회가 지난 6월 10일 오후 2시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협의사항으로 '건축사법인' 관련 건축사법시행령 개정의 건, '정관' 및 '통합이행및운영규정' 개정의 건, 건축학과 교수 회원영입의 건, 명예이사 및 명예회원 위촉의 건과 부의안건으로 통합창립 준비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예비규정 개정의 건, 위원회 명칭 변경의 건과 기타사항이 논의됐다.

▲협의사항

- 제1호의안 : '건축사법인' 관련 건축사법시행령 개정의 건

-오늘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대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대응하기로 함.

▷예시 : 건축사(20인→30인), 건축물 면적(10m^2 → 20m^2)으로 변경요구

▷기존의 민생건축사 생존대책에 관한 대안제시

▷티단체와의 공조방안 검토 등

- 제2호의안 : '정관' 및 '통합이행및운영규정' 개정의 건

-통합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변호사의 질문을 받기로 하고,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함.

- 제3호의안 : 건축학과 교수 회원영입의 건
-특별회원으로 우선 영입하여 활동하도록 하고, 회원의 권리와 의무 등 세부사항은 건축사법 개정 이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함.

- 제4호의안 : 명예이사 및 명예회원 위촉의 건

-협의사항 제3호와 연계하여 검토하기로 함.

-아카시아회장 및 현 AIA 회장 등을 명예

회원으로 위촉하기로 하고, 수여시기 등은 국제위원회에서 검토하기로 함.

▲부의안건

- 제1호의안 : 통합창립준비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정관 개정문제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다루기로 함.

- 제2호의안 : 예비규정 개정의 건

-회원 및 외부인사의 회의참석수당을 5만 원으로 통일하되, 외부인사의 경우 회장과 위원장이 협의하여 20만원 이내에서 회의참석수당을 변경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승인함.

- 제3호의안 : 위원회명칭 변경의 건

-원안대로 승인함.

▷여성위원회 → 여성주거복지위원회

▲기타사항

-unker제도 발주문제, 현상설계 심의위원 선정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공조하여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함.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국가건축정책 수립방안을 우리 협회에서 발표할 수 있도록 요청하기로 함.

제3회 시·도건축사회장 회의

제3회 시·도건축사회장 회의가 지난 6월 25일 오후 1시 30분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건축사단체 통합의 건과 기타사항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의안 : 건축사단체 통합의 건

-정관개정(안)에 대한 가협회 수정 승인(안)중 제1조의 법인격을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않기로 하되, 절충안을 마련하여 협상하기로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을 '주무부처장관'으로 변경하는 것은 수용하기로 함.

-임시총회는 예산 등을 고려하여 창립총회 당일에 개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함.

▲기타사항

-2009년도 건축사연수교육 스케줄을 각 시도건축사회에 알려주는 것과 교육이수 시 본협회에서 인증하여 교육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토록 요청함.

위원회 개최 현황

■제3회 사업위원회

제3회 사업위원회 회의가 지난 5월 27일 삼성동 코엑스 인도양홀 2층 주최자사무국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시회 행사주제 결정에 관한 건과 전문지 광고에 관한 건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전시회 행사주제 결정에 관한 건

-올해 주제는 위원회와 공모전으로 제안된 의견들을 취합하여 협의한 최종결과, '제로혁명, 녹색건축, 지속 가능한 미래로의 초대'로 결정하며, 공모전에 참여한 회원에게는 소정의 담배풀(협회 커프스)을 지급키로 함.

• 제2호 : 전문지 광고에 관한 건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홍보비를 기축적으로 사용해야 되니, 전문지 유료광고는 1매체(2회) 계재 시 100만원 선으로 맞추어 진행키로 함.
-전문지 무료광고는 교환조건을 유리하게 협의하여 최대한 홍보키로 함.

■제3회 친환경위원회

제3회 친환경위원회 회의가 지난 6월 3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친환경위원회 분과별 운영과제에 관한 건, 해외 친환경 건축물 탐방에 관한 건과 기타사항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친환경위원회 분과별 운영과제에

관한 건

-과제를 분과별로 나누어 추진하기로 하고, 담당과제 분류는 분과위원장들이 합의하기로 함.

• 제2호 : 해외 친환경 건축물 탐방에 관한 건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일본 방문지만 정하면 사무처에서 차후 업무 추진

▷해외 친환경건축 탐방은 위원회 주최가 아닌, 협회 자체의 탐방으로 보며, 친환경위원회에서는 친환경관련 방문지만 선정하는 방향으로 함.

-일본건축사회연합회에 3~4일 정도의 방문 일정에 맞는 일본 친환경 건축물 추천 요청 공문 발송(국제협력팀에 협조 요청)

▲기타사항

• 분과별 인원조정

-백민석(전문위원) 1분과, 김후석(전문 위원) 2분과, 이영호 위원 2분과에서 1분과로 이동

■제4회 친환경위원회

제4회 친환경위원회 회의가 지난 6월 10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친환경위원회 분과별 운영과제 선정에 관한 건, 해외 친환경 건축물 탐방지 선정에 관한 건과 기타사항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친환경위원회 분과별 운영과제 선정에 관한 건

-분과별 위원장은 차기 회의 까지 결정된 운영과제에 대한 추진일정, 필요 예산 등을 정리하여 보고하기로 함

▷1분과 : 건축사 대가 기준에 친환경 설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당위성 연구(연구용역 실시 후 건축사에게 유리하도록 연구용역에 대한 지속관리)

▷2분과 :

- 1) 친환경 재료에 관한 자료 수집
- 2) 국내 친환경 건축물 적용 현황과 설계기법에 대한 연구
- 3) 국내, 외 건축사사무소의 설계사례 및 프로세스, 설계기법, 문제점 연구

• 제2호 : 해외 친환경 건축물 탐방지 선정에 관한 건

-위원회에서 선정한 3개의 탐방지를 일본건축사회연합회에 알리고 인근 지역의 친환경 관련 건축물로 하여 3박 4일 정도의 일정으로 스케줄을 정하고 안내하여 줄 수 있는지 의사 타진하도록 함

■제5회 친환경위원회

제5회 친환경위원회 회의가 지난 6월 17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친환경위원회 운영과제의 기간 및 예산 선정에 관한 건과 친환경 관련 간담회 개최에 관한 건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친환경위원회 운영과제의 기간 및 예산 선정에 관한 건

-분과별 협의된 사항 중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분과위원장 협의를 통해 조정한 후, 사업내용과 예산 반영 여부를 회장님과 협의하기로 함.

▷연구용역 건은 위원회의 충분한 사전 조사와 검토 후 차기년도에 추진되는 방향으로 하기로 함.

▷간담회 개최(?)은 분과별 유사성이 있으므로 공동 개최하여 예산 낭비를 줄이기로 함.

• 제2호 : 친환경 관련 간담회 개최에 관한 건

-분과별 의견 정리와 사전 연구를 통해 위원회가 목표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도록 충분한 내부 검토 후 9월경 개최하기로 함.

■제3회 회원교류위원회

제3회 회원교류위원회 회의가 지난 6월 10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동호회 운영규정 제정에 관한 건, 건축인의 날 행사에 관한 건과 기타사항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동호회 운영규정 제정에 관한 건

- 운영규정 초안을 기초로 운영규정 또는 운영세칙 등을 부위원장이 위원(박종철, 이세권, 이인경)들과 함께 작성하여 법제위원회 및 행정위원회의 자문을 받기로 함.
- 제2호 : 건축인의 날 행사에 관한 건
-위원장이 시 · 도건축사회 회장회의에 참석하여 각 시 · 도건축사회와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기로 함.

▲기타사항

- 건축인의 날 행사는 대한건축학회가 주관하고 있으므로 학회와 공동으로 행사를 할 경우 학회와의 협의가 필요하며, 협회 단독으로 전국단위로 추진하는 것도 고려하기로 함.

■제1회 정보 · 교육위원회

제1회 정보 · 교육위원회 회의가 지난 6월 11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2009년 건축사(연수)교육 방향과 내용에 관한 건과 협회 홈페이지 이미지 교체 및 내용 보강에 관한 건, 시 · 도 건축사회 교육 인증에 관한 건, 회원 인증 및 교육관리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건,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2009년 건축사(연수)교육 방향과 내용에 관한 건
-2009년 교육(연수)내용 및 목표를 아래와 같이 하기로 함.
 - ▷ AIA 인증 기준에 적당한 교육내용과 시간
 - ▷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소규모 사무실 회원에게 꼭 필요한 교육
 - ▷ 미래 건축사사무소가 생존하고 경쟁력을 강화 할 수 있는 교육
 - ▷ 친환경 건축과 관련된 교육
 - ▷ BIM 교육
- 제2호 : 협회 홈페이지 이미지 교체 및 내용 보강에 관한 건
-홈페이지 내용을 아래와 같은 원칙으로 보강하기로 하며, 친환경건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함.

- ▷ 친환경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건축사협 회의 이미지 홍보
- ▷ 디자인 관련 협회로서 자긍심을 줄 수 있는 세련된 이미지 구현
- ▷ 회원들이 많이 접속 할 수 있는 내용 보강
- ▷ 친환경건축과 관련된 분야별 정보, 자재, 사례 등 내용 보강
- ▷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방안 연구
- 제3호 : 시 · 도건축사회 교육 인증에 관한 건
-시 · 도건축사회에서 시행하여 교육인증을 요청한 교육(글로벌건축 최고위과정 외 5개교육)에 대하여 승인하기로 함.
- 시 · 도건축사회에서 시행하는 교육에 대하여 교육인증 여부를 결정 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교육소위원회에서 만들기로 함.
- 제4호 : 회원 인증 및 교육관리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건
-회원 인증 및 교육관리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개발하기로 함.
 - ▷ 각 회원이 인터넷을 통해 본인의 교육 내용을 입력 또는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 각 건축사회에서 인정, 인증, 승인할 수 있어야 함.
 - ▷ 본협회에서 인정, 인증, 승인할 수 있어야 함.
- 제5호 :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정보소위원회, 교육소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구성 함.
 - ▷ 정보 소위원회 : 위원장(인의식), 위원(박진의, 상대정, 유준호, 이용우, 정봉원)
 - ▷ 교육 소위원회 : 부위원장(권연하), 위원(박운천, 설영찬, 이병구, 조호룡), 전문위원(정무웅, 박대식)

■제1회 교육소위원회

제1회 교육소위원회 회의가 지난 6월 30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2009년 건축사(연수)교육 방향과 내용에 관한 건, 2009년 수요강좌 교육 내용에 관한 건, 회원인증 및 교육 표준

세칙에 관한 건과 기타사항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협회 홈페이지 이미지 교체 및 내용 보강에 관한 건

내용에 관한 건

- 2009년 건축사(연수)교육 내용은 아래와 같은 교육을 위주로 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함.
- 친환경 건축과 관련한 교육을 강화하기로 함.
- 소규모 사무소 회원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을 발굴하기로 함.
- 제2호 : 2009년 수요강좌 교육 내용에 관한 건
-2009년 수요강좌 교육 내용은 아래와 같은 교육을 위주로 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함.
- 강사는 가능하면 복수로 추천하기로 함.
- 제3호 : 회원인증 및 교육 표준세칙에 관한 건
-회원인증 및 교육 표준세칙은 원안대로 하기로 함.
- 회원인증 및 교육 표준세칙은 원안대로 하기로 함.

▲기타사항

- 2009년 수요강좌 교육은 유료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 시 관련 자료 또는 기념품으로 받은 비용만큼 되돌려 주기로 함.
- 2009년 건축사(연수)교육 내용 중
 - 건축 디테일설계, 건축공사 하자 예방 교육 등 건축시공관련 교육을 실시
 - 건축시공관련 교육보다는 건축디자인과 관련한 교육을 위주로 우선교육

■제1회 정보소위원회

제1회 정보소위원회 회의가 지난 6월 30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협회 홈페이지 이미지 교체 및 내용 보강에 관한 건, 회원 인증 및 교육관리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건, 홈페이지 개선에 따른 추진 방안 및 일정에 관한 건과 기타사항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협회 홈페이지 이미지 교체 및 내용 보강에 관한 건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거두기 위해 메인 화면만 친환경을 주제로 변경하기로 함.

-건축사 단체 통합에 대비 전면 개편은 지양.

▷비예산 사업으로 7월 말까지 정보통신망 자체에서 시안을 3개 정도 만든 후 소위원회 검토 후 회장님이 최종 선택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기로 함.

- 제2호 : 회원 인증 및 교육관리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건
- 제시된 업무분석서에 따라 프로그램 시안이나온 후 검토하기로 함.
- 제3호 : 홈페이지 개선에 따른 추진 방안 및 일정에 관한 건
- 제1호에서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논의하지 않음.

▲기타사항

- 각종 공문을 전자화하는 방안을 행정위원회와 협의하여 검토하기로 함.

■제1회 비상대책위원회 운영위원회

제1회 비상대책위원회 운영위원회 회의가 지난 6월 11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건축사법시행령 입법예고에 관한 건과 기타사항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건축사법시행령 입법예고에 관한 건
-건축사법 제23조제10항<신설>하여 건축사법시행령 제23조제3항을 건축사법에 직접 규정할 것을 건의하기로 함
▷“건축사법인”, “건축사공동법인”에 대한 용어의 정의 및 구분 필요

▲기타사항

- 대관 업무 창구의 일원화
-모든 관청업무는 본협회에서 총괄하되, 비상대책위원회가 필요할 시 즉시 소집하여 모든 내용에 대응하기로 함
- 민생건축사 대책(안)
-민생건축사에 대한 5가지 대책의 진행사항을 시·도임원회의 보고하기로 함.

1. 신고대상건축물 건축사설계 의무화

ii. 건축물 매매시 건축사확인제도

iii. 인테리어 건축사확인제도

iv. 리모델링시 건축사확인제도

v. 건축물 유지관리 업무

-각 시도별 건축사사무소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양식지를 만들어 시·도임원회의 때 요청하기로 함.(통계자료로 만들어 정책에 활용)

• 수시모니터링에 대한 신속성 강구

-담당직원을 배치하여 관청과 교류, 꾸준한 자료 수집 및 보고체계를 마련하기로 함.

■제1회 공제1분과위원회

제1회 공제1분과위원회 회의가 지난 6월 11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험사 업무제휴 관련 협정(안)에 관한 건과 전산개발 계약에 관한 건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보험사 업무제휴 관련 협정(안)에 관한 건
-보험사 업무제휴 관련 협정(안)에 관한 건에 대해 논의 함
- 제2호 : 전산개발 계약에 관한 사항
-전산개발 계약에 관한 사항에 대해 논의 함

■제2회 공제1분과위원회

제2회 공제1분과위원회 회의가 지난 6월 23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험사 업무제휴 관련 협정(안)에 관한 건에 관한 사항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보험사 업무제휴 관련 협정(안)에 관한 건
-보험사 업무제휴 관련 협정(안)에 관한 건에 대해 논의 함.

■제5회 공제사업위원회

제5회 공제사업위원회 회의가 지난 6월 30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제규정 중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홍보 계획(안)에 관한 건, 전산 개발(안)에 관한 건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공제규정 중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공제규정 중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에 대해 논의 함.
- 제2호 : 홍보 계획(안)에 관한 건
-홍보 계획(안)에 관한 건에 대해 논의 함.
- 제3호 : 전산 개발(안)에 관한 건
-전산 개발(안)에 관한 건에 대해 논의 함.

■제2회 대한민국 APEC 등록건축사위원회

제2회 대한민국 APEC 등록건축사위원회 회의가 지난 6월 17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2기 대한민국 APEC 등록건축사위원회 위원 확정의 건과 기타사항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제2기 대한민국 APEC 등록건축사위원회 위원 확정의 건
-각 단체로부터 추천 받은 제2기 대한민국 APEC 등록건축사위원회 위원 확정을 위해 대한민국 APEC 등록건축사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대한건축사협회장에게 위원 명단을 추천한 후, 대한건축사협회장 명의로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위촉 공문 발송기로 함.

▲기타사항

- 제1회 APEC 등록건축사 등록갱신에 있어 계속교육이수보고서가 미비한 APEC 등록건축사를 과학하여 보고서를 보완하여 2009년 7월 3일(수)까지 다시 제출도록 요청하기로 함.
- 국토해양부 장관으로부터 제2기 대한민국 APEC 등록건축사위원회 위원 위촉이

완료 되는대로 차기 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함. (국토해양부 장관으로부터 위원회 위촉 완료까지 2주가 소요된다 함.)

- 제1회 APEC 등록건축사 등록갱신 신청서 심사 및 추후 일정은 제2기 대한민국 APEC 등록건축사위원회가 구성된 후 추진하기로 함.

최영집 회장,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조찬간담회 참석



우리협회 최영집 회장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정명원)가 지난 7월 8일 서울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한 조찬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조찬 간담회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회장 김창수), 새건축사협의회(회장 이필훈)와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건축문화 진흥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다양한 전의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정명원 위원장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현황과 함께 국가상징거리 조성사업, 4대강 수변공간 재생 디자인 추진, 지속 가능한 신주거문화 운동인 '뉴하우징 운동' 등 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정책 및 사업을 소개하고 현재 추진 중인 건축정책기본계획, 건축·도시문화 포럼, 건축행정 제도개선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대해 건축설계관련 3단체는, 설계경기 활성화 및 발주제도 개선을 통한 건축물의 품질제고, 디자인산업의 지식·문화 산업 신성장동력 육성, 노후건축물의 그린 리모델링 방안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건축설계관련 3단체 등과 같은 전문가집단과의 소통 채널을 상시 구축하여 국가정책의 수립단계에서부터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할 것도 건의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향후 건축정책을

총괄·조정하는 민간건축단체 간 협력체계가 본격 가동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건축분야의 중요정책 심의·조정, 건축문화 진흥 및 국토환경 디자인 정책을 위해 건축기본법에 의거, 지난 2008년 12월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했다.

제4회 한·중·일 건축사축구대회 개최



제4회 한·중·일 건축사축구대회가 6월 27일 을산 강동축구장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회 참가팀은 한국연합회팀, 강남축구동호회팀, 중국팀, 일본팀 등 총 4개팀이 참가했으며, 대회에 앞서 중국과 일본팀의 팀원과 가족들은 전통한옥호텔 라궁에 머물며 답사와 함께 이를 설계한 조정식 회원의 건축세미나에 참가하기도 했다. 본격적인 결전에 앞서 우리협회 최영집 회장은 "한·중·일 건축문화 교류와 함께 이번 축구대회는 세 나라간 건축사들의 위상을 국제적으로 도모하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다"고 고무했다. 한편, 일본 축구팀은 대회기간 중 UIA2011 도쿄총회를 적극 홍보했으며, 2011년 UIA총회기간 중 한·중·일팀과 UIA 다섯 개 팀을 포함한 8개 팀이 참여하는 건축사월드컵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한·중·일 건축사축구대회는 축구를 통한 한·중·일 건축사들의 우의증진과 건축문화 교류를 위해 2006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친환경 저에너지 건축인력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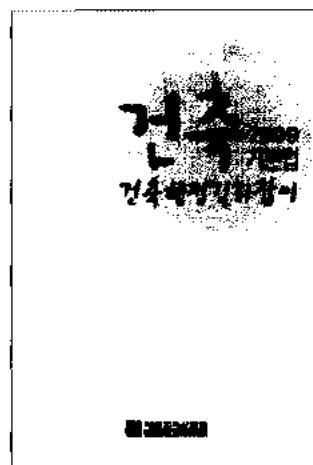
우리협회에서는 2009년도 제1기 친환경 저에너지 건축인력 양성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 친환경 저에너지 건축인력 양성과정은 국정과제인 '미래산업 청년리더 10만명 양성'과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의 일환으로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친환경 건축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교육기간은 2009년 9월부터 2010년 2월 까지 5개월 동안이며, 교육비는 무료이다.

모집인원은 100명을 모집하고 있으며, 건축사 또는 건축설계 관련분야 재직자 및 실무경력자, 대학(원) 건축(공)학 관련학과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문의 : 02-3415-6856

2009 건축기본법·건축행정길라잡이 판매



대한건축사협회는 국토해양부가 발간한 '건축행정길라잡이'와 2008년 제정 공표된 건축기본법·동법 시행령을 대조식으로 편집한 '2009 건축기본법·건축행정 길라잡이'를 발간했다. 주요 내용은 고시·지침·훈령은 현재 운용되고 있는 건축 관련 시행규칙 및 기준 등을 종합하고 편집했으며, 질의회신 등 유권해석을 첨부, 종합적으로 정리한 건축행정 관련 서적이다. 페이지는 808쪽이고, 가격은 25,000원이다.

문의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제도팀 02-3415-6834

경기도건축사회,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 방문



경기도건축사회(회장 백승천)는 지난 6월 25일부터 4일간 중국연변에 위치한 연변과학기술대학에서 '한국 현대건축의 현황'이란 주제로 전시회와 세미나를 개최했다.

경기도건축사회 국제위원회(위원장 이용호)소속위원 14명으로 구성된 이번 방문단은 최근 국내외 현상설계 등에 당선 또는 제출 되었던 20여점의 작품을 연변과학기술대학 본관 전시홀에 전시했으며, 박항섭 교수(경기도건축사회 명예이사, 경원대)의 현대건축 특강도 함께 진행했다. 또 방문단은 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두 단체 간의 지속적인 상호교류를 약속하였으며, MOU체결에 관해서도 추후 경기도건축사회와 정식 절차를 거쳐 체결하기로 논의했다.

경기도건축사회는 지난 2003년 베트남건축사회와도 MOU를 체결하였고 호치민시와 하노이시에서도 전시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국제위원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작품전시 및 방문을 통해 건축정보의 교환, 문화교류 등 활발한 국제교류활동을 계속해 오고 있다.

제2009 충청북도건축사대회 성료

충북건축사회(회장 구창서)는 지난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속리산에 위치한 레이크힐스 관광호텔에서 '2009 충청북도건축사대회'를 성료했다.

이번 행사에는 지역건축사 및 교수 등 110여명이 참석해 협회 업무추진방안 설명 및 질의응답, BIM 설계 강좌, 국제매너 강좌, 장기자랑 및 한마음 대회, 축구 및 등산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개최됐다.

건축제소식

제12회 울산광역시 건축대전



우리협회 울산광역시건축사회와 한국건축가협회 울산지회가 주최하는 '제12회 울산광역시 건축대전'이 '지속 가능한 도시풍경'이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공모 부문은 시니어부문(도시 및 건축, 디자인 관련학을 전공한 대학(원)재학생 및 일반 실무자)과 주니어 부문(도시 및 건축, 디자인 관련학을 전공한 전문대학, 대학1, 2학년 재학생)으로 공모대자는 20년 이상 자리했던 올주군청사가 이전하고 남겨진 땅으로 울산 대공원, 중·고등학교 및 교육시설, 주거지가 인접해 있는 울산 도심으로 향하는 중요한 길목에 있다.

- 원서접수기간 : 9. 1 ~ 9. 20
- 작품 접수 : 10. 28
- 시니어부문_울산문화예술회관 제1전시장
- 주니어부문_울산문화예술회관 제3전시장
- 시상일자 : 10. 31, 14:00
- 전시기간 : 10. 31 ~ 11. 3(4일간)
- 전시장소 : 울산문화예술회관 제1, 2, 3 전시장
- 문의 : 대한건축사협회 울산광역시건축사회, 052-266-5651

2009 젊은건축가상 공모

새건축사협의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젊은 건축가들을 발굴하고 홍보함으로써 건축의 문화적 저변을 확대하고, 이들에게 각종 공공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을 통해 건축 및 도시문화 창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젊은건축가 지원 사업인 '2009 젊은건축가상'을 공모한다.

- 응모일시 : 2009. 7. 27(월) 10:00 ~ 2009. 8. 21(금) 17:00
- 응모처 : (사)새건축사협의회 홈페이지 (<http://www.kai2002.org>)
- 참가자격
 - 나이에 대한 기준 : 만 45세 이하
 - 국내·외 건축사 자격증 취득하고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건축가
 - 개인 혹은 팀 가능, 타분야와의 협력팀 가능
- 응모접수 : 7. 27. ~ 8. 21.
- 문의 : 새건축사협의회 최미룡 02-575-9751 www.kai2002.org

제5회 정립학생건축상

제5회 정립학생건축상이 '신화적 변용(Mythological_Metamorphosis)'이라는 소주제로 오는 8월 17일부터 21일까지 참가신청을 받는다. 정립학생건축상은 '세계화하는 한국성 건축을 위하여'라는 대주제로 지난 2005년부터 1회 박승홍, 2회 이타미준, 3회 정기용, 4회 민현식을 삼사위원으로 위촉 '시적 요소를 찾아서', '전통과 현대 : 여러분에게 모던 코리아란 무엇입니까?' '도시의 일상', '문화제작소로서의 도시'를 소주제로 건축학과 학생들의 한국성 건축에 대한 인식과 아름다움 찾기에 주력해왔다.

- 심사위원: 장윤규(국민대학교 교수)
- 응모자격 : 국내외 대학 및 대학원(석사과정), 재학생 및 휴학생(1인 1작에 한함)
- 응모일정
- 주제발표회: 2009년 7월 25일(토), 오후

2시예정-정림건축 사옥 B2 강연장
 -참가신청접수: 2009년 8월 17일(월)~8월 21일(금) 오후 6시까지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작품접수: 2009년 9월 4일(금)까지 (우편 접수)
 -1차발표: 2009년 9월 18일(금)
 ·문의 : (주)정림건축
www.junglimaward.com

제2회 심원건축학술상 공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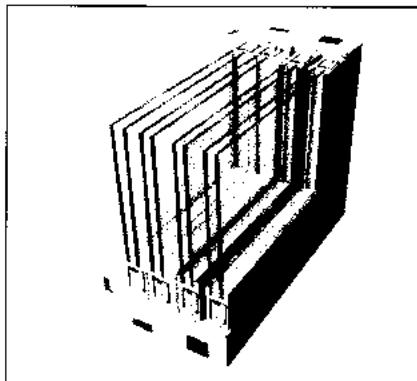
심원문화사업회(이사장 이태규)가 주최하고 (주)엠에스 오토테이 후원하는 '심원건축학술상(Simwon Architectural Awards for Academic Researcher)'의 제2회 공모요강이 발표됐다.

심원건축학술상은 1년 이내 단행본으로 출판이 가능한 완성된 연구 성과물로서 아직 발표되지 않은 원고(심사 중이거나 심사를 마친 학위논문은 미 발표작으로 간주함)를 응모 받아 그 중 매년 1편의 당선작을 선정하며, 당선작에 대하여는 단행본 출간과 저술지원비를 후원한다. 심원문화사업회는 젊은 나이에 요절한 한 건축가를 통하여 건축의 세계를 이해하고 예정을 갖게 된 기업가가 그와의 인연을 회억하며 건축의 인문적 토양을 배양하기 위하여 만든 후원회로서, 건축 역사와 이론, 건축미학과 비평 분야의 미래가 촉망되는 유망한 신진학자 및 예비 저술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 당선작 : 1편(상폐 및 상금 500만원과 단행본 출간 및 인세 지급)
- 응모자격 : 내외국인 제한 없음
- 응모분야 : 건축역사, 건축이론, 건축미학, 건축비평 등 건축인문학 분야에 한함 (단, 외국국적 보유자인 경우 한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한함)
- 응모작 접수일정
 - 1차 모집: 2009년 8월 1일~9월 10일
 - 2차 모집: 2009년 10월 1일~11월 10일
- 당선작 발표 : 2010년 5월 15일

(격월간 건축리포트〈와이드〉 10년 5/6월호 지면)
 ·문의 : 심원문화사업회 02-2235-1960

KCC, 고기능성 발코니창호 '프라임이중창 분할식 248' 출시



KCC는 최근 확대되고 있는 고급발코니창호 시장을 겨냥한 PVC 재질의 '프라임이중창 분할식 248'을 출시했다.

KCC '프라임이중창 분할식 248'은 기존 기능성 발코니창호인 '프라임이중창 248' 제품 대비, 성능 및 기능, 디자인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시킨 고품격 프리미엄 발코니창호다.

KCC '프라임 이중창 분할식 248'은 기존 '프라임 이중창 248' 제품을 상/하부로 분할하는 중간바 및 하부에 접합유리를 적용한 점이 특징이다. 또한, 중간바에 고강도 보강재를 적용하여 충분한 내풍압성을 확보하였으며, 외측 하부 fix(고정)창 적용 시 37mm 유리 적용이 가능토록 하여 기존제품 대비 우수한 단열성능을 발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특히, 법규 개정에 따라 발코니 난간대를 접합유리로 대체하여 입주자들에게 개방감을 부여하고 외관차별화를 꾀할 수 있어 발코니창호 시장 내에서 새로운 트렌드를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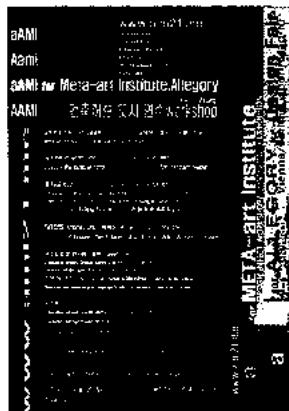
KCC는 창호의 핵심 구성 세 가지인 창틀, 유리, 실란트를 KCC가 직접 생산, 공급하여 KCC가 검증한 가공업체를 통해 시공하는, KCC 기술로 핵심 구성들이 접목된 시스템인 "3 TOP SYSTEM"을 통해 시장의 선도적 지

위를 유지하고 있다.

KOC 관계자는, "발코니 확장 추세에 힘입어 기존 발코니 전용창에서 프리미엄급으로의 고급화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하고, 이 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고기능성 신제품들을 지속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처 : KCC 고객상담실 080-022-8200, <http://www.kccworld.co.kr>

제2009 건축허브도시 디자인 워크샵



건축과 디자인에 재능있는 예비디자이너가 전문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속적 관심과 물리적, 재정적 지원역할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Aami Institute에서는 미국과 유럽의 도시들(시애틀, 벤쿠버, 뉴욕, 파리, 암스테르담, 밀라노에서 전문인들의 의식적 재도약을 위해서 창의적환경과 건축 디자인 워크샵을 단계적으로 제공한다. 이번 행사는 건축대학, 대학원의 재학생들에게 참가비의 일부가 지원되고 있다. 특히 2009 여름 건축환경 허브도시 디자인워크샵(Intensive designworkshop)은 건축가 마사오 야하기(Masao Yahagi) 꽉 회수, 최철수, Celine Shin, 김태희, Santiago P. Alvarez 등과 현지의 건축가와 디자이너들이 디자인 스튜디오(Design workshop)를 컴퓨터 중심 도구로 지도할 예정이고 현지 건축가들과 토론회를 준비하고 이를 모두 전시 및 출판할 예정이다.

·문의 : 02-515-6431, www.ami21.org

신간안내

건축의학_좋은 건축이 건강을 만든다



마쓰나가 슈가쿠 저, 오비쓰 료이치 감수 |
이철구 역, 손장열 감수 |
215쪽 | 기문당

일본건축의학협회는 대체의학·대체의료로서 '건축의학'을 제창한다. 주택거주자나 회사 사원이 병에 잘 걸리지 않게 하는 주거 환경과 직장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예방의학의 가능성이다. 실제 건축의학을 활용한 주택의 건축, 사무소건축, 의료시설의 건축, 거리의 창조, 도시계획 등은 그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심신 상태를 현저하게 개선한다고 한다.

건축의학은 새로이 건축된 주거와 사무 실내공간에서의 화학물질 반응, 잘못된 주거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 문제들의 치료방법과 예방법 등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건축의학을 뇌과학, 정신신경면역학, 범죄심리학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알아보고 주택오염과 현황을 이해하며 심신과 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주택을 만드는 건축의학 체크포인트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치유를 촉진하는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데 있어 도움을 줄 것이다.

• 문의 : 02-2295-6171

팽이말뚝기초공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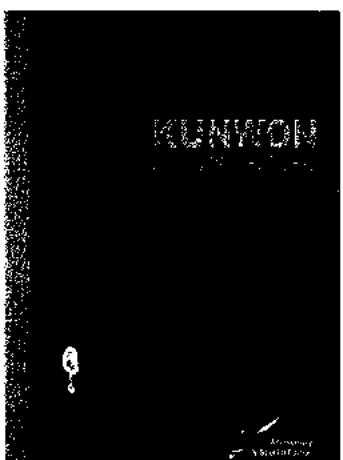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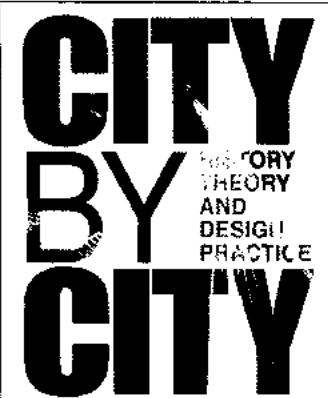
총기채, 김찬기, 이정영, 이강일, 황순종 저
| 389쪽 | 출판사 시지엔지니어링

일반적으로 구조물의 지지력이 충분하지 않은 지반 즉, 상재하중의 차이가 작고, 지지 말뚝기초공법처럼 안정성 확보가 가능하다면 아파트의 고층부와 주차장 및 복합빌딩 등의 다양한 건축 및 토목구조물에 팽이말뚝기초(얕은 기초)공법 적용이 최근 널리 확대되고 있다. 팽이말뚝기초공법은 뜯 구조의 기초 개념으로서 지지력 증대는 물론 팽이파일과 팽이파일의 상호 구속에 따른 침하량을 억제하는 공법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증명하듯 시공성면에서 다수의 고층아파트(지하2층+지상27층)와 지층조건에 따라 복합기초(팽이말뚝기초+말뚝기초) or (Pile+Raft 개념응용)을 응용하여 현장 실무에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이론과 현장 실무가 하나 되어 보다 전보적인 팽이말뚝기초의 설계 및 시공의 기술을 바탕으로 라オス와 베트남의 시발점으로 동남아 시장의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듯이 본도서가 팽이말뚝기초공법 설계 및 시공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도움이 되고자 출간됐다.

• 문의 : 02-2082-0444

CITY BY CITY/

한국의 도시 변화에 대한 세가지 시선
_ 시간, 성장, 상대적 가치



건원건축 편집부 | 420쪽 | 70,000원

'CITY BY CITY'는 대한민국 도시발전사의 흐름과 그 트렌드 세터 역할을 해온 건원과의 관계성을 정리하고 도시에 있어 '밀도'와 '관계'에 근거한 50 디자인 프로젝트의 조명 그리고, △도시 △건축 △자연 △인간이라는 4가지 명제를 디자인 프로세스의 키워드로 풀어낸 내용까지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2007~2008 건원리뷰 25주년 특별판'은 건원건축이 2007~2008년 2년 동안 작업한 108개 프로젝트를 엄선하여 정리하였고, 향후 반세기를 향한 도약을 위해 발판으로 삼을 핵심 경쟁력을 논의한 포럼 디스커션, 25개 건원 대표 프로젝트를 집대성한 건원이슈, 25년간의 작품연대표 등을 담고 있다.

• 문의 : 02-3463-2130

PLAZA ARCHITECTS'

건축마당
통계
statistics

2009년 건축허가 현황(5월)

(단위 : 동, 제곱미터)

■ 용도별

구 분	당월(5월)			누계(1~5월)			
	2008년	2009년	증가율	2008년	2009년	증가율	
계	동 수	21,875	-20.4%	95,455	79,299	-16.9%	
	연면적	11,019,299	6,926,014	-37.1%	49,077,599	30,494,764	-37.9%
주거용	동 수	7,502	-22.3%	32,098	25,280	-21.2%	
	연면적	2,764,751	1,763,833	-36.2%	13,514,460	7,422,121	-45.1%
상업용	동 수	7,058	-24.1%	30,170	24,664	-18.2%	
	연면적	4,172,483	2,444,455	-41.4%	15,708,991	8,996,329	-42.7%
공업용	동 수	2,206	-33.0%	10,421	7,054	-32.3%	
	연면적	1,642,460	803,853	-51.1%	8,009,229	4,111,066	-48.7%
교육 및 사회용	동 수	1,165	4.1%	5,422	5,743	5.9%	
	연면적	1,111,976	953,602	-14.2%	5,383,057	4,681,257	-13.0%
기 타	동 수	3,944	-10.5%	17,344	16,558	-4.5%	
	연면적	1,327,629	960,271	-27.7%	6,461,862	5,283,991	-18.2%

■ 구조별

구 分	당월(5월)			누계(1~5월)			
	2008년	2009년	증가율	2008년	2009년	증가율	
계	동 수	21,875	-20.4%	95,455	79,299	-16.9%	
	연면적	11,019,299	6,926,014	-37.1%	49,077,599	30,494,764	-37.9%
철근 철골조	동 수	18,592	-22.6%	81,276	65,718	-19.1%	
	연면적	10,742,965	6,699,193	-37.6%	47,893,076	29,429,826	-38.6%
조직조	동 수	2,241	-9.6%	9,819	9,251	-5.8%	
	연면적	194,165	157,328	-19.0%	832,994	733,741	-11.9%
목조	동 수	934	2.5%	3,874	4,194	8.3%	
	연면적	77,744	67,652	-13.0%	322,727	317,815	-1.5%
기 타	동 수	108	0.0%	486	136	0.0%	
	연면적	4,425	1,841	0.0%	28,802	13,382	0.0%

■ 시도별

구 分	당월(5월)			누계(1~5월)			
	2008년	2009년	증가율	2008년	2009년	증가율	
계	동 수	21,875	-20.4%	95,455	79,299	-16.9%	
	연면적	11,019,299	6,926,014	-37.1%	49,077,599	30,494,764	-37.9%
수도권	동 수	8,289	-56.8%	35,351	23,992	-32.1%	
	연면적	6,257,962	2,768,865	-55.8%	24,569,613	12,265,331	-50.1%
서울	동 수	1,581	-48.3%	6,090	3,370	-44.7%	
	연면적	2,596,568	748,026	-71.2%	6,906,039	2,336,657	-66.2%
인천	동 수	830	-30.5%	3,136	2,551	-18.7%	
	연면적	604,128	382,879	-36.6%	2,122,511	1,210,348	-43.0%
경기	동 수	5,878	-34.6%	26,125	18,071	-30.8%	
	연면적	3,057,266	1,637,960	-46.4%	15,541,063	8,718,326	-43.9%
지방	동 수	13,586	-10.4%	60,104	55,307	-8.0%	
	연면적	4,761,337	4,157,149	-12.7%	24,507,986	18,229,433	-25.6%
부산	동 수	515	-25.2%	2,376	1,936	-18.5%	
	연면적	242,400	172,649	-28.8%	1,566,937	919,956	-41.3%
대구	동 수	459	-17.9%	2,271	1,598	-29.6%	
	연면적	181,401	243,446	34.2%	1,026,392	921,481	-10.2%
광주	동 수	337	-23.4%	1,513	1,187	-21.5%	
	연면적	154,156	97,127	-37.0%	926,333	713,596	-23.0%
대전	동 수	347	-35.4%	1,503	1,118	-25.6%	
	연면적	219,327	151,411	-31.0%	1,026,135	671,154	-34.6%
울산	동 수	482	-33.6%	2,288	1,587	-30.6%	
	연면적	321,700	179,485	-44.2%	1,956,974	596,110	-69.5%
강원	동 수	1,519	-20.5%	5,411	5,516	1.9%	
	연면적	347,149	476,172	37.2%	1,498,093	1,691,432	12.9%
충북	동 수	1,354	-14.8%	5,962	5,052	-15.3%	
	연면적	521,855	327,096	-37.3%	2,220,399	1,658,252	-25.3%
충남	동 수	1,366	-7.4%	6,675	6,158	-7.7%	
	연면적	460,003	487,434	6.0%	3,049,391	2,504,920	-17.9%
전북	동 수	1,154	6.8%	5,337	5,301	-0.7%	
	연면적	372,038	373,514	0.4%	1,893,243	1,490,994	-21.2%
전남	동 수	1,314	20.2%	6,669	7,074	6.1%	
	연면적	308,643	256,771	-16.8%	1,680,090	1,427,154	-15.1%
경북	동 수	2,316	-12.5%	9,026	8,961	-0.7%	
	연면적	518,146	489,941	-5.4%	2,649,996	2,462,359	-7.1%
경남	동 수	2,157	-17.8%	9,612	8,264	-14.0%	
	연면적	1,038,737	503,414	-51.5%	4,494,245	2,497,901	-44.4%
제주	동 수	266	37.6%	1,461	1,555	6.4%	
	연면적	75,782	398,689	426.1%	519,758	674,124	29.7%

건축사사무소 등록현황

(사) 사무소수, 회 : 회원수)

2009년 5월말

부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총 사무소	회원 수		
	2인		3인이상		소계		2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합계	5,104	5,104	118	236	10	30	5,232	5,370	1,558	1,558	270	540	58	174	22	88	29	220	1,937	2,580	7	7,169	7,950	
서울	884	884	31	62	3	9	918	955	841	841	157	314	37	111	11	44	16	119	1,062	1,429	6	1,980	2,384	
부산	459	459	19	38	2	6	480	503	86	86	22	44	2	6	0	0	3	28	113	164		583	667	
대구	403	403	25	50	4	12	432	485	62	62	17	34	6	18	1	4	2	10	88	128		520	593	
인천	248	248	2	4	0	0	250	252	56	56	8	16	0	0	0	0	0	0	64	72		314	324	
광주	194	194	1	2	0	0	195	196	38	38	6	12	2	6	2	8	1	7	49	7		244	267	
대전	232	232	9	18	1	3	242	253	32	32	9	18	4	12	2	8	1	17	48	87		290	340	
울산	176	176	7	14	0	0	183	180	19	19	2	4	1	3	9	0	0	0	22	26		205	216	
경기	703	703	3	6	0	0	706	709	226	226	19	38	2	6	1	4	2	12	250	286		956	995	
강원	170	170	2	4	0	0	172	174	24	24	2	4	0	0	0	0	1	5	27	33		199	207	
충북	193	193	4	8	0	0	197	201	34	34	3	6	0	0	2	8	2	15	41	63		238	264	
충남	212	212	2	0	0	0	213	214	40	40	7	14	1	3	2	8	0	0	50	68		263	279	
전북	231	231	4	8	0	0	235	239	20	20	3	6	2	6	1	4	0	0	26	36		261	275	
전남	169	169	0	0	0	0	169	169	18	18	1	2	0	0	0	0	1	7	20	27		189	196	
경북	339	339	4	8	0	0	343	347	31	31	5	10	0	0	0	0	0	0	36	4		1	379	388
경남	384	384	6	12	0	0	390	396	24	24	8	16	0	0	0	0	0	0	32	40		422	436	
제주	107	107	0	0	0	0	107	107	7	7	1	2	1	3	0	0	0	0	9	12		116	119	

건축사회별 회원현황

부	회원수	회원수		비율	증원원
		건축사	2인		
합계	7,950	10	7,960	100.0%	23
서울	2,384	3	2,387	33.9%	10
부산	667	1	668	7.9%	9
대구	593	0	593	7.7%	0
인천	324	0	323	3.8%	0
광주	267	0	267	3.7%	0
대전	340	1	341	3.7%	0
울산	216	0	216	2.6%	0
경기	995	2	997	12.2%	2
강원	207	0	207	2.6%	0
충북	264	0	264	3.0%	0
충남	279	3	282	3.1%	0
전북	275	0	275	3.0%	0
전남	196	0	196	1.9%	0
경북	388	0	388	4.6%	1
경남	436	0	436	5.0%	1
제주	119	0	119	1.3%	0

사무소형태별 회원현황

부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전임미처리	합계	비고
회원수	5,370	2,580	85	8,035	
비율	66.83%	32.11%	1.06%	100%	
사무소수	5,232	1,937	..	7,169	
비율	72.98%	27.02%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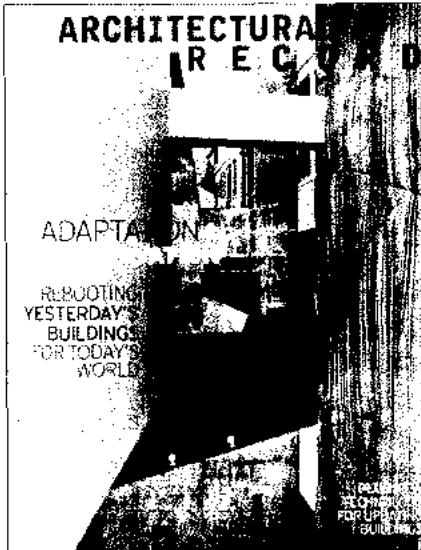
PLAZA ARCHITECTS'

건축마당

해외 잠지동향
overseas journal

ARCHITECTURAL
RECORD

ARCHITECTURAL RECORD



이번 호에서는 요즘 건축업계의 큰 희두인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보존'에 대한 큰 주제 하에 각 섹션들이 다루어지고 있다. project 섹션에서는 'Adaptation+Preservation(순응+보존)'이라는 주제 하에 오래된 건물을 현대에 맞추어 되살린 건물들, FXFOWLE와 함께한 Diller Scofidio+Renfro의 Lincoln Center, Alice Tully Hall, Olson Sundberg Kundig Allen Architects의 Wing Luke Asian Museum, ARGE Grazioli Krischanitz의 Rietberg Museum, Dan Hanganu+Côte Leahy Cardas의 Espace 400e, Marion Blackwell Architect의 The Fulbright Building, 그리고, Paulo Mendes da Rocha의 Our Lady of the Conception Chapel을 소개하고 있다.

Books 섹션에서는 'Preservation battles, past and present'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책들을 소개하고 있다.

■ Books

Preservation of Modern Architecture:
by Theodore H.M. Prudon, John Wiley&Sons, 2008

미래는 과거가 아니다. 이 말을 염려했던 사람은 20세기 중반의 건물을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다. 한때 호화롭고 대담하였으며 당시의 미학과 사회적인 유망했던 그 건물들이 이제는

우리가 보지 않았던 중세시대의 건물로 바뀌어 간다. 많은 건물들이 현재 잊혀져가고 잘못 사용되고 있으며 무너질 것 같은 징후를 보인다.

이미 많은 건물들이 사라져갔다. 물론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환경보호운동도 그럴 것이다. 건축사이자 근대 건축의 보호를 장려하는 DOCOMOMO/US의 교장인 이 책의 저자 Prudon은 두 개의 두툼한 책을 하나로 엮었다.

하나는 모더니즘의 철학과 역사 그리고 그 보호에 대한 것이고 또 하나는 20세기 랜드마크가 되는 31개의 케이스 스터디들을 정리해 놓았다. 대부분 유럽에 있는 작품들이어서 생소하기는 하지만 그 순수한 예제인 만큼 교육적 가치가 있다. 특히 이 책은 모더니즘을 보호하기 위한 철학적이고 실제적인 이슈를 재치있게 다루고 있으며 Prudon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했던 건축이 그것을 보존하는 방법에 대한 변화에 다시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쓰고 있다.

James Marston Fitch: Selected Writings on Architecture, Preservation, and the Built Environment: Edited by Martica Sawin, W.W.Norton, 2007

환경보호에 있어 위대한 전문가 중 한 사람인 James Marston Fitch(1909~2000)은 환경보호에 대한 무관심을 오늘날의 하나님의 운동으로 승화시킨 건축가이며 교육자, 비평가, 행동주의자였다.

그는 재단설립자이자 Columbia 대학의 환경보호 프로그램의 지도자(1964~77), 그리고 미국 건축에 관한 역사적이고 환경적인 영향이라는 그의 책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환경보호에 대한 그의 엄청난 공헌에 대해서는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다. 이 1933~1997년까지에 이르는 그에 관한 수필, 기사, 대담, 그리고 기타 기록을 모아놓은 이 책은 테네시 출신인 그의 초기 방랑자적인 생활을 기록한 전기적인 내용도 담고 있다.

Fitch의 글의 대부분의 주제는 에너지 보존이라는 것이다. 모든 것이 '녹색'으로 가고 있는 오늘날 이 책에 실린 다음과 같은 말은 우리에게 교감을 준다: 낡은 건물은 에너지의 저장소라고 할 수 있다. 낡은 건물을 헐어내는 작업은 추가적인 에너지가 필요하다. 건물이 헐어진 그 장소에 지어질 새로운 건물 역시 여전히 보다 많은 에너지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I Am a Monument : On Learning from Las Vegas: by Aron Vinograd, The MIT Press, 2008

1968년에 Robert Venturi와 Denise Scott Brown은 Las Vegas에 있는 Yale 디자인 스튜디오의 3학년을 맡고 있었다. Scott Brown은 사막의 태양에 때문에 멍해지기도 하고 현란한 간판에 의해 혼혹되기도 했고 또 그들이 본 것을 사랑하기도 하고 혐오하기도 하였다고 회상한다. 이 책은 1972년에 Robert Venturi와 Denise Scott Brown가 출판한 *Learning from Las Vegas*에 대한 학문적인 분석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 Projects

“현재를 지배하는 사람이 과거를 지배한다. 과거를 지배하는 사람이 미래를 지배한다.”라고 조지 오웰은 그의 소설 1984년에서 적고 있다. 이 우울한 글은 역사적인 보존이 학문적,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인 투쟁이 그토록 자주 일어나도록 하는 까닭을 설명해 준다. 과거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파괴하고 무엇을 보존하는가는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들이 가진 안목을 증명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역사적인 보존을 위해서 싸울 가치가 있는 것이다. 어떤 건물을 남겨 둘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그 첫 단계이고 남겨진 건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대한 것은 또 다른 논쟁을 일으키기 일쑤이다. 우리가 보존하기를 바라는 만큼의 특성을 간직한 채 건물을 변화시키려고 한다면 그 수준은 어디까지일까? 우리는 오늘날 모든 것이 뒤섞인 세상에 살고 있다. 따라서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다른 시대를 풍미했던 건축의 특성의 조합에 보다 안정감을 느껴왔다. 이번 프로젝트 섹션에서 소개하는 프로젝트들은 옛것과 새것을 결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 작품들을 소개한다.

Wing Luke Asian Museum, Seattle / Olson Sundberg Kundig Allen

Olson Sundberg Kundig Allen Architects는 평범한 건물을 Wing Luke Asian Museum이라는 기억에 남을 만한 건물로 바꾸어 놓는다.

중국인 노동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1910년



Wing Luke Asian Museum

지어진 이 벽돌 건물, East Kong Yick이 박물관이 되었을 때 그 어떤 홍미를 자아낼 수 있는 일종의 건축적 특징은 매우 부족하였다. 어떤 호화로운 계단, 매력적인 디테일, 혹은 멋진 건축재료조차 없었다. 그러나 이 간단하게 생긴 건물과 고군분투하는 이민자들을 위한 제한된 공간은 새로운 Wing Luke 아시안 박물관의 비축해둔 자산을 보여주었다. 이 오래된 건물이 가지는 의미를 간직한 채 현대적인 시설로 리노베이션 하는 것은 Olson Sundberg Kundig Allen Architects가 직면한 중요한 도전이었다. 170명의 중국계 미국인이 공동부담하여 지어진 이 East Kong Yick과 좁은 길을 사이에 둔 Canton Alley라 불리우는 유사한 건물은 윗층에는 이주민 노동자를 위한 숙소를, 도로와 같은 레벨의 공간은 소매상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었다. 1970년대까지 밀려오는 이주민들을 등쪽 건물의 2층에 수용할 수 있었으나 더 이상 도시의 건물 코드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자 2층은 폐쇄되었고 그후 30년간 1층의 가게만 사용하고 있었다.

Rick Sundberg가 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을 때 그는 먼저 East Kong Yick 건물의 유기된 2층 공간을 살펴보고는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판자로 둘러쳐진 공간을 이 프로젝트의 주요 디자인 요소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또한 Rick Sundberg과 그의 팀은 가능한 한 이 낡은 건물을 보존하고 대체하거나 바꾸어야 하는 모든 것을 재활용하려고 노력하였다. 이 프로젝트를 위한 초기 디

자인은 본질적인 리노베이션을 제안하였으나 Sundberg는 급진적인 방법은 피하였다. 그의 계획은 드라마틱한 철제 계단을 설치하고 입구로 비의 천장을 2층 높이로 만들기 위해 2층의 대부분을 제거하였으나 동선으로써 판자로 둘러쳐졌던 공간은 그대로 사용하고 낡은 재질은 재활용하였다. “나는 모두에게 ‘건물에서 없어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고 Sundberg는 이야기한다. 그의 디자인 팀은 버려진 마루널을 새로운 멋진 계단의 디딤판으로 사용하였고 낡은 방화문에서 사용했던 주석을 이용하여 로비의 매표소를 클래딩하였다. 건축사는 판자로 둘러쳐진 공간에 자연광이 흘러들어오도록 계획하였고 기존의 목재 창문은 그대로 둘로써 낡은 창문이 가지는 투박한 매력을 그대로 살려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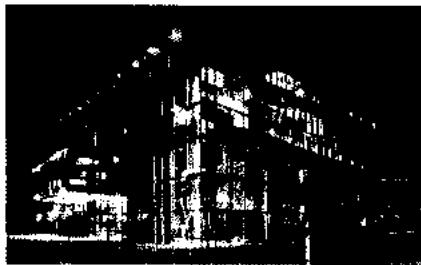
Sundberg가 희망했던 것처럼 복원된 판자로 둘러쳐 있던 2층 높이의 공간은 옛건과 새로운 것을 연결해 줌으로써 이 박물관의 동선으로 또, 과거를 추억할 수 있는 매개체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다. 로비로부터 새로운 계단을 올라 2층에 닿으면 천장에서 태양광이 쏟아져 내리는 공간을 만날 수 있으며 또한 그 천장에는 ‘편지 구름(Letter Cloud)’라는 Erin Shie Palmer와 Susie Kozawa의 작품이 장식되어 공간에 움직임을 더하고 있다. 이 박물관은 새로운 디자인 요소들과 역사가 깃든 웃감에 현대적인 감각을 함께 짜 넣음으로써 오래된 과거의 역사가 되돌아보고 앞으로 이 건물의 새로운 역할을 기대하게 하는, 현재 Seattle의 중요한 랜드마크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다.

Espace 400e, Quebec / Dan Hanganu+Côté Leahy Cardas

Dan Hanganu+Côté Leahy Cardas는 기존에 Quebec의 해안가에 있던 창고를 랜턴 같은 Espace 400e로 변형시킨다.

조약돌로 된 도로와 17~18세기 풍의 건물로 유명한 Quebec시는 북미에서는 드물게 과거의 유럽으로 잘못 생각할 수 있는 장소이다.

오래된 도시의 역사적 요새라는 의미를 넘어서 이 곳에는 Quebec시가 훨씬 매력적인 유적이라는 많은 증거들이 있다. Quebec시 근처의 Saint Lawrence 제방은 19세기 전성기에 운송의 요충지로써 사용되었던 것만큼 현재는 사용되지는 않고 있지만 곡물의 보관창고와 굴뚝은 산업의 증거로 남아있다. 여전히 사용되고



Espace 400e

있는 부두는 공원과 도로와 연결되어 재창조된 도시의 네트워크의 일부분이 되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Quebec시에 인공항구의 끝에 부두가 세워진지 400년을 기념하기 위한 축제를 추진하기 위해 이를 추진할 본부가 있을 곳으로 이곳이 정해졌다. 그것이 'Espace 400e'로 알려진 건물이며 이는 2008년 여름에 기념일과 관련된 전시회, 퍼포먼스, 그리고 다른 이벤트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이었다. 축제가 끝나면 캐나다의 이민의 역사를 익히할 수 있는 전시장으로 사용될 것이었다. 50년대 중반 3층으로 된 콘크리트로 된 창고 건물로 지어진 이 곳은 30년 후 Quebec항구의 역사를 보여주는 박물관으로서 전환되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위해 이 건물을 허물어버리기보다는 이 프로젝트의 디자이너들은 이를 확장하고 변형하기로 결정을 하였다. 기존의 박물관 크기를 두 배로 늘리기 위해 건물을 남쪽에 새로이 지었으며 기존의 건물과 새로운 건물을 연결하기 위해 중간에 눈부신 커튼월이 조화를 이루는 콘크리트로 된 공간을 삽입하여 천장으로부터 태양광이 공간 안으로 흘러들어오게끔 하였고 사람들은 두 공간을 연결하는 램프나 계단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고안하였다. 또한 건축사들은 파사드 내부에 있는 기존 건물의 알루미늄 패널 클래딩은 그대로 보존하였다. 이로써 생긴 두 겹의 외피는 건물이 허물어지면서 생기는 파편들을 최소화하면서 열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된다. 이 역시 기존의 구조와 새로운 건물 사이의 새로운 결합을 보여주는 디자인 요소가 된다. 그러나 새로운 외피로 인해 Espace 400e는 기타 글래스 박스와

는 다르다. 비록 커튼월이 낡은 건물의 일부를 둘러싸고는 있지만 기존의 클래딩은 여전히 외부에서 볼 수 있다. 새로 만들어진 패널의 반은 실내의 프로그램에 따라 투명하거나 불투명하게 조절할 수 있다. 외부에 쓰여진 유리의 많은 부분은 19세기에 사용된 배가 프린팅되어 있다. 전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고 전시대가 설치될 때까지 현재 이 건물은 닫혀진 상태다. 그러나 내년 봄 이 건물이 다시 개방될 때, 방문객들은 로비를 통해 부두의 끝까지 이동해 날 수 있을 것이며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천으로 싸인 벽으로 된 이벤트 공간에서 오랜 시간 머물 수도 있을 것이다. 구겐하임 박물관처럼 전시를 보기위해 아래부터 위층까지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도 있게 될 것이다. 로비로 돌아오는 길에 박물관으로 가는 사람들은 가볍고 반사되는 백색 혹은 부드러운 회색의 표면으로 되어 있는 슬롯같은 아트리움을 지나게 될 것이다. 밝고 다이나믹한 느낌의 아트리움과는 대조적으로 내부 갤러리는 블랙 박스와 같은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 현재 이 공간은 비워져 있어 이 공간의 기능에 대해서는 평가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방문객의 주위를 풀만한 공간으로 보여진다. 단순한 공간은 어두운 회색을 띤 예술시 도장을 한 바닥과 검정색 벽과 천장과 더불어 기계적인 시스템을 노출시키고 있다. 이 Espace 400e는 이 건물이 놓여진 대지의 풍부한 컨텍스트를 잘 받아들이면서 인상적이고 이 시대에 걸맞게 새로이 창조되었다고 할 수 있다.

The Fulbright Building, Arkansas / Marlon Blackwell Architect

*Marlon Blackwell Architect*는 노학된 *The Fulbright Building*의 품위를 되찾게 해준다.

Arkansas의 Fayetteville에 1962년 지어진 이 공공 도서관, Fulbright Building은 이 도시의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지역의 끝자락에 있는 녹음이 우거진 장소에 위치하고 있으며 오늘날까지 빅토리아 풍의 주택과 미술공예운동 스타일의 별장들로 둘러싸여 있다. “이 건물은 제가 항상 좋아하는 것이었죠.”라고 최근 이 건물을 도서관에서 사무실로 바꾸어 놓은 건축사 Marlon Blackwell은 이야기한다. 2004년 도서관의 규모가 커지자 시내의 새로운 건물로 옮겼다. Fulbright Building의 가치를 알고 있느 지역사회는 이 건물을 허물기 보다는 새로



The Fulbright Building

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이 건물의 가장 큰 강점은 대지에 놓여있는 방식으로 어렵게 이 구조적인 빼리를 외부에서 만큼이나 내부에서도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이 Blackwell이 이 건물을 보고 처음 생각해 낸 것이었다고 한다. 그는 디자인 컨셉인 ‘병 속의 배(Ship in bottle)’를 발전시켜 외피와 기존의 스틸 구조체의 그리드를 연결시켜 내부 공간을 명확하게 정의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구조는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 건축사는 리노베이션한 주제단을 제외하고는 모두 없앴다. 동쪽의 윗층을 확장하여 그 아래에 주차 공간을 두었고 외부로 출입할 수 있는 계단을 설치하였다. 이는 건물의 오래된 부분과 새로운 부분 사이의 공간을 결합하는 효과를 주고 있다. Blackwell은 낡은 것을 다시 새것으로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건축이 가진 변형의 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나는 이상주의자가 아니다. 나는 오히려 기회주의자에 가깝다. 나는 항상 하이브리드와 혼합에 관심이 있어왔다. 새로운 프로그램이 항상 기존의 구조와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과거와 미래가 서로 갈피를 못잡고 주저할 때가 있다. 그리고 나는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디자인하기를 즐긴다”고 한다. 보기에 따라서는 다소 작은 도시의 건축사인 그는 세계적이고 근대적인 언어로 작업을 하고 있으며 그것들을 일상의 프로그램 안에 스며들도록 하고 있다. ■